

국토해양부 예규 제155호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국 토 해 양 부
도 로 운 영 과

제 1 장 총 칙

1. 목적

본 지침은 도로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 「도로표지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표지를 설치 및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가. 본 지침은 도로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에 도로표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및 유지·관리 하는 모든 도로표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사도 등 기타의 도로라 할지라도 도로이용자에게 일관된 도로정보체계를 안내하기 위하여 가급적 이를 준용하여야 한다.

3. 도로 및 도로표지의 기능별 분류

가. 도로의 기능별 분류

도로는 등급별 분류(도로법 제8조 참조)와 기능별 분류로 대별할 수 있다. 도로의 기능별 분류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지역과 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다음 표1-1, 표1-2와 같이 분류한다.

〈표1-1〉 지방지역에서 도로의 기능별 분류

구 분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도로의 종류 및 등급	고속국도 일반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지방도 군도	군도
평균통행거리	5km이상	5km미만	3km미만	1km미만
설계속도(km/h)	80~60	70~50	60~40	50~40
유·출입지점간 평균간격(m)	700	500	300	100
동일기능 도로간의 간격(m)	3,000	1,500	500	100
계획교통량(대/일)	10,000이상	2,000~10,000	500~2,000	500미만

〈표1-2〉 도시지역에서 도로의 기능별 분류

구 분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도로의 종류 및 등급	광로, 대로	대로, 중로	중로	소로
평균통행거리	3km이상	3km미만	1km미만	500m미만
설계속도(km/h)	80	60	50	40
유·출입지점간 평균간격(m)	500	300	150	50
동일기능 도로간의 간격(m)	1,000	500	250	100
계획교통량(대/일)	20,000이상	5,000~20,000	2,000~5,000	2,000미만

나. 도로표지의 기능별 분류

도로표지는 도로이용자가 그 내용을 정확하고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설치장소 또는 기능에 따라 각급 도로별로 다음과 같은 도로표지를 설치한다.

〈표1-3〉 도로 표지의 기능별 분류

도로 표지 종류	기능		도로별 설치구분			비 고
			지방 지역 도로	도시 지역 도로	고속 국도	
경계 표지	도·시·군·읍·면 단위의 지역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		○	○	○	
이정 표지	목표지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지		○	○	○	
방향 표지	방향 또는 방면을 나타내는 표지로 방향예고표지와 방향표지가 있음		○	○	○	
노선 표지	노선 표지	진행방향의 도로등급 및 노선번호를 확인시켜주는 표지	○	○	○	
	분기점 표지	교차로 전방에서 분기되는 노선의 번호를 안내하여주는 표지	○	○	○	
기타 표지	하천 표지	도로의 구간에 걸쳐있는 주요 하천을 나타내는 표지	○	○	○	
	교량 표지	주요교량이 있음을 나타내는 표지	○	○	○	
	터널 표지	진행방향에 터널이 있음을 나타내는 표지로 터널구간에 대한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기능을 하는 표지	○	○	○	

도로 표지 종류		기 능	도로별 설치구분			비 고
			지방 지역 도로	도시 지역 도로	고속 국도	
기 타 표 지	비상주차장 표 지	고장차량 등이 대피하는 비상주차장을 안내하는 표지	○	○	○	
	정류장 표 지	버스정류장을 나타내는 표지	○	○	○	
	양보 차로 표지	일반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저속차량이 우측 으로 양보하게 하는 표지	○	○	○	
	유도 표지	앞으로 만나게 될 중요 시설물로 유도하는 표지	○	○		
	휴게소 표 지	도로변에 설치된 휴게소를 안내하는 표지	○		○	
	보행인 표 지	운전자나 보행자를 위해 시설명, 도로명, 행정구 역명 등을 표기하여 국지도로, 마을진입로, 보행 자가 많은 도로 등에 설치하는 표지		○		
	주차장 표 지	주차장을 안내하는 표지	○	○		
	오르막 차 로 표 지	속도가 저하된 차량을 분리하여 주행시키기 위하여 본선 우측에 설치한 오르막차로를 안내하는 표지	○		○	

도로 표지 종류		기 능	도로별 설치구분			비 고
			지방 지역 도로	도시 지역 도로	고속 국도	
기 타 표 지	긴급신고 표 지	긴급전화가 가설된 곳을 알리는 표지	○		○	
	자 동 차 전용도로 표 지	자동차 전용도로임을 안내하는 표지	○	○	○	
	관광지 표 지	관광지를 안내하는 표지	○	○	○	
	시·중점 표 지	도로의 시·중점을 나타내는 표지			○	
	매표소 표 지	유료도로에서 매표소가 있음을 나타내는 표지	○	○	○	
	돌아가는길 표 지	도로의 공사 등으로 통행이 불가할 때 차 량의 우회로를 유도하는 표지	○	○	○	

제 2 장 표지판 및 지주의 제작

1. 재료

가. 표지판

- (1) 표지판의 기판 중 금속 표지판은 두께 3mm 이상(현수식은 두께 2mm 이상)의 알루미늄판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판)의 A5052P-H32 또는 강판 KS D 3512(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1종 혹은 2종으로써 방식처리한 것을 사용하며, 합성수지판은 KS M 3501(플라스틱)의 1종 2호 또는 이들과 동등 이상의 재료로서 두께 0.5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 (2) 알루미늄채널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의 A6063S-T5 규격품을 사용하며, 채널과 지주결합용 크립은 KS D 6701의 A6061FD-T6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501(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규격품을 사용한다.
- (3) 밴드는 KS D 3698(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의 STS 304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한다.
- (4)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 D 3706(스테인리스 강봉)의 STS 304 NI-B에 준하며, 그 형상은 KS B 1002(6각 볼트)의 규격품을 사용한다.

나. 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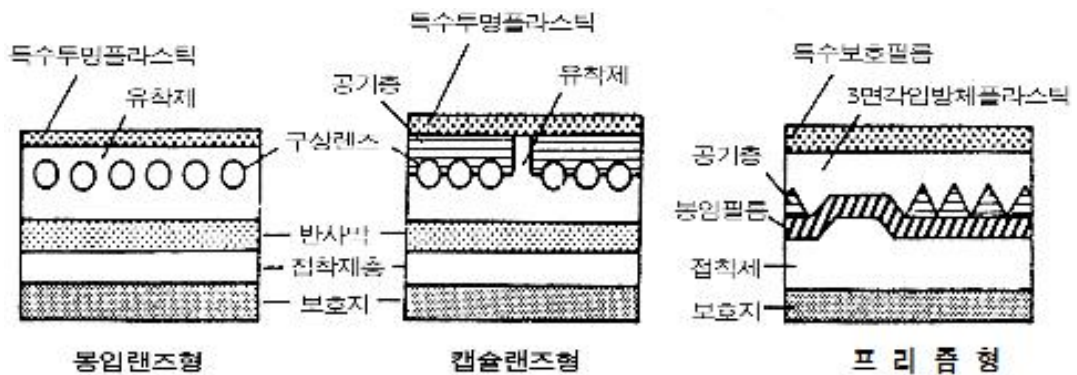
- (1) 도로표지에 사용되는 지주는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및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규격품을 사용한다.
- (2) 지주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원형강을 사용하되, 여건에 따라 H형강, 각형강 등의 형태를 사용할 수 있다.
- (3) 지주용 캡은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며, 지주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한다.

다. 반사지

(1) 반사지의 구조와 종류

반사지(Reflective Sheet)에는 유리구슬을 수지필름의 내부에 봉입한 봉입렌즈형(일반반사지)과 수지필름의 내부에 공기층을 형성시켜 유리구슬이 공기층에 노출되도록 한 캡슐렌즈형(고휘도 반사지), 그리고 미세한 입방체 입자를 이용한 프리즘형(고휘도, 초고휘도, 광각초고휘도 반사지) 등의 반사지가 있다.

〈그림 2-1〉 반사지 종류별 구조



(2) 반사지의 성능

반사지 종류에 따른 성능(색도기준 및 성능기준)·사용구분과 입사각/관측각 등에 대한 규정은 KS A 3507(산업 및 교통 안전용 재귀반사시트) 규정을 준용한다. 바탕면에는 고휘도 반사지 성능 이상을 사용해야 하며 글자, 도안부분은 초고휘도 또는 광각초고휘도 반사지 성능 이상의 반사지를 사용해야 한다.

(가) 색도기준

표지에 사용되는 반사지의 최소색도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2-1〉 반사지의 색도범위

색	색도좌표의 범위							
	1		2		3		4	
	x	y	x	y	x	y	x	y
흰색	0.303	0.300	0.368	0.366	0.340	0.393	0.274	0.329
노랑	0.498	0.412	0.557	0.442	0.479	0.520	0.438	0.472
빨강	0.648	0.351	0.735	0.265	0.629	0.281	0.565	0.346
주황	0.558	0.352	0.636	0.364	0.570	0.429	0.506	0.404
녹색	0.026	0.399	0.166	0.364	0.286	0.446	0.207	0.771
청색	0.140	0.035	0.244	0.210	0.190	0.255	0.065	0.216
갈색	0.430	0.340	0.610	0.390	0.550	0.450	0.430	0.390

주 : 채귀반사시트에 대한 한국산업규격 KS A 3507

〈표2-2〉 휘도율(Y%) : 주간밝기

색상	유형 III		유형 IV,VII,VIII,IX	
	최소	최대	최소	최대
흰색	27	-	40	-
노랑	15	45	24	45
빨강	2.5	12	3.0	15
주황	14	30	12	30
녹색	3.0	9.0	3.0	12
청색	1.0	10	1.0	10
갈색	4.0	9.0	1.0	6.0

주 : 채귀반사시트에 대한 한국산업규격 KS A 3507

(나) 성능기준

표지에 사용되는 반사지로서 필요한 반사성능은 다음표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단, 반사지는 색변화나 갈라지거나 벗겨짐이 생겨서는 안된다.

〈표2-3〉 고휘도 반사지(캡슐렌즈형)의 반사계수(High Intensity)

단위: $\text{cd} \cdot \text{lx}^{-1} \cdot \text{m}^{-2}$

관측각	입사각	흰 색	노 랑	빨 강	주 황	녹 색	청 색	갈 색
0.2°	-4°	250	170	45	100	45	20	12
0.2°	30°	150	100	25	60	25	11	8.5
0.5°	-4°	95	62	15	30	15	7.5	5.0
0.5°	30°	65	45	10	25	10	5.0	3.5

주 : 채귀반사시트에 대한 한국산업규격 KS A 3507

〈표2-4〉 고휘도 반사지(프리즘형)의 반사계수(High Intensity)

단위: $\text{cd} \cdot \text{lx}^{-1} \cdot \text{m}^{-2}$

관측각	입사각	흰 색	노 랑	빨 강	주 황	녹 색	청 색	갈 색
0.2°	-4°	250	170	35	100	35	20	7.0
0.2°	30°	80	54	9	34	9	5.0	2.0
0.5°	-4°	135	100	17	64	17	10	4.0
0.5°	30°	55	37	6.5	22	6.5	3.5	1.4

주 : 채귀반사시트에 대한 한국산업규격 KS A 3507

〈표2-5〉 초고휘도 반사지(프리즘형, 유형Ⅶ)의 반사계수
(Super High Intensity)

단위: $\text{cd} \cdot \text{lx}^{-1} \cdot \text{m}^{-2}$

관측각	입사각	흰 색	노 랑	빨 강	주 황	녹 색	청 색
0.2°	-4°	750	560	150	280	75	34
0.2°	30°	430	320	86	160	43	20
0.5°	-4°	240	180	48	90	24	11
0.5°	30°	135	100	27	50	14	6

주 : 채귀반사시트에 대한 한국산업규격 KS A 3507

〈표2-6〉 초고휘도 반사지(프리즘형, 유형VIII)의 반사계수
(Super High Intensity)

단위: $\text{cd} \cdot \text{lx}^{-1} \cdot \text{m}^{-2}$

관측각	입사각	흰 색	노 랑	빨 강	주 황	녹 색	청 색	갈색
0.2°	-4°	700	525	105	265	70	42	21
0.2°	30°	325	245	49	120	33	20	10
0.5°	-4°	250	190	38	94	25	15	7.5
0.5°	30°	115	86	17	43	12	7	3.5

주 : 채귀반사시트에 대한 한국산업규격 KS A 3507

〈표2-7〉 광각초고휘도급 반사지(프리즘형)의 반사계수
(Very High Intensity)

단위: $\text{cd} \cdot \text{lx}^{-1} \cdot \text{m}^{-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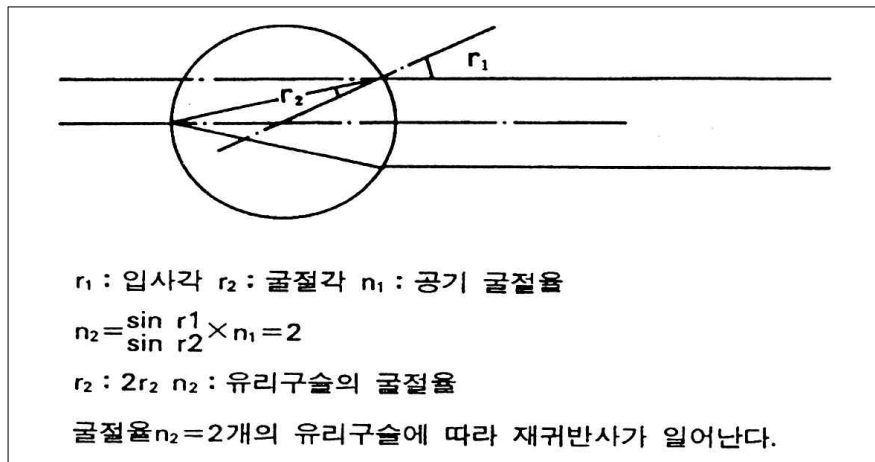
관측각	입사각	흰 색	노 랑	빨 강	주 황	녹 색	청 색
0.2°	-4°	380	285	76	145	38	17
0.2°	30°	215	162	43	82	22	10
0.5°	-4°	240	180	48	90	24	11
0.5°	30°	135	100	27	50	14	6
1°	-4°	80	60	16	30	8	3.6
1°	30°	45	40	9	17	4.5	2

주 : 채귀반사시트에 대한 한국산업규격 KS A 3507

(3) 입사각과 관측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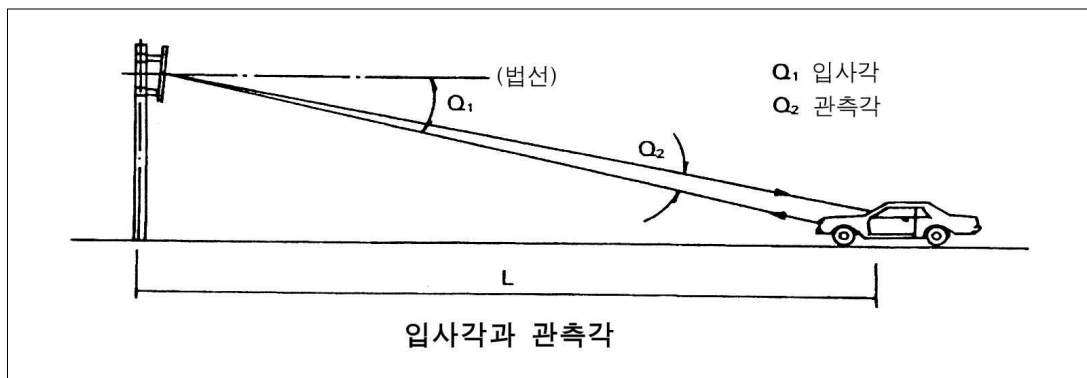
표지에 이용되는 반사지는 표지판에 전조등 외의 빛이 정면으로 닿는 경우(입사각=0°) 외에 사선으로 와닿는 경우(입사각>0°)에도 정확히 채귀반사해야 한다. 표지판과 전조등의 빛이 이루는 각도를 입사각이라 한다.

〈그림 2-2〉 입사각



운전자의 시선과 전조등의 빛이 표지판에서 이루는 각도를 관측각이라 하는데 차종과 표지판의 높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시인성관련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 입사각과 관측각의 관계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2-3〉 입사각과 관측각



표지판과 운전자의 거리(L)가 약 200m~230m 정도인 경우 관측각 $Q_2 = 0.2$, 트럭, 버스의 경우 $Q_2 = 0.5$ 가 된다.

2. 제작

가. 표지판

- (1) 표지판을 제작시에는 중소기업청 용접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평면을 이루어야 하고 표지판에 굴곡이 없어야 한다.
- (2) 표지판은 판면을 약품으로 깨끗이 닦아낸 후 중성세제와 물로 씻어서 말리되 이면은 약품처리 하지 않아도 된다.
- (3) 제작 완료된 각종 표지판은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제작시 절단, 굴곡, 용접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굴곡, 휨, 균열 등이 일체 없어야 한다.
- (4) 표지판 및 지주 제작시 용접은 중소기업청 용접작업기준에 의하되 스폿트, 알곤 용접을 양측 30cm 간격으로 시행하여, 반사지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용접부위는 견고하게 부착하여 탈리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 (5) 표지판의 절단부분 및 용접부위는 매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을 처리하여야 한다.
- (6) 표지판(보강대 및 밴드포함)은 무광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반사지 부착이나 페인트 도장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면처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 (7) 캡은 지주에서 탈리되지 않도록 2개소 이상 점용접을 시행하여야 한다.
- (8) 찬넬식으로 표지판을 제작시 판과 판을 연결하여야 할 때에는 연결부분이 평면을 이루어야 하고, 표지판에 절곡 등이 없어야 하며 판과 판을 후면에서 볼트 등으로 접합하여 판을 견고히 지탱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찬넬과 지주 결합용 클립은 KS D 6701의 A6061FD-T6의 규격품을 사용하고 알루미늄판과 보강대의 결합은 용접을 견고히 하거나 알루미늄용접 Tape를 사용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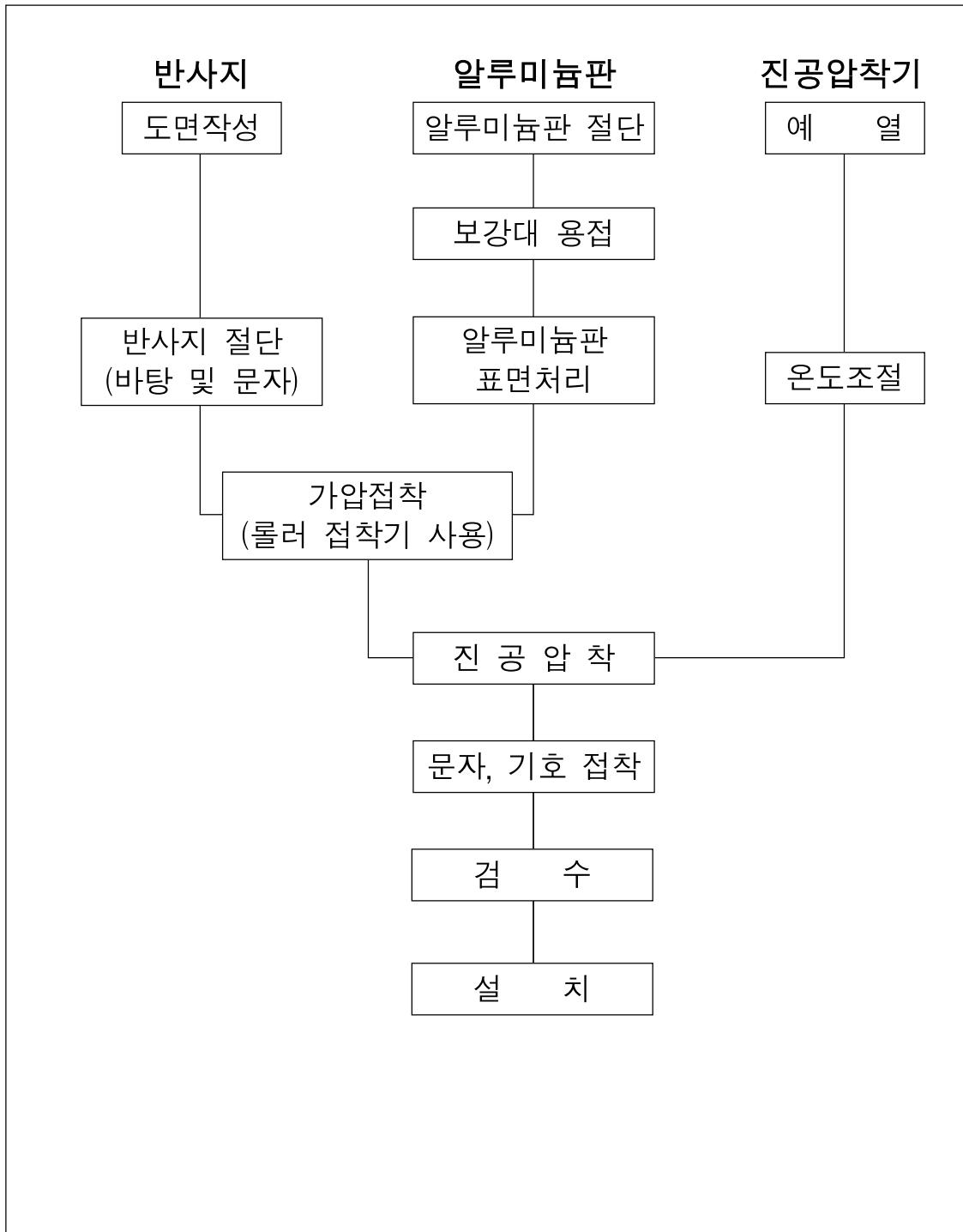
나. 지주

- (1) 용융아연도금의 작업은 KS D 9521(용융아연도금 작업 표준)에 따른다.
- (2) 지주 및 지주용 캡, 지주연결용 강판에 대한 도금은 KS D 8308(용융아연도금)에 준하며 아연부착량은 550g/m^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3) 원형지주는 이음부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음 사용시에는 지하 매설부분에 한하여 30cm 이하에서 이음하여야 하며, 이음시에는 견고하게 용접 처리하여야 한다.
- (4) 지주는 소정의 기준에 의거(길이, 폭, 직경, 두께 등) 정확한 치수로 제작되어야 하며, 일체 흠이 없어야 한다.
- (5) 볼트, 너트, 와서는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 (6) 지주는 표면에 부착된 녹, 기름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도금을 시행하여야 하며, 지주는 곧아야 되고 내외면은 결함이 없어야 한다.
- (7) 원형지주, H형강지주, 지주연결판 및 캡은 용접 또는 천공작업이 완료된 후 용융아연도금을 시행하여야 한다.
- (8) 안내표지용 알루미늄 압출형재를 볼트, 너트, 와셔로 연결 조립시 형재와 형재사이에 완전 밀착되어 틈이 생기지 않도록 기계장치 등으로 조치한 후 견고하게 조여야 한다.
- (9) 지주와 결합되지 않은 보조표지판은 제작 및 운반시 굴곡이나 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지판 뒷면에 H형강 등으로 가조립하여 안전하게 보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반사지

- (1) 반사지를 접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바탕색상의 반사지를 부착하는 경우만 허용되며, 이 경우 윗부분과 아래부분을 5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그 외 글자, 기호, 화살표, 엠블렘 등 그래픽요소는 컴퓨터에 의해 자동도안 및 절단되어야 하며, 조각난 반사지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재단방향에 따른 반사성능의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2) 반사지 부착작업은 습식(감압성 접착식 : Pressure Sensitive) 반사지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 18℃~24℃가 유지되는 장소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고무롤러 접착기 등을 사용하여 완전히 밀착되도록 한다. 건식(열활성 접착식 : Heat Activated) 반사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고무롤러 접착기 등으로 판과 반사지 사이의 공기를 제거한 후, 진공가열 압착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접착하여야 한다.
 - (가) 열활성 접착식(Heat Activated : 건식)
 - 넓은 면적(바탕면)을 접착할 때 사용한다.
 - 열을 가함으로써 접착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반드시 롤러 접착기로 가압착하여 공기를 빼낸 후 진공 압착기를 사용하여 완전 접착한다.
 - (나) 감압성 접착식(Pressure Sensitive : 습식)
 - 글자, 기호 등 접착할 면적이 그다지 크지 않을 때 사용한다.
 - 실온에서 수작업 또는 고무롤러 접착기를 사용하여 접착한다.
- (3)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도면에 의거 정확하게 재단하고 정위치에 부착한다. [<그림2-4> 반사지 부착 과정도 참고]
- (4) 반사지 위에 인쇄 가공할 경우에는 실크 스크린 프로세스법에 의하여 한다.

〈그림 2-4〉 반사지 부착 과정도



3. 시험 및 감독

가. 표지판 및 지주의 시험

〈표2-8〉 시험의 종류

구 분	시험 종류	시험 규정	비 고
알루미늄판, 찬넬, 앵글, 밴드 및 볼트	인 장	KSB0802	
	굽 힘	KSB0804	보강대, 찬넬 및 볼트 제외
지 주	인 장	KSB0802	
	점용점부 인 장	KSB3558	
	굴 곡	KSB0804	
아연 도금	아 연 부 착 량	KSB0201	

나. 반사지의 성능시험

- (1) 표지에 사용할 반사지는 신품으로서 “반사지규격 및 색도 기준(KS A 3507)”에 부합되는 품질의 제품이어야 한다.
- (2) 표지제작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반사지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공급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재료공급승인신청서에는 공공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검사 성적서와 품질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4) 반사지의 반사성능 및 색채에 대한 시험방법은 KS A 3507.7.2~8.10에 준한다.

- (5) 표지에 사용될 반사지는 “반사지의 규격 및 색도기준(KS A 3507)” 중 색도기준과 성능기준에 준하는 반사지로서 10년간에 상당하는 옥외 노출시험을 거친 제품으로서 색의 변화, 반사지의 균열 및 탈리현상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최초 반사성능의 8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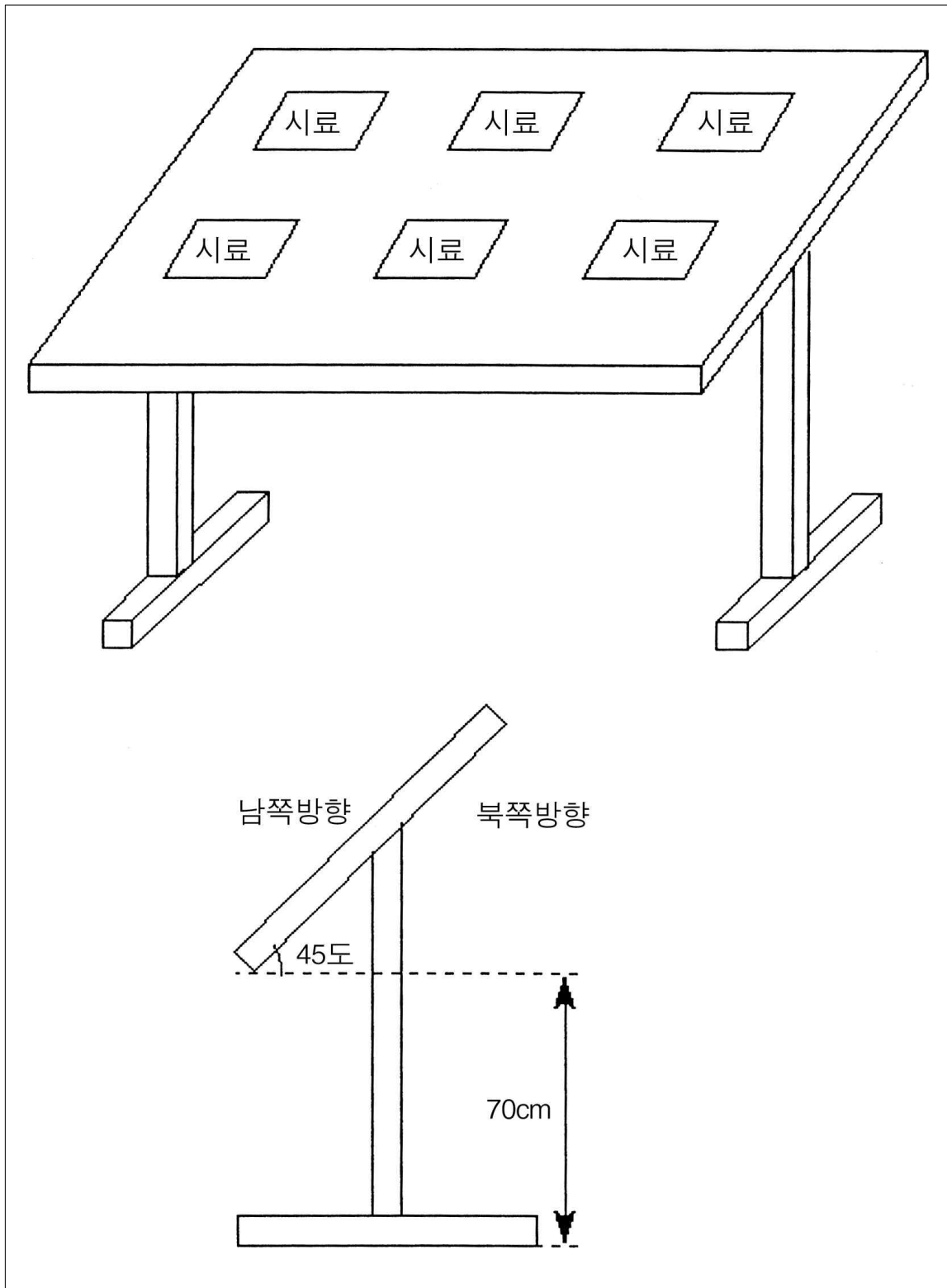
〈옥외노출시험〉

옥외노출시험은 반사지가 실제로 옥외에 노출되었을 때 얼마나 오랜시간동안 도로표지로서 요구되는 성능을 유지하는가에 대한 시험이다. 대체로 반사지의 내구성에 관하여 종래에 해오던 실험실에서의 기후축진시험이 실제 옥외에 설치되어 시간이 경과하였을 때 제대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되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옥외노출시험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옥외노출시험은 <그림2-5>와 같이 45°각도로 남쪽방향으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것은 보다 가혹한 노출효과를 주기 위해서이다. 즉, 이 상태에서 5년간 노출시킨 효과는 수직 상태에서 10년간 노출시킨 효과에 해당한다고 본다.

다. 감독

- (1) 각급 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 제작업체로 하여금 도로표지 규칙과 본 지침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 (2) 각 해당 감독관청은 표지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재질이 도로표지규칙과 본 지침에 규정한 제품인지를 정확히 감독하여야 한다.

〈그림 2-5〉 옥외노출 시험대



재료공급원 승인 신청서

_____귀하

당사는 귀하의 도로표지제작 및 설치공사에 아래와 같은 반사지를 사용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건명 : _____

사용제품 : _____사 제품

☐ 고휘도반사지(캡슐렌즈형), ☐ 고휘도반사지(프리즘형)

☐ 초고휘도반사지(프리즘형), ☐ 광각초고휘도반사지(프리즘형)

1. 반사성능

관찰각(°)	입사각(°)	흰색	노랑	빨강	주황	녹색	청색	갈색
0.2	-4							
0.2	+30							
0.5	-4							
0.5	30							

2. 색도

색		흰색	노랑	빨강	주황	녹색	청색	갈색
색도 좌표	x							
	y							
Y값(%)								

3. 색상

흰색	노랑	빨강	주황	녹색	청색	갈색
견본부착						

_____주식회사

대표이사 _____(인)

붙임 : 1. 시험검사성적서
2. 품질보증서

시험검사성적서

TEST REPORT

① 의뢰기관 Requesting Organ.			② 시험번호 Test No.	
③ 시험대상	시험명 Test Name		제작회사 및 형식 Manufacturer & Model	
	시험품명 Test Item		시험일자 Test Date	
④ 시험환경	온도 Temperature		습도 Humidity	
⑤ 시험결과 : Test Result				

위의 시험검사 결과는 국가원기 및 표준기와 소급성이 유지된 표준
계량측기로서 시험검사한 성적서임을 증명함.

○ ○ ○ ○ 장

품 질 보 증 서

_____ 귀하
 _____ 주식회사는 아래의 당사 제품이
 _____에 사용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품질을 보증합니다.

구 분	
제품명	
보 증 내 용	상기 제품은 제조회사의 작업 절차에 따라 작업되었을 때 접착후 10년동안 최초반사성능의 80% 이상을 유지하며 색의 변화 및 균열, 박리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보증하며, 보증기간 내의 파손은 제조회사에서 이를 변상한다. 단, 천재지변 혹은 추돌사고, 고의적인 손상행위로 인한 파손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사용자 의무사항>

- ①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작업절차를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이 보증을 받지 못한다.
- ② 사용자는 시공일자를 정확히 기록할 책임이 있다.
- ③ 상기제품이 접착된 판의 표면자체가 손상되어 일어나는 파손은 보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00

_____주식회사
 대표이사_____ (인)

제 3 장 도로표지의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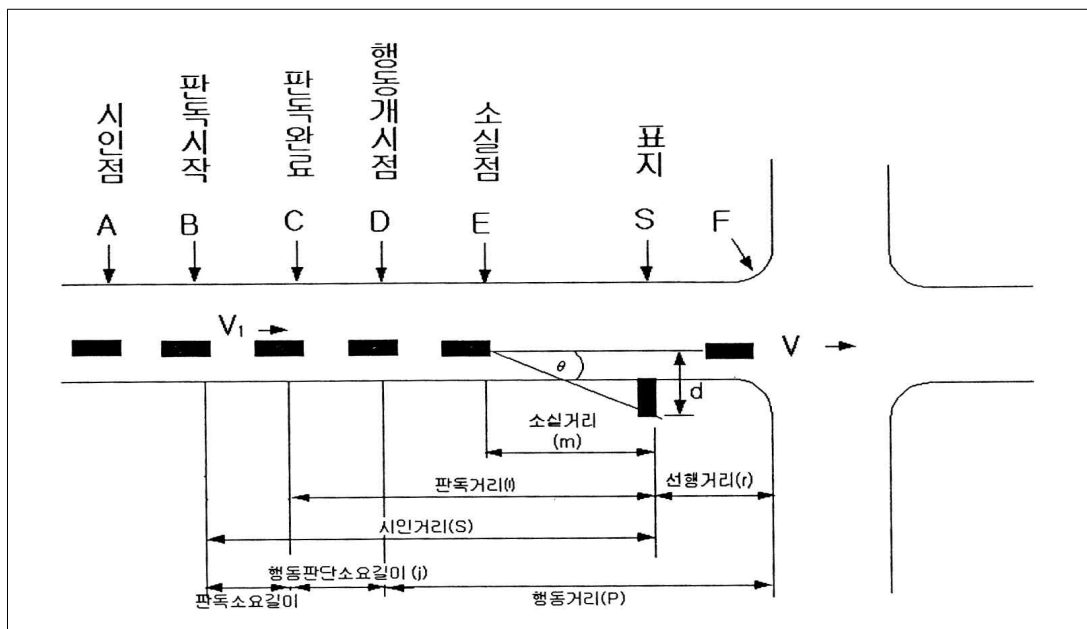
1. 설치체계

도로표지는 도로이용자의 주의를 끌고, 행동결정가능 거리에서 읽을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행 중 운전자는 시인점 A에서 도로표지 S의 존재를 알고, B에서 도로표지의 내용을 보기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완전히 인식하는 곳이 C지점이며, 그 내용에 대하여 자신이 취해야 하는 행동을 판단하는 약간의 시간이 경과한 후 행동을 개시한다. 이 행동개시점 D로부터 교차로(또는 위험장소)인 F지점까지의 거리내에서 운전자는 필요한 행동(차선변경, 감속, 방향변경 등)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완료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B에서 S까지의 거리를 시인거리(s), C에서 S까지의 거리를 판독거리(ℓ)라 하며, 만약 이 판독거리가 도로표지의 소실점 E로부터 도로표지 S까지의 거리보다 길지 않으면 운전자는 도로표지의 내용을 충분하게 판독할 수 없다.

〈그림 3-1〉 도로표지에 대한 운전자의 행동과정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판독거리(ℓ)을 구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P = \ell + r - j \leq (n-1) \cdot V_1 \cdot t_1 + (V_1^2 - V_2^2)/(2a) \quad \dots\dots\dots$$

①

여기서 $(n-1) \cdot V_1 \cdot t_1 \quad \dots\dots\dots$ 차선변경 필요거리

$\frac{(V_1^2 - V_2^2)}{2a} \quad \dots\dots\dots$ 감속(정지, 방향변경) 필요거리

$$\ell \geq m = \frac{d}{\tan \Theta} \quad \dots\dots\dots \quad \textcircled{2}$$

P : 행동거리

ℓ : 판독거리

r : 선행거리

j : 행동판단소요길이($j = t_2 \cdot V_1$)

n : 차선수

V1 : 접근속도(85% 주행속도)

V2 : 교차로(또는 위험장소)에서의 속도

t1 : 1회 차선변경에 요하는 시간 (약 10초)

a : 가속도 ($-0.75 \sim -1.5\text{m/sec}^2$)

t2 : 행동판단시간(2.0~2.5초)

m : 소실거리

d : 운전자의 눈의 위치(지상 1.2m 높이)로부터 도로표지까지의 측방 또는 상향거리

Θ : 소실점에서 진행방향선과 표지의 가장 바깥선이 이루는 각도(보통 $\Theta = 15^\circ$ 를 표준으로 하며, 올려다보는 도로표지는 상향각으로 $\Theta = 7^\circ$ 를 표준으로 한다.)

식 ①, ②를 도로표지의 설치장소와 위치에 관한 변수 r(선행거리), d(운전자 눈의 위치로부터 도로표지까지의 측방 또는 상향거리)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r \geq (n-1) \cdot V_1 \cdot t_1 + \frac{(V_1^2 - V_2^2)}{2a} + t_2 \cdot V_1 - \ell \quad \dots\dots\dots \textcircled{3}$$

$$d = \ell \cdot \tan \Theta \quad \dots\dots\dots \textcircled{4}$$

식 ③, ④를 만족시키도록 도로표지의 설치장소와 위치를 결정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로구조상 이상과 같은 수식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에 한해서만 적절한 설치장소와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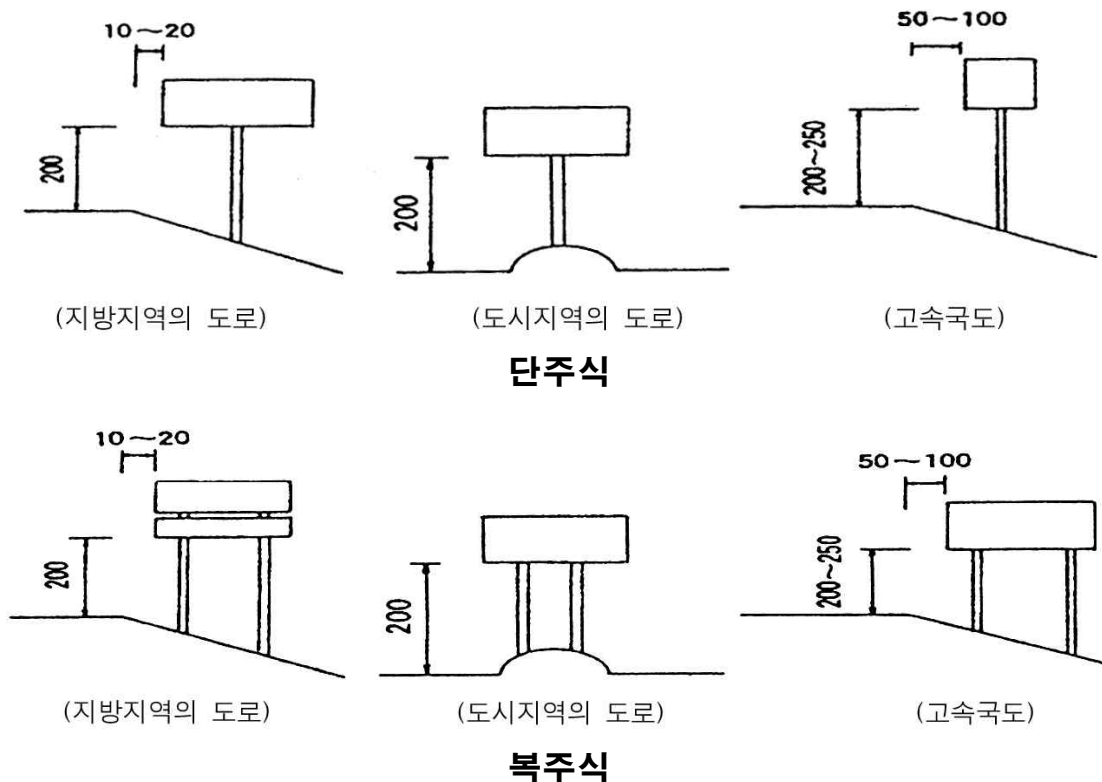
2. 설치형식

가. 지지방식에 따른 구분

(1) 단주식 또는 복주식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의 표지판을 같은 기둥에 부착하여 도로의 가장자리, 보도, 도로의 중앙 또는 중앙분리대 등에 설치하는 방식을 단주식 또는 복주식이라 한다. 지주가 하나인 단주식과 지주가 두 개인 복주식 두 종류가 있다. 도로표지판의 설치 높이는 지방지역 및 도시지역의 도로에 설치할 경우 200cm, 고속도로에 설치할 경우 200~250cm를 원칙으로 한다. 표지판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도로표지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므로 도로표지의 유지보수, 차량통행에의 장애여부, 시인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보도가 없는 도로에 설치할 경우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도 바깥쪽으로 설치한다.

〈그림 3-2〉 단주식과 복주식 (단위 :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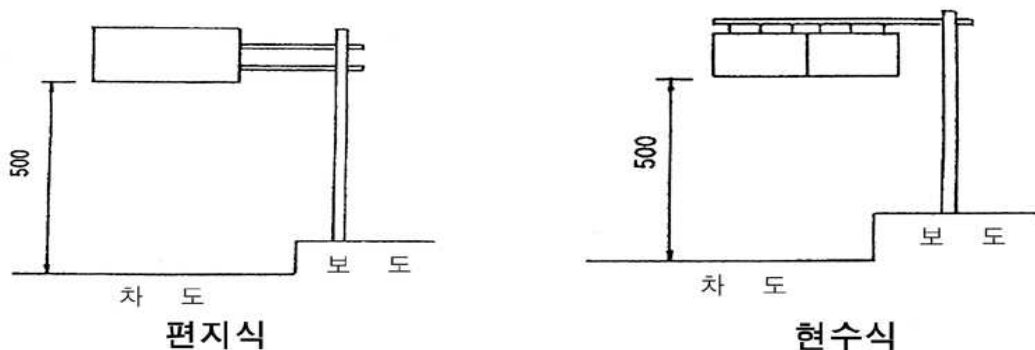
(2) 편지식 및 현수식

편지식 또는 현수식이란 도로의 가장자리, 보도 또는 중앙분리대 등에 설치된 지주를 차도부분까지 높게 달아내어 끝부분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방법을 말한다.

표지판의 높이는 차도의 건축한계인 450cm와 시공오차, 자재의 구부러짐, 노면의 덧씌우기 등을 고려하여 50cm의 여유를 두어 500cm를 기준으로 한다. 적설지역의 경우 적설높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종단구배가 큰 도로에서는 시거를 고려하여 설치높이를 설정한다.

지주의 설치위치는 단주식 또는 복주식 기준에 따르고 표지판의 설치위치는 도로이용자가 전방을 주시했을 때 쉽게 눈에 띄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그림 3-3〉 편지식 및 현수식 (단위 :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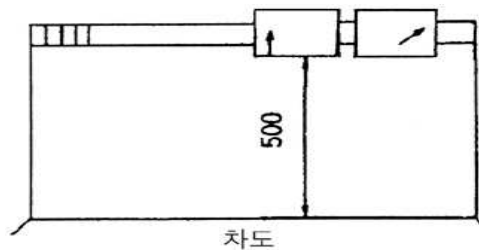
(3) 문형식 및 부착식

문형식이란 차도를 가로지르는 문형 시설물에 표지판을 부착하여 차도 상부에 위치하도록 설치하는 방법을 말한다.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를 위하여 다차로 도로로서 주행속도가 높은 도로에서 아래의 경우에는 문형식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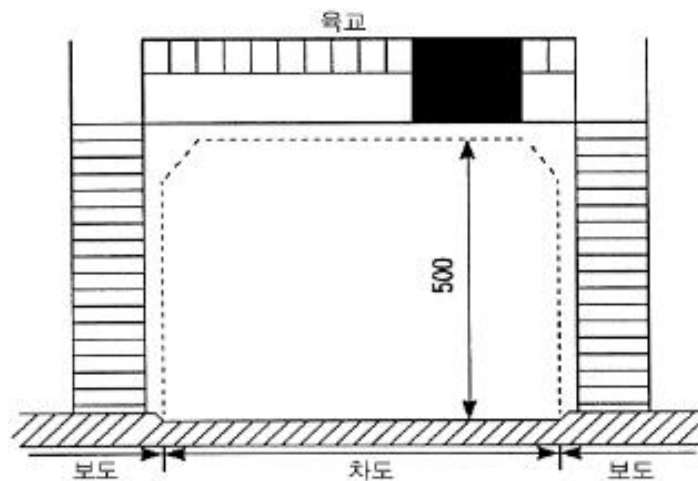
- (가) 복잡한 교차로의 경우
- (나) 대형차의 혼입률이 높거나 기타 요인으로 인하여 시야의 확보가 불량한 경우
- (다) 다차선 출구(Exit)나 좌회전 출구(Exit)의 경우
- (라) 고속국도가 분리되는 경우

- (마) 도로의 안전운행상 차선지정이 필요한 경우
- (바) 국도와 국도, 국도와 고속국도가 교차시에 필요한 경우
- (사) 고속국도의 다차로 진출입구(진출입구가 편도2차로이상)
- 부착식이란 다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이용하여 표지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서 본 시설물의 기능을 손상하지 않도록 설치함과 동시에 운전행태, 차량특성을 고려하여 표지판이 운전자의 시선을 끌 수 있도록 설치한다.

〈그림 3-4〉 문형식 및 부착식 (단위 : cm)



문형식



부착식(육교)

나. 설치지역에 따른 도로표지 형식

- (1) 도로표지를 지방지역도로에 설치할 경우 복주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보편적이나 도로표지설치로 인하여 보행자통행에 지장을 줄 경우와 도로주변에 건물·지장물 등이 있어 시인성 확보가 어려울 경우, 4차선이상 도로로서 고속주행으로 인해 표지판의 시인성 확보가 필요한 구간에는 편지식 또는 현수식으로 설치한다.
- (2) 도시지역도로에 도로표지를 설치할 경우 편지식 또는 현수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행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곳에는 단주식 또는 복주식으로 설치한다. 그리고 도로표지 내용에 따라 부착식으로 설치를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될 때는 부착식으로 설치한다.
- (3) 고속도로의 도로표지는 도로표지의 종류에 따라 단주식, 복주식, 편지식, 문형식으로 설치할 수 있으나, 왕복 4차선 이상의 고속도로에서는 문형식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왕복 2차선 고속도로에서는 편지식, 복주식 등 지형여건에 따라 설치한다.
- (4) 설치장소 주위에 육교 등이 있을 때는 부착식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설치하고 주행속도가 높은 도로에서 차선별로 교통정보의 전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형식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3. 설치장소 및 위치

가. 설치장소의 선정

도로표지의 설치장소 선정에 있어서 도로표지의 시인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기타 도로의 구조·교통의 상황 등을 검토하는데 덧붙여 운전자가 표지의 지시에 안전하고 원활하게 따를 수 있도록 도로표지의 종류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1) 도로이용자가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곳을 선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곡선 구간·절토면 및 식목 등으로 시야에 장애가 되는 곳에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 (2) 도로표지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이고, 그 설치에 있어서 도로 이용자의 행동특성을 배려해야 한다. 따라서 설치장소의 선정에 있어서는 시인거리, 관독거리, 운전자의 행동 등을 검토하고 적절한 설치장소를 선정해야 한다.
- (3) 도로표지의 시인성을 방해하는 원인으로는 크게 도로의 부속시설 및 도로점용물로 대별된다. 도로표지의 장애가 되는 도로의 부속시설에는 입체횡단시설, 조명시설, 가로수, 기타 표지가 있고, 이것의 설치상황 및 장애의 설치계획을 검토하는데 덧붙여 도로표지의 설치장소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경우에는 녹음기에 장애가 되어 시거확보에 지장이 없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도로점용물로서는 교통안전시설, 전주, 소화전, 공중전화, 간판, 우체통, 지하철의 출입구 등이 있고, 이것의 설치 상황을 살펴본 다음에 설치장소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사설안내표지 점용신청이 있을 때에도 기존의 표지에 대해 시인성이 확보되도록 확인한 다음에 허가를 해야 한다.

- (4) 출입제한이 없는 도로에 도로표지를 설치할 때에는 연도로부터의 출입이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장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 (5) 특히 교차점 부근에는 도로표지와 각종 교통안전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안전하게 교차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교차로에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 교차로 부근을 피하고 운전자의 시거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6) 도로표지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교통의 장애가 되는 경우는 반드시 피하여야 한다.

나. 일반적인 유의사항

- (1) 건축한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설치함과 동시에 차도가 가장 자리로부터 필요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2) 보도 등의 유효폭원을 필요 이상으로 좁게 하지 않도록 한다.
- (3) 기존시설이나 신호기의 시인성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 (4) 기타 표지가 가려지거나 손상받을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5) 전주, 시가지내의 수목과 광고물, 전화 및 우체통 등을 피하여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한다.
- (6) 교차점부근에 각종표지를 집중적으로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7) 도로구조 보존에 지장이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 (8) 연도주민의 거주생활에 지장이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9) 시가지내에서 방향예고표지(교차로에서 100~300m 못미친 곳)와 방향표지(교차로에서 10~30m내외 못미친 곳)를 설치할 경우 교차로간의 거리가 근접하여 설치함이 부적합할 때는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생략할 수 있다.

(10) 오르막길 및 내리막길에는 표지설치 높이를 도로의 구배에 따라 변경 설치할 수 있다.

(11) 설치방향은 진행방향과 직각 또는 10°이내 이어야 한다. 도로표지의 설치각도는 일반적으로 표지판과 도로 중심선 또는 진행방향의 각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곡선부 등에 설치할 경우는 해당 도로표지의 시인성과 차량의 진행방향이 잘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보통 주행방향과 직각 또는 10°이내로 설치되어야 한다.

특히, 표지판을 육교등의 도로부대시설에 부착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육교가 도로에 대하여 직각이 아니더라도 표지판은 도로나 진행방향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조표지판은 본 표지판과 같은 각도를 갖도록 부착시켜야 한다.

(12) 고가도로 및 교량을 포함한 도로설계시 도로표지설치를 위한 설치박스를 설계시점에서 고가도로 및 교량의 적절한 장소에 만들어 주어야 한다. 특히 도로표지의 지주를 설치할 수 있도록 램프부분이나 교각부분에 만들어 주되, 도로표지 지주를 지지할 수 있는 철근이 적절한 길이로 나와 있어야 한다.

(13) 도로상에서 설치장소는 다음과 같다.

(가) 도로표지를 지방지역 및 도시지역의 도로에 설치할 경우 표지판의 차도를 향한 끝부분이 도로 가장자리로부터 10~20cm 벗어나 있도록 설치한다.

- (나) 고속도로에 도로표지를 설치할 경우 표지판의 차도를 향한 끝부분이 도로 가장자리로부터 50~100cm 벗어나 있도록 설치한다.
- (14) 편지식 및 문형식 표지판의 연직방향 설치 각도는 안내문안의 시인거리와 관독거리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차량의 전조등 빛이 표지판에 수직방향으로 입사될 수 있도록 연직면으로부터 하향으로 약 3~5°기울여 설치한다.

다. 교차로에 설치되는 도로표지

(1) 지방지역 도로 및 고속국도

〈표 3-1-1〉 지방지역의 도로 및 고속국도에서 설치 표지

교차도로 진행도로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
고속국도	방향예고 방향 노선 분기점 이정	방향예고 방향 노선 이정	방향예고 방향 노선 이정	
국도	방향예고 방향 노선 분기점 이정	방향예고 방향 노선 분기점 이정	방향예고 방향 노선 분기점* 이정	방향예고* 방향 이정*
지방도	방향예고 방향 노선 분기점 이정	방향예고 방향 노선 분기점 이정	방향예고 방향 노선* 분기점* 이정*	방향예고* 방향 이정*
군도		방향예고* 방향 이정*	방향예고* 방향 이정*	방향예고* 방향 이정*

주1 : *의 경우는 교차로의 길이, 기타 사정에 의해서 도로표지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주2 : 도로의 위계가 낮더라도 기능상으로 상위도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도로의 경우를 적용시킨다.

주3 : 군도 및 그 이하 등급의 도로는 노선번호 및 노선마크를 사용할 수 없다.

(2) 도시지역의 도로

〈표 3-1-2〉 도시지역의 도로에서 설치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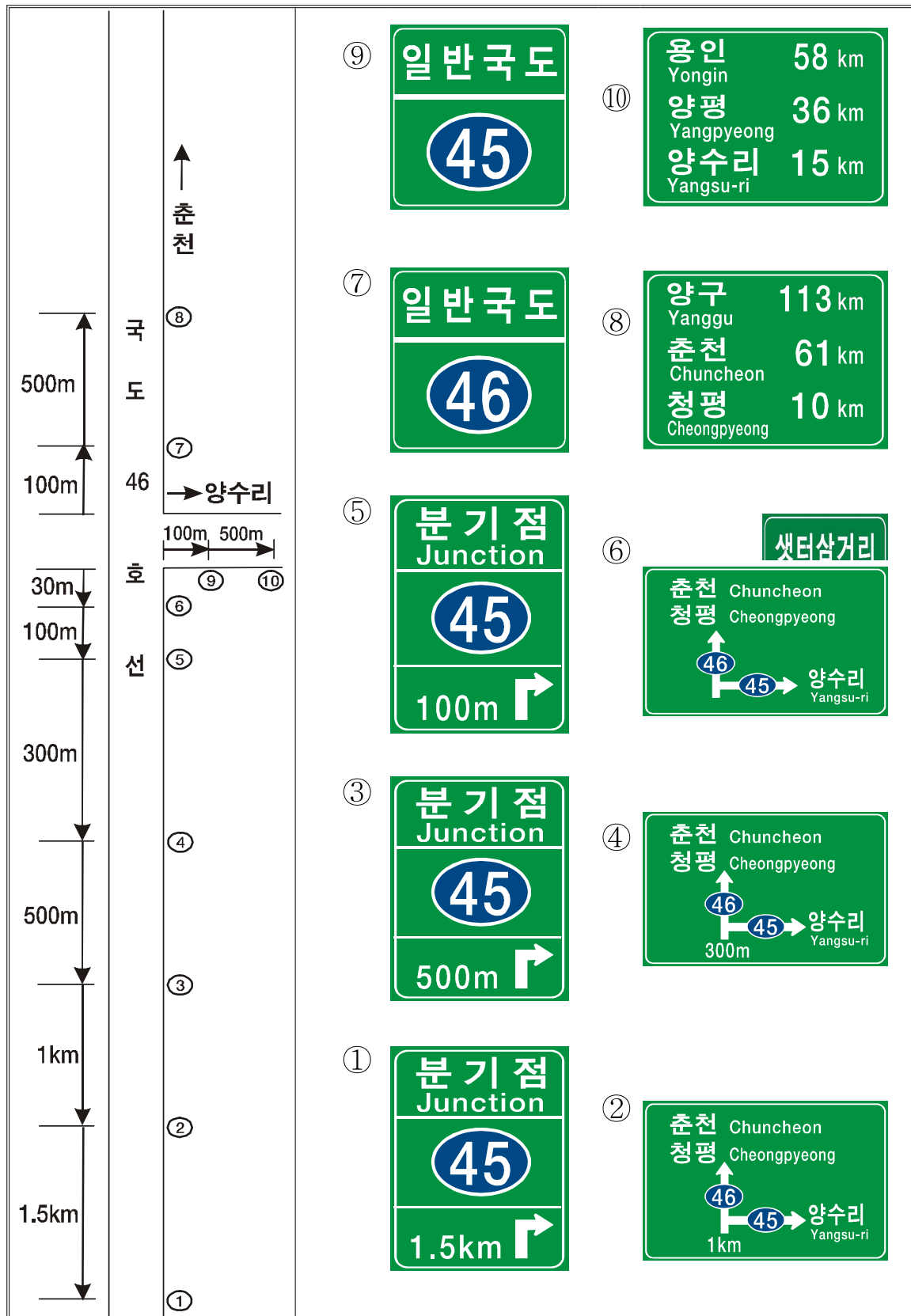
교차도로 진행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간선도로	방향예고 방향 노선(국도)* 분기점(국도) 이정* 보행인*	방향예고 방향 보행인*	방향예고* 방향 보행인*
보 조 간선도로	방향예고 방향 노선(국도)* 분기점(국도)* 이정* 보행인*	방향예고 방향 보행인*	방향예고* 방향 보행인*
집산 및 국지도로	방향예고* 방향 노선(국도)* 보행인*	방향예고* 방향 보행인*	방향* 보행인*

주1 : *의 경우는 교차로의 길이, 기타 사정에 의해서 도로표지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주2 : 도로의 위계가 낮더라도 기능상으로 상위도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도로의 경우를 적용시킨다.

주3 : (국도)의 경우는 도시내 간선도로가 국도와 중복되어 사용될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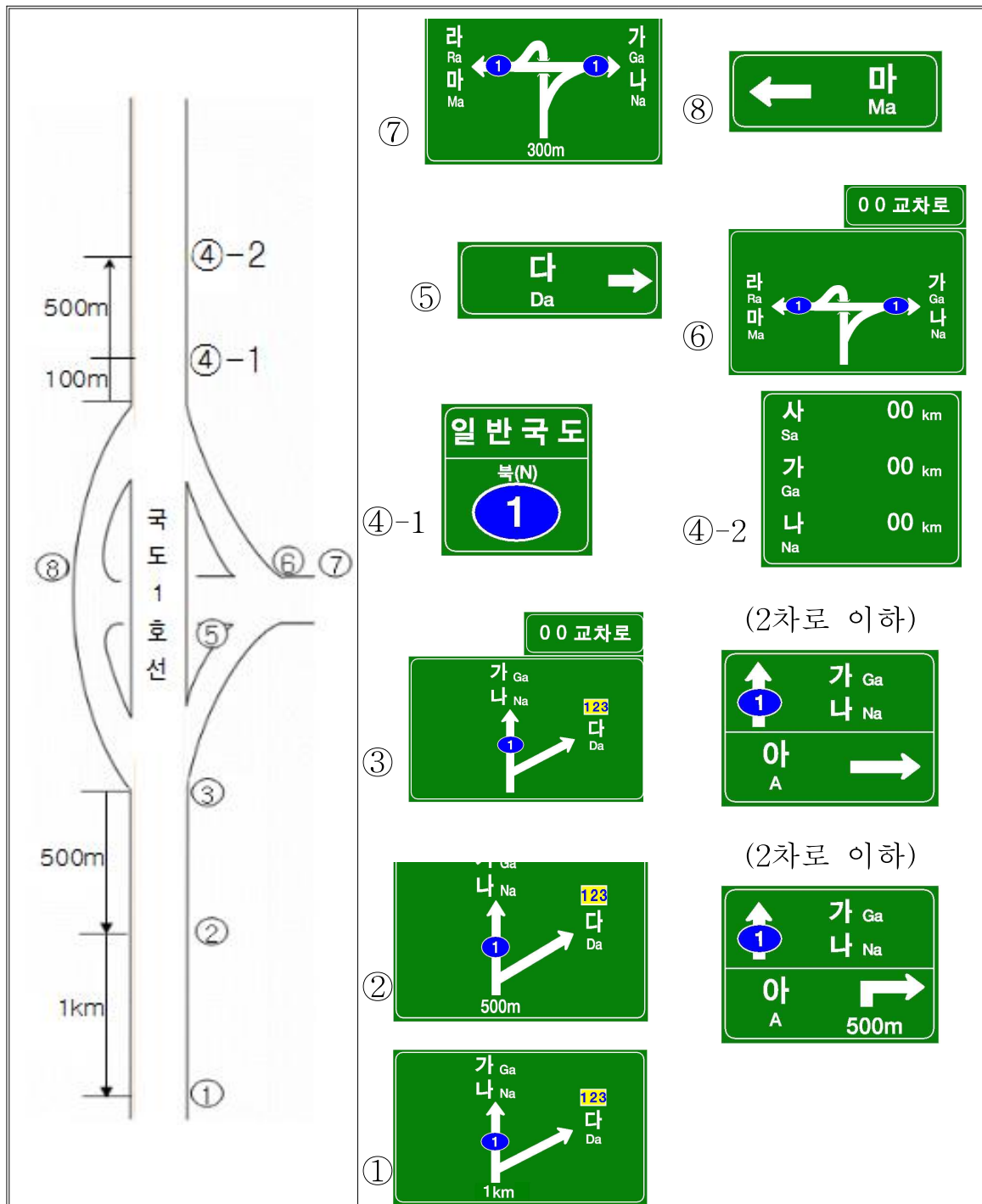
〈그림 3-5-1〉 지방지역에서의 도로표지 설치예



〈그림 3-5-1〉 지방지역에서 도로표지 설치에 설명

- ⑧,⑩ ◦ 주요 교차로를 지나 500m 내외 지점에 이정표지를 설치한다.
- ⑦,⑨ ◦ 주요 교차로를 지나 100m 내외 지점에 노선표지를 설치한다.
- ⑥ ◦ 교차로 전방 10-30m 내외 지점에 방향표지를 설치한다. 설치방법은 편지식을 원칙으로 하며, 지장물 등이 없는 경우에는 복주식도 가능하다.
- ⑤ ◦ 교차로 전방 100m 지점에 분기점표지를 단주식으로 설치하며, 100m 전방에서 국도 45호선이 분기됨을 나타낸다.
- ④ ◦ 교차로 전방 300-500m 내외 지점에 방향예고표지를 설치한다. 직진방향은 국도46호선, 우회전방향은 국도45호선을 주행하게 됨을 나타낸다.
- ③ ◦ 교차로 전방 500m 지점에 분기점표지를 설치한다.
- ② ◦ 국도나 지방도에서 4차로 이상인 경우 통행량과 차량의 속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전방 1km 내외 지점에 방향예고표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 ① ◦ 교차로 전방 1.5km 지점에 분기점표지를 설치한다.

〈그림 3-5-2〉 입체교차로에서 도로표지 설치예
(지방도급 이하 도로와 3지 입체교차)



〈그림 3-5-2〉 입체교차로에서 도로표지 설치에 설명 (지방도급 이하 도로와 3지 입체교차)

- ⑦ ◦ 교차로 300-500m 전방에 접속도로가 2차로 이하 일때는 2방향예고표지(표지번호 403-3)를 복주식으로 설치, 접속도로가 4차로 이상 일때는 2방향예고표지(표지번호 403-3)를 편지식으로 설치

- ⑥ ◦ 교차로 10-30m 전방에 2방향표지(표지번호 403-6, 2차로 이하 360x220, 4차로 이상 400x250)를 편지식으로 설치

- ⑤,⑧ ◦ 1지명방향표지(표지번호 403-7, 160x60)를 복주식으로 설치

- ④ ◦ 노선표지(표지번호 404-1, 120x120)를 교차로 지나 100m 내외 지점에 설치
 ◦ 3지명이정표지(표지번호 402-3, 300x240)를 교차로 지나 500m 내외 지점에 편지식으로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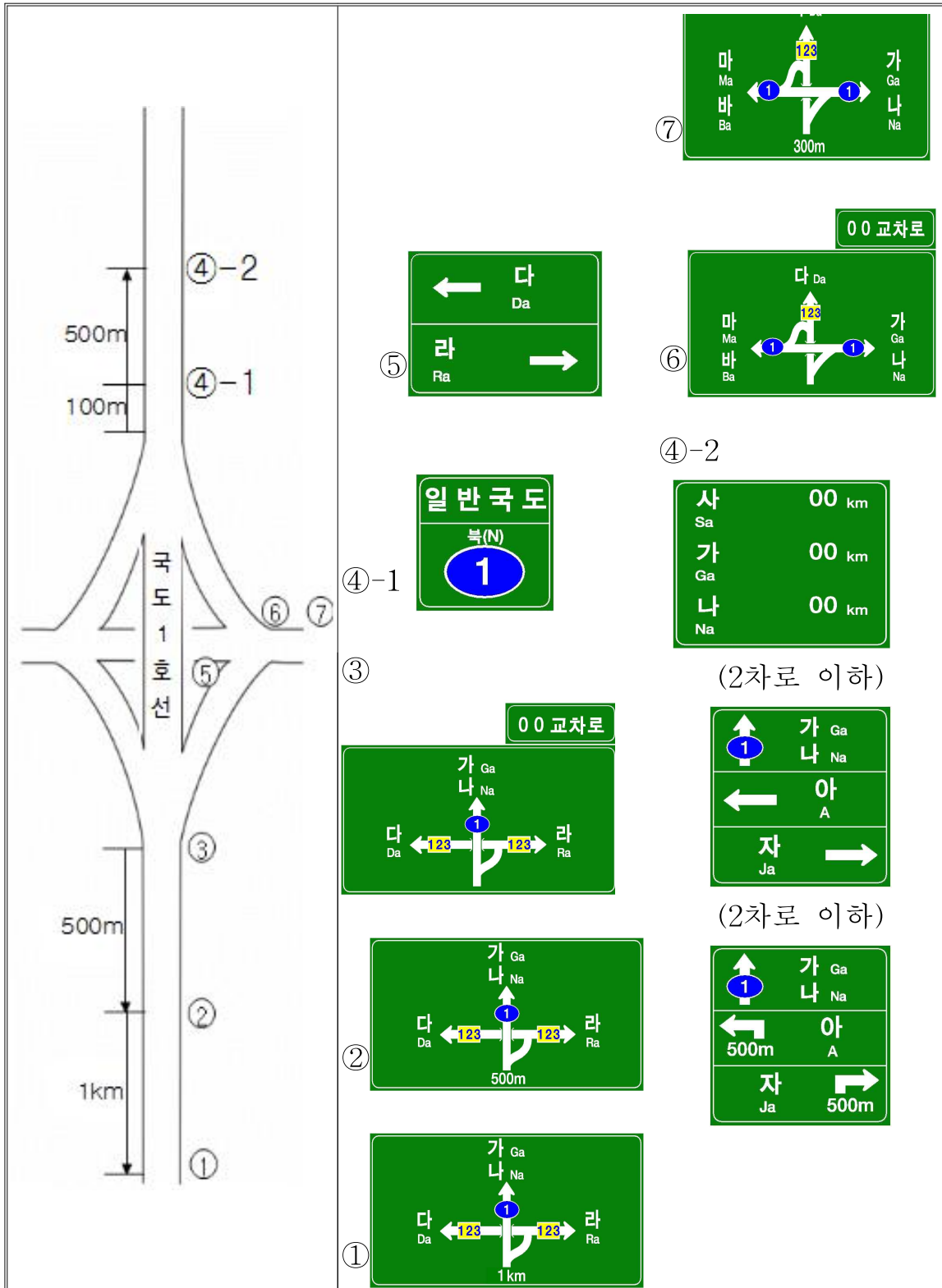
- ③ ◦ 2방향표지(표지번호 403-6, 400x250)를 편지식으로 설치

- ② ◦ 2차 2방향예고표지(표지번호 403-3, 400x250)를 교차로 300-500m 전방에 편지식으로 설치

- ① ◦ 1차 2방향예고표지(표지번호 403-3, 400x250)를 교차로 1km 전방에 편지식으로 설치

- ※ 왕복 2차로인 군도급 이하의 도로와 교차 시에는 ①,④,⑦을 생략할 수 있으며, ②,③은 약식표지로 설치할 수 있다.

〈그림 3-5-3〉 입체교차로에서 도로표지 설치예
(지방도급 이하 도로와 4지 입체교차)



〈그림 3-5-3〉 입체교차로에서 도로표지 설치에 설명 (지방도급 이하 도로와 4지 입체교차)

- ⑦ ◦ 교차로 300-500m 전방에 접속도로가 2차로 이하 일때는 3방향예고표지(표지번호 403-1)를 복주식으로 설치, 접속도로가 4차로 이상 일때는 3방향예고표지(표지번호 403-1)를 편지식으로 설치

- ⑥ ◦ 교차로 10-30m 전방에 3방향표지(표지번호 403-2, 2차로 이하 445x220, 4차로 이상 500x250)를 편지식으로 설치

- ⑤ ◦ 2지명방향표지(표지번호 403-9, 160x120) 또는 2방향표지(표지번호 403-6, 360x220)를 복주식으로 설치

- ④ ◦ 노선표지(표지번호 404-1, 120x120)를 교차로 지나 100m 내외 지점에 설치
 ◦ 3지명이정표지(표지번호 402-3, 300x240)를 교차로 지나 500m 내외 지점에 편지식으로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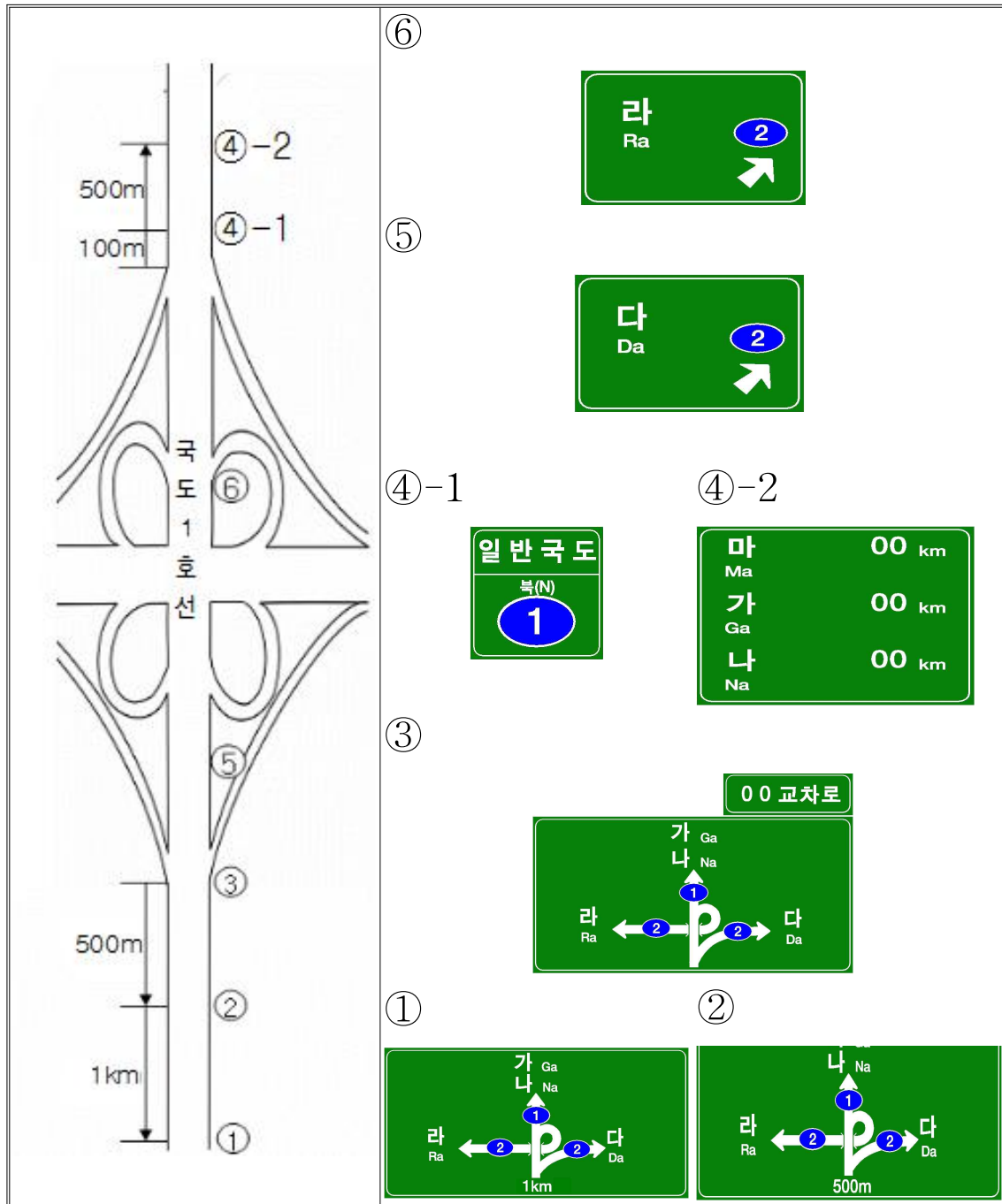
- ③ ◦ 3방향표지(표지번호 403-2, 500x250)를 편지식으로 설치

- ② ◦ 2차 3방향예고표지(표지번호 403-1, 500x250)를 교차로 300-500m 전방에 편지식으로 설치

- ① ◦ 1차 3방향예고표지(표지번호 403-1, 500x250)를 교차로 1km 전방에 편지식으로 설치

- ※ 왕복 2차로인 군도급 이하의 도로와 교차 시에는 ①,④,⑦을 생략할 수 있으며, ②,③은 약식표지로 설치할 수 있다.

〈그림 3-5-4〉 입체교차로에서 도로표지 설치예
(크로버형 완전 입체교차)



〈그림 3-5-4〉 입체교차로에서 도로표지 설치에 설명
(크로버형 완전 입체교차)

- ⑤,⑥ ◦ 1지명방향표지(표지번호 403-7(B), 160x60) 또는 2지명방향표지(표지번호 403-8(B), 160x120)를 안전지대에 복주식으로 설치

- ④ ◦ 노선표지(표지번호 404-1, 120x120)를 교차로 지나 100m 내외 지점에 설치
◦ 3지명이정표지(표지번호 402-3, 300x240)를 교차로 지나 500m 내외 지점에 편지식으로 설치

- ③ ◦ 3방향표지(표지번호 403-2, 500x250)를 감속차로 시점에 편지식으로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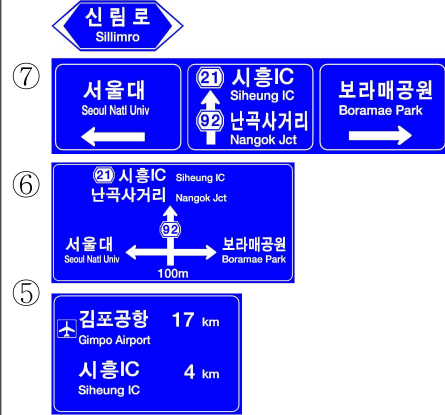
- ② ◦ 2차 3방향예고표지(표지번호 403-1, 500x250)를 교차로 300-500m 전방에 편지식으로 설치

- ① ◦ 1차 3방향예고표지(표지번호 403-1, 500x250)를 교차로 1km 전방에 편지식으로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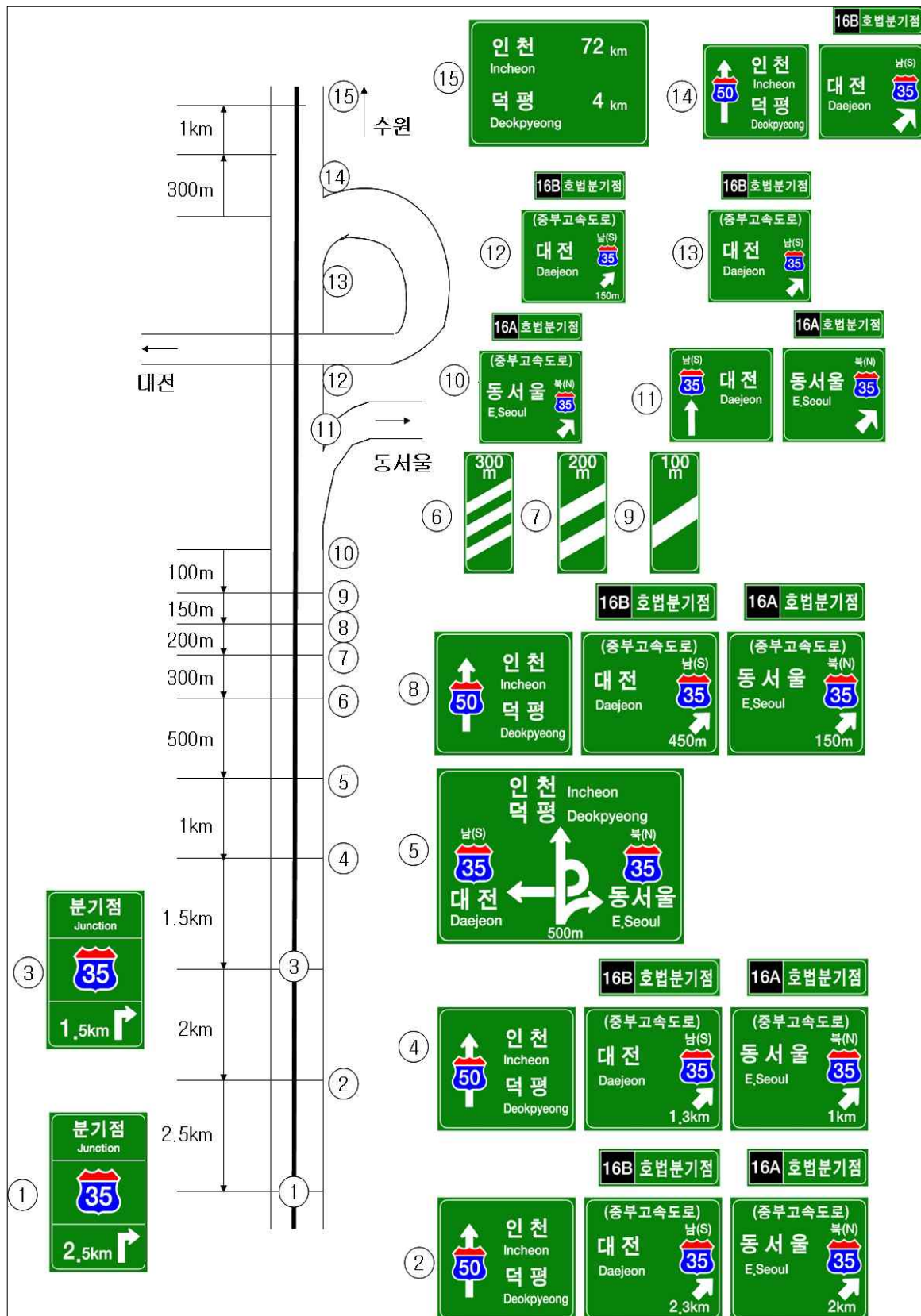
<그림 3-6-1> 도시지역에서 도로표지 설치예(1)

	동수원사거리	⑬ ⑦의 방향표지 참조 ⑮ ○ 좌·우측 방향의 노선은 국도 43호선이기 때문에 화살표내에 표기하고 좌측방향으로 가면 고속국도 50호선을 만나게 된다. ○ 진행방향의 지명을 상하표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좌·우대칭으로 표기하며, 화살표 앞에 만나는 도로의 노선번호가 들어간다 ⑭ ○ ⑤의 노선표지 참조
교육청	장안문 방향	⑬ ○ ⑦의 방향표지 참조 ⑫ ○ 우측방향에 '장안문'은 명승고적지이므로 상징그림 표기 ⑪ ○ ⑤의 노선표지 참조
	종합운동장	⑩ ○ ⑦의 방향표지 참조 ⑨ ○ 진행방향으로 가다보면 국도 43호선을 만나게 되므로 (To the way) 화살표 밖에 표기 ⑧ ○ ⑤의 노선표지 참조 ⑦ ○ ⑥의 내용과 동일 ○ 설치방법 : 현수식 ⑥ ○ 진행방향이 국도 1호선이기 때문에 화살표내에 노선번호 표기 (On the way) ○ 설치방법 : 편지식 ⑤ ○ 현재 국도 1호선을 주행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노선표지 ○ 설치방법 : 단주식
신갈방향	안산방향(고속국도 50번)	④ ○ 동수원IC방향 우측으로 진입 ③ ○ 4차로 도로에 차선지정이 필요한 곳에 문형식으로 표지판을 설치 ② ○ 진행하면 고속국도 50호선을 만난다는 의미 ○ 설치방법 : 단주식 ① ○ 수원시와 의왕시 경계에 시경계 표지를 설치 ○ 설치방법 : 복주식 또는 편지식

〈그림 3-6-2〉 도시지역에서 도로표지 설치예(2)

독산동길	 ⑩	⑩ ○ 도로의 여건상 방향예고표지와 방향표지를 모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방향표지를 이와 같이 설치할 수 있다. ○ 방향예고표지와 예고거리 표기 및 도로명판 설치만 제외하고 동일하다.
난곡길	 ⑨ ⑧	⑨ ○ ④의 방향표지 참조 ⑧ ○ ③의 방향 예고표지 참조
신림사거리	 ⑦ ⑥ ⑤	⑦ ○ ④의 방향표지 참조 ⑥ ○ ③의 방향예고표지 참조 ⑤ ○ 진행방향에 이정표지를 설치한다 ○ 원거리지명이 먼 경우에는 이정표지를 설치해 줌으로써 거리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서울대입구	관악로	
	 ④ ③	④ ○ 방향예고표지와 같이 표기하되, 좌우 회전방향의 도로명판을 표지판 좌측상단에 설치한다. ③ ○ 진행방향의 원거리지명은 이전의 예고표지 지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근거리지명은 이전의 지명을 통과하였으므로 새로운 지명을 표기한다. ○ 진행중인 도로(화살표)의 노선번호는 화살표 내에 표기하고, 앞으로 만나게 되는 도로의 노선번호는 화살표 밖에 표기한다.
낙성대길	 ② ①	② ○ 진행방향은 예고표지와 같이 표기하되, 화살표가 지명의 좌측에 위치한다. ○ 좌회전표기는 예고표지와 같이 표기하되, 화살표가 지명의 아래에 위치한다. ① ○ 원거리의 시흥IC는 상단에 표기하고 근거리의 서울대입구역은 하단에 표기한다. ○ 설치방법 : 편지식
사당사거리		

<그림 3-7> 고속도로에서 도로표지 설치예(호법분기점)



〈그림 3-7〉 고속도로에서 도로표지 설치예(호법분기점) 설명

⑮	- 직진방향의 주요 지명에 대한 이정표지를 설치(진행반대편 차로의 2차 출구예고표지에 편지식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출구 IC까지의 거리가 5km 미만일 때는 생략할 수 있다.) - 설치방법 : 편지식 또는 복주식
⑭	⑪과 형태가 같음
⑬	- 사다리꼴 모양의 화살표는 최종행동을 취해야함을 나타냄 - 설치방법 : 편지식 또는 복주식
⑫	- 첫 번째 출구점을 지난 후 두 번째 출구점을 예고할 수 있는 표지 - 설치방법 : 편지식 또는 복주식
⑪	- 우측방향으로 곧바로 나가는 경우에는 사다리꼴모양의 화살표를 우측상단을 향하도록 표기함 - 우측표지의 사다리꼴 모양의 화살표는 최종행동을 취해야함을 나타냄 - 직진방향으로 진행하여 2번째 출구점을 통하여 고속국도 35호선으로 분기할 수 있으므로 To the way 개념을 적용하여 노선번호를 화살표 앞에 표기 - 설치방법 : T자형 편지식
⑩	- 사다리꼴 모양의 화살표는 최종행동을 취해야함을 나타냄 - 설치방법 : 편지식 또는 복주식
⑨	- 출구점 예고표지는 출구시작점 전방 150m 지점에 설치 - 본표지 우측상단에 부착한 표지에는 “16A 또는 16B 호법분기점”이라고 표기하며, 여기서 우측 또는 먼저 나가는곳에 대한 출구점번호는 “16A 호법분기점”이라고 표기하고 나중에 나가는곳에 대한 출구점번호는 “16B 호법분기점”이라고 표기함
⑧	3차 출구감속유도표지를 출구감속차로의 시작점 전방 100m 지점에 설치
⑦	2차 출구감속유도표지를 출구감속차로의 시작점 전방 200m 지점에 설치
⑥	1차 출구감속유도표지를 출구감속차로의 시작점 전방 300m 지점에 설치
⑤	3차 출구예고표지는 분기시작점 전방 500m 지점에 설치 - 분기점의 도로모양을 운전자로 하여금 인지할 수 있도록 Diagramatic Sign 으로 함 - 직진방향에 대해서 On the way에 대한 노선번호는 표기하지 않으며 To the way에 대한 노선번호가 있을 경우에는 지명의 좌측 또는 위쪽에 표기함 - 설치방법 : 편지식 또는 복주식
④	2차 출구예고표지는 분기시작점 전방 1km 지점에 필요시 설치 - 설치방법 : 문형식
③	2차 분기점표지는 분기시작점 전방 1.5km 지점에 설치 - 설치방법 : 단주식
②	1차 출구예고표지는 분기시작점 전방 2km 지점에 설치 - 고속국도 50호선은 On the way 이므로 화살표상에 노선번호를 표기하고, 본표지의 우측 상단에 부착하는 표지에는 출구번호를 표기하도록 함 - 출구점까지의 거리를 표기할 때 소수점이하 첫째자리까지 표기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작게 표기 - 설치방법 : 문형식
①	1차 분기점표지는 분기시작점 전방 2.5km 지점에 설치 - 표기되는 내용은 분기되는 노선번호와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를 표기 - 설치방법 : 단주식

4. 조명장치

가. 내부조명식

내부조명식은 표지판 내부에 조명장치를 달고 메타크릴 수지판 등의 반투명인 소재를 이용한 표지판을 사용하는 편면식과 양면식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조명의 밝기는 표지판의 크기, 형상등에 따라 10W~40W의 일반조명용 직관형 및 환형 형광등 램프를 사용한다. 관리상의 필요에 의해 자동점멸장치를 사용하는 일도 가능하다. 설계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야간 조명시 전방 약 150m부터 시인 가능한 표면조도를 가질 것
- (2) 전등 및 안정기 상자의 구조는 방수처리한 내구성이 있는 금속판 등으로 제작하고 비나 오물 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고 램프의 교환, 내부의 점검, 수리, 청소 등이 용이할 것
- (3) 구조 및 취급방법은 풍속 50m/s에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 (4) 각부의 전기특성은 양호하게 작동하고 내구성이 양호할 것

나. 외부조명식

광원을 상향(하향) 또는 측방의 전면에 따라 표지판을 외부로부터 조명하는 방법으로 광원은 일반적으로 500룩스 이상의 형광등이 사용되고 있다. 설계시 아래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 (1) 야간 점등시 전방 약 500m 지점에서 시인성이 확보될 것
- (2) 점등상태는 판면의 조도가 현저히 고르지 않는 일이 없을 것

- (3) 전구는 운전자가 보아 표지판면에 광원이 반사되지 않도록 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 (4) 전구로부터 나오는 광원이 노상의 운전자에게 눈부심을 주지 않을 것
- (5) 전구지주의 지주 및 취급 금속류는 방부처리가 되고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난 알루미늄관이나 알루미늄판 등으로 견고히 제작하고, 특히 지주는 풍압 및 차량의 과속에 의한 진동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뛰어난 구조로 하고 또한 경과년수에 따라 수명저하를 고려할 것
- (6) 각부의 전기특성은 양호하게 작동하고 유지관리상 형광등의 교체 등이 용이한 구조로 하며 반드시 내구성이 뛰어나야 함

제 4 장 유지관리

1. 유지보수

- 가. 표지판에 부착된 자동차매연 가스, 오물은 수시(월1회 이상)로 제거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나. 표지판 세척은 부드러운 형질에 비눗물을 묻혀 깨끗이 닦아야 한다.
- 다. 지주에 녹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녹을 완전히 제거하고 제거한 부분은 녹방지용 페인트 도장 후 소정의 페인트 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 라. 표지판에 부착된 문자 및 기호의 반사지가 퇴색되어 야간 반사기능이 저하(최초 반사성능의 80% 이하)되었을 때에는 퇴색된 반사지는 제거하고 새 반사지를 재단부착 하여야 한다.

2. 점검사항

- 가. 도로표지위치 및 표기내용은 도로이용자의 판독이 용이한지의 여부
- 나. 설치된 표지판의 높이가 설치기준과 적합한지의 여부
- 다. 설치된 도로표지가 기울어져 있는지의 여부
- 라. 표지판의 야간 반사 상태
- 마. 도로표지의 분실 또는 훼손여부
- 바. 기타 도로표지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

3. 도로표지대장 기록유지

도로표지정보관리체계에 도로표지 정보를 입력·관리함으로써, 각급 도로관리청 상호간 도로표지 현황 정보의 공유·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설치·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도로표지의 설치시점, 위치, 규격, 사진, 변동사항 등 각종 정보의 관리·활용에 도움이 되므로 도로표지대장에 표지정보를 정확하게 입력·갱신하여야 한다.

[도로표지대장 기재요령]

- ① 도로표지정보관리체계에서 제공하는 일련번호
- ② 방향표지, 이정표지, 경계표지 등 도로표지 종류
- ③ 도로표지규칙상 도로표지의 종류·명칭별 고유번호
<예 : 402-3>
- ④ 표지판의 가로×세로 규격(cm) <예 : 340cm×225cm>
- ⑤ 문형식, 편지식, 현수식, 복주식, 단주식으로 구분
- ⑥ 설치지점의 주소, 위치 및 상하행선 여부를 표기
- ⑦ 도로관리청이 자체 고유번호를 부여한 경우에 표기
- ⑧ 도로표지판 사진 입력
- ⑨ 도로표지판과 지주 및 도로형상이 포함된 사진입력
- ⑩ 도로표지의 관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기타사항 기재
- ⑪ 당해 노선상의 원·근거리 안내지명 기재
- ⑫ 당해 노선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좌우측에 위치한 안내지명을 기재하며, 내측에서 외측순으로 기재, 중요도 순으로 2개 지명까지(‘지명1’, ‘지명2’) 기재
- ⑬ 표지판의 뒷면에 표기된 내용을 기재
- ⑭ 표지사진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진입력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도로표지대장										관리기관명	
표지일련번호											
도로의 종류 (자동차전용도로)	노선번호 (도로명)	노선번호 (도로명)	설계속도 (제한속도)	설계속도 (제한속도)	km/hr (km/hr)	차로수 도로폭	차로 (m)				
표지종류	표지번호	표지번호	표지규격	표지규격	cm × cm	지주형식					
설치위치	시·도 (	시·군 지점에서	읍·면 m위치	동·리 상행선방향 □ 하행선방향 □	변지안	자체 관리번호					
						표지판설치일					
						표지판교체일					
현황사진(근거리)		현황사진(원거리)				참고사항					
천연색사진 (7.5cm × 6.0cm)		천연색사진 (7.5cm × 6.0cm)									

(뒤 쪽)

표지일련번호		표지판의 변동사항				지주의 변동사항		
날 짜		내 용		날 짜		내 용		
		표지판의 기재사항 (방향표지에 한함)				현황사진(추가)		
구 분		안내지명		노선번호		천연색사진 (7.5cm×6.0cm)		
		지명 1	지명 2	화살표 위	화살표 앞			
진행 방향	원거리			도로종류	도로종류 번호			
	근거리							
	좌측(내)							
	좌측(외)							
	우측(내)							
	우측(외)							
회전 방향	※ 회전방향은 화살표의 머리 쪽 방향(입체교차로는 통과 후 진행방향)을 기준							
	뒷면 기재사항							

제 5 장 도로표지의 설계

1. 일반사항

가. 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를 설계할 때는 글자, 노선번호, 기호를 포함한 표지 전체배치를 고려하여 도로표지를 설계하여야 한다.

도로표지는 도로의 구조보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경계표지·이정표지·방향표지·노선표지 및 기타표지 등 5종류로 대별할 수 있으며 도로법 제9조~17조에 의거 각급 도로관리청이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도로와 교통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관계로 단편적이고 주관적으로 도로표지를 설계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도로표지를 설계할 때에는 관내 모든 도로에 대한 시간적·공간적 배치를 고려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도로표지를 설계하여야 한다.

나. 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에 안내지명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지역실정을 잘 모르는 외지인을 포함한 지역주민, 관계전문가, 도로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등의 의견을 들어 도로표지의 지명을 선정하여야 한다.

도로관리청이 도로표지의 안내지명을 선정할 때에 도로 이용자나 전문가의 자문이 없이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안내지명을 결정하면 도로관리청 중심으로 안내지명을 표기하기 때문에 안내지명 선정에 객관성이 결여되고 경계지점에서의 연계성 미비와 해당도로의 기능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현지와 일치되지 않는 등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안내지명을 선정할 때에는 당해 도로의 이용자와 전문가, 경찰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특히, 도로관리청 중심의 안내지명 선정을 지양하기 위하여는 지역실정을 잘 모르는 외지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다. 도안비용을 설계에 포함하여 발주한 경우 발주청은 도안 성과에 대한 내용을 납품받아 도로표지규칙에 적합여부를 검사한 후 도로표지 설치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도로표지는 시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명 및 기호의 배치를 적절히 하여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도로표지 관리자의 기술력이 이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계획된 도로표지의 도안을 별도로 전문기관에 의뢰하든지 도로표지 설치공사에 도안비용을 포함시켜 사업을 집행함으로써 시인성과 미관이 뛰어난 도로표지를 제작하여야 하며 교통안전과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라. 도로관리청은 도로기능상 주요구간이나 관할 전체도로에 대하여 전문연구기관이나 용역회사에 도로표지의 계획 또는 설계를 의뢰하여 도로표지관련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도로표지는 도로표지간의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도로이용자에게 적절한 안내를 하기 위해서는 각급 도로관리청은 관내 도로에 대한 안내지명을 규칙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도시와 같이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도시에는 도로관리자의 인적, 경험 및 기술적 능력의 제한으로 인하여 계획을 잘못 수립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경험이 풍부하고 충분한 지식을 보유한 전문기관이나 용역회사에 도로표지의 계획 또는 설계를 의뢰하여 시행하여 사전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계획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마. 도로표지에 한글, 영문과 함께 한자를 병기코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표지규칙 제14조의 절차에 따라 한자병기가 필요한 대상지명, 표지규격, 표기방법, 설치지점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로이용자, 외국인, 경찰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내의 일관성·연계성이 확립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안내지명 선정 방법

가. 지방지역의 도로에서 안내지명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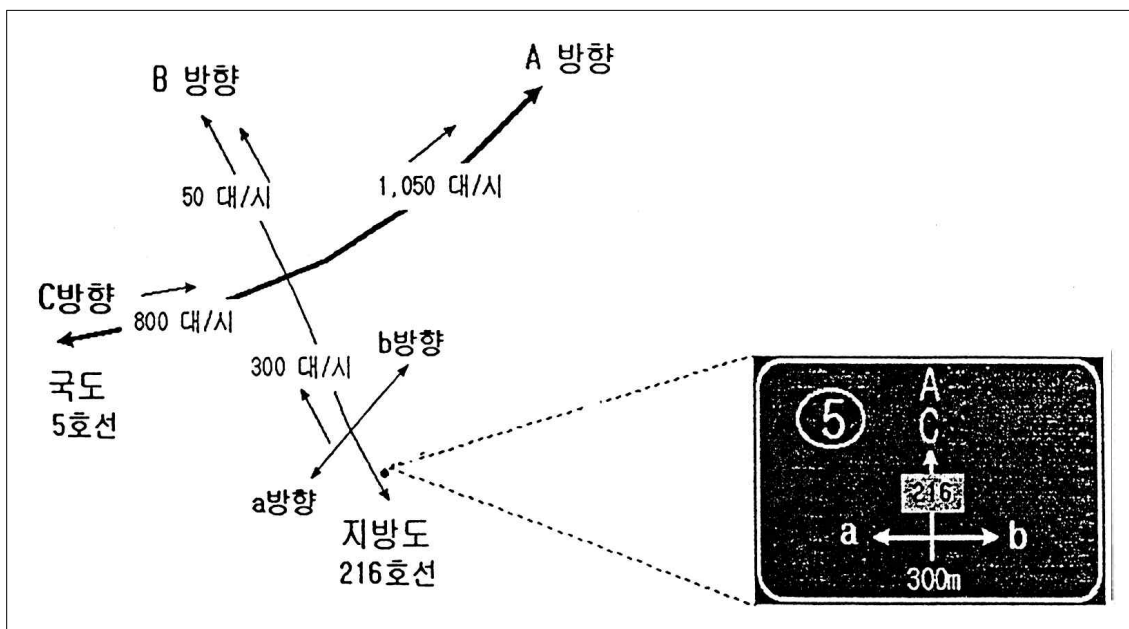
(1) 일반사항

진행방향 안내에서 국도급 이상의 도로 또는 교통량이 현저히 많은 도로가 교차하는 경우 <그림5-1>에서와 같이 진행방향과 회전방향 중에서 교통량이 현저히 많은 쪽의 지명을 우선적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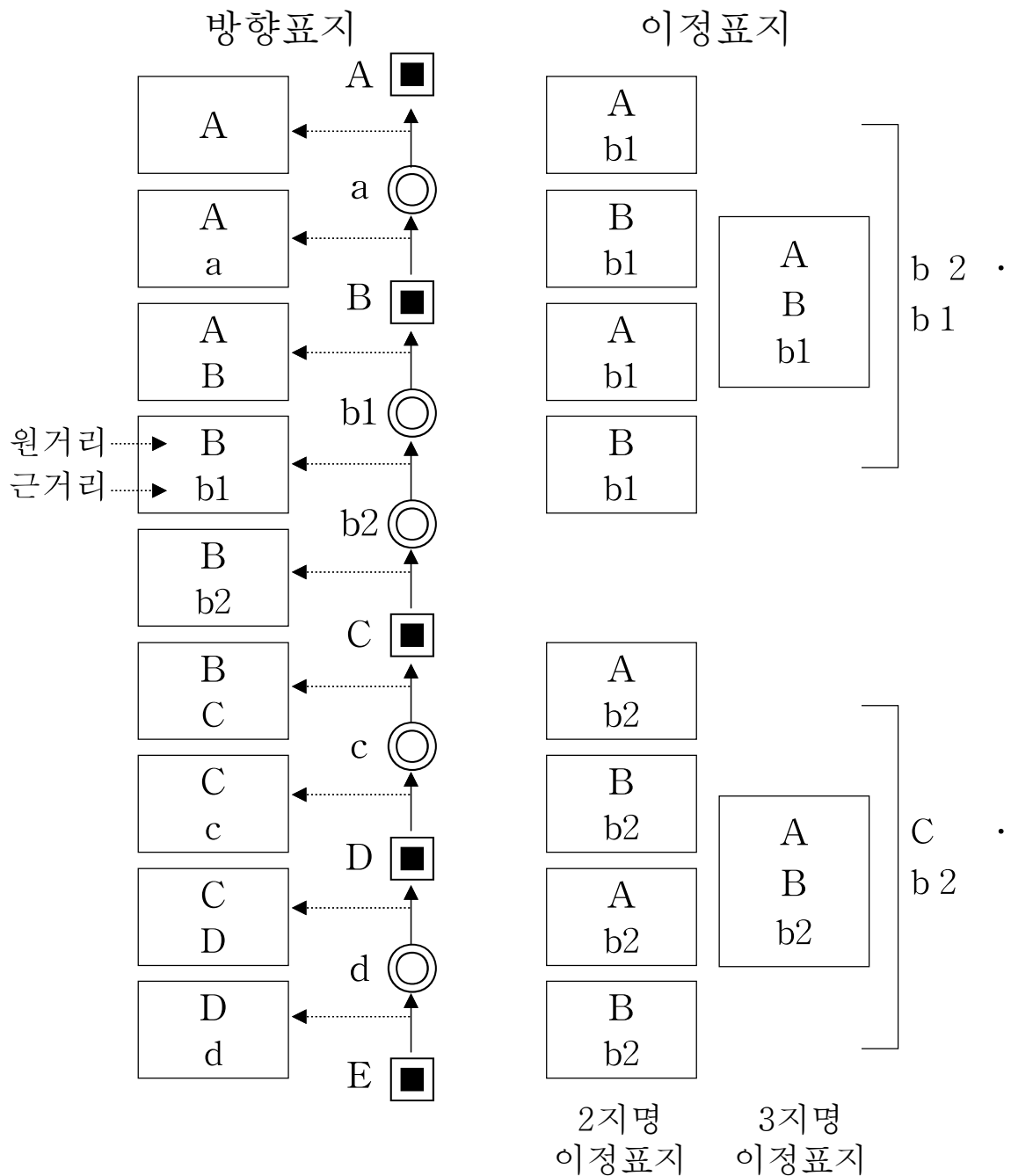
이는 현재 진행중인 도로의 관련 지명보다는 도로이용자에게 실제적인 안내를 하기 위한 것으로, 지명선정시에 교통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교통량이 많은 노선에 있는 지명을 안내한다.

회전방향은 해당노선의 근거리지명 1지명만을 표기하되, 근거리 지명이 인지도가 낮은 경우에는 원거리지명을 표기할 수 있으며, 중복노선일 경우에는 안내지명의 연계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주요안내지명을 모두 표기할 수 있다.

<그림 5-1> 교통량 우선의 지명표기



〈그림 5-2〉 지방지역에서 진행방향 안내지명의 선정체계



〈범례〉

■ 특별시·광역시·도청소재지 등 대도시와 교통의 주요 교차점인 읍급 이상의 도시, 시종점(중요지)

◎ 읍급 이상의 주요 경유지(주요지)

주 : 직진방향 안내지명으로 특별·광역시 1개 지명을 표기하는 경우에는 도시내의 행정구역명 또는 주요시설명을 병기할 수 있다.

(2) 일반국도

일반국도	원거리	직진방향	- 특별시·광역시·시, 도청·군청 소재지 및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교통의 주요 교차점인 도시로 통행량이 많은 교통 및 생활의 중심권 도시 - 도로의 시종점
		회전방향	- 회전지점에서 갈 수 있는 지점으로 직진방향의 경우와 동일 - 근거리의 저명지점(국·도·군립공원, 주요관광지, 댐, 호수, 명승지 등에 준하는 곳)
	근거리	직진방향	■ 제1선정 조건 - 가장 근거리의 시 - 가장 근거리의 시·군청소재지가 10km이상 떨어져 있고 표지판과 가장 근거리의 시·군청소재지의 사이에 지명도가 높은 읍·면 소재지가 있는 경우는 그 해당 읍·면 ■ 제2선정 조건 - 고속국도IC명(주요교차로 경과 후)
		회전방향	- 회전지점에서 갈 수 있는 지점으로 직진방향의 경우와 동일 - 근거리의 저명지점(국·도·군립공원·주요관광지·댐·호수 및 명승지 등에 준하는 곳)

(3) 지방도

지 방 도	원 거 리	직 진 방 향	■ 제1선정조건 - 국도의 원거리 직진방향의 도시 - 해당 노선상에 위치하고 있는 시·군청소재지 또는 국도 및 고속국도와 연결되어 도착할 수 있는 생활중심권 도시 ■ 제2선정조건 - 고속국도IC명 - 지명도가 높은 읍·면 사무소 소재지 - 근거리의 저명지점(국·도·군립공원·주요관광지·댐·호수 및 명승지 등에 준하는 곳)
		회 전 방 향	- 회전지점에서 갈 수 있는 지점으로 직진방향의 경우와 동일
	근 거 리	직 진 방 향	- 국도의 근거리 직진방향의 도시 - 지명도가 높은 인접한 읍, 면 - 근거리의 저명지점(국·도·군립공원·주요관광지·댐·호수 및 명승지 등에 준하는 곳) - 고속국도IC명(주요교차로 경과 후)
		회 전 방 향	- 회전지점에서 갈 수 있는 지점으로 직진방향의 경우와 동일

(4) 군도

군 도	원거리 및 근거리	직진 방향	- 가장 인접한 생활중심권의 시·군·읍·면 및 리 - 상급도로와 연결되어 도착할 수 있는 생활중심권 도시 또는 주요교통의 교차점 - 근거리의 저명지점(국·도·군립공원·주요 관광지·댐·호수 및 명승지 등에 준하는 곳)
		회전 방향	- 회전지점에서 갈 수 있는 지점으로 직진방향의 경우와 동일

나. 도시지역의 도로에서 안내지명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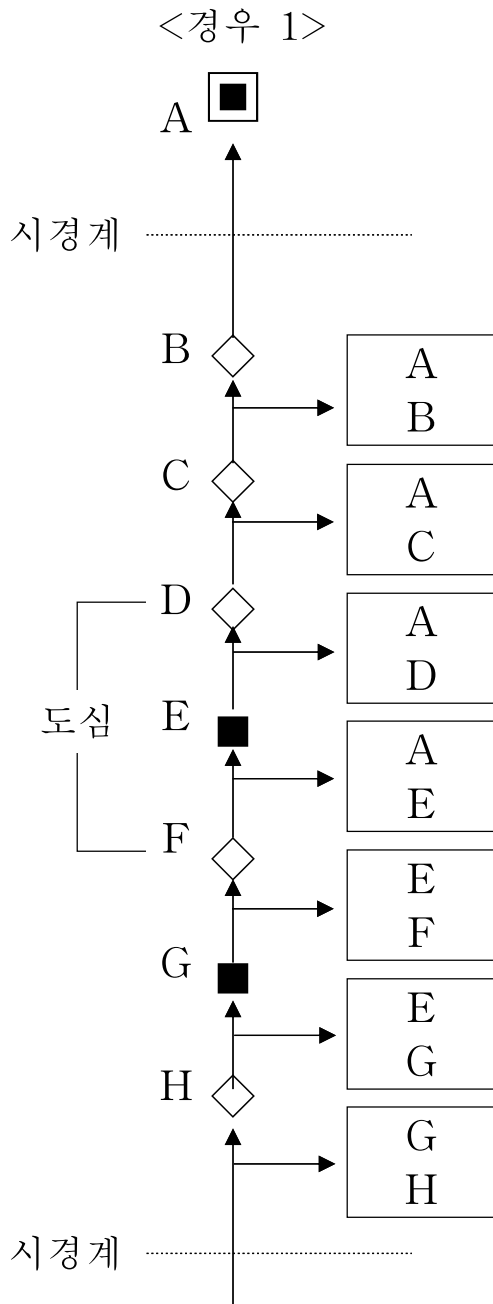
(1) 일반사항

도시내에서 사용되는 지명이나 지점명으로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선정함을 그 기본원칙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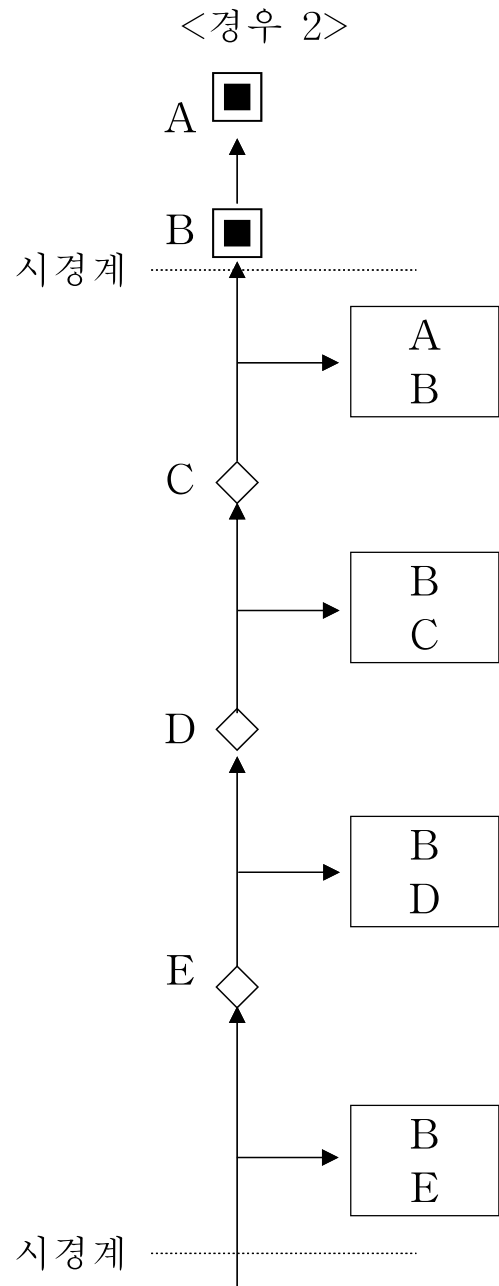
- (가) 누구나 들어 알 수 있는 잘 알려져 있는 지명 또는 시설명
- (나) 도착교통량이 많은 지점
- (다) 교차되는 교통량이 많은 지점
- (라) 생활중심권(시장, 단지 등)
- (마) 고속국도IC명
- (바) 주요관광지 등

대도시(인구 50만명 이상)에서는 도시의 도심까지는 도시내의 지명이나 시설명을 안내하고, 도심을 지나서는 따로 정한 원거리지명을 표기하여 통과교통이나 시외부로 진출하는 운전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그림 5-3> 도시지역에서 안내지명의 선정 체계



특별시, 광역시 및 대도시



중소도시

<범례>

■ 근접한 주요 도시

■ 근접한 주요 도시

■ 시내안의 주요 지점(중요지) ◇ 시내안의 주요 지점(주요지)

◇ 시내안의 제2차 주요 지점(주요지)

(2) 도시내 국도 및 주간선도로의 경우

도시내 국도 및 주간선도로	원거리	직진방향	① 특별시·광역시·도청소재지 및 대도시 ■ 제1선정 조건 - 도시내의 주요시설(시청등 주요 행정 관청·경찰서·국회의사당·공항·역·대학·대규모병원·운동장·주요교량·대규모주택단지·대규모 문화시설 등) - 주요 도로시설(중요한 교차로명·고속국도 IC명·도로명 등) ■ 제2선정 조건 - 위의 사항에 준하는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 ■ 기타 선정 조건 - 도심 및 부도심에서 시외곽지역으로의 방향인 경우에는 진행방향에 위치한 교통 및 생활의 중심권도시를 표기 ② 기타도시(중소도시)의 경우 - 진행방향에 위치한 교통 및 생활의 중심권 도시
		회전방향	- 회전지점에서 갈 수 있는 지점으로 위의 직진 경우와 동일
	근거리	진행방향	- 원거리의 제1, 2선정조건중에서 가까이에 위치한 지점
		회전방향	- 회전지점에서 갈 수 있는 지점으로 위의 직진 경우와 동일

(3) 보조간선도로

- 도시내 국도 및 주간선도로의 선정기준상의 지점이나 시설명 또는 주간선도로와 연결하는 지점

(4) 집산 및 국지도로

- 주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의 연결지점

다. 고속국도에서 안내지명 선정

(1) 일반사항

- 고속국도에서의 안내대상 지명은 연계하는 대상 도시중 중요지를 선정하고, 원거리는 중요지 지명을, 근거리는 다음 출구 IC명 또는 분기되는 분기점명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고속국도 시·종점부의 시구간 진입지역에서 안내지명 선정은 도시지역 도로에서의 안내지명 선정 기준에 따른다.

(2) 고속국도의 안내지명 선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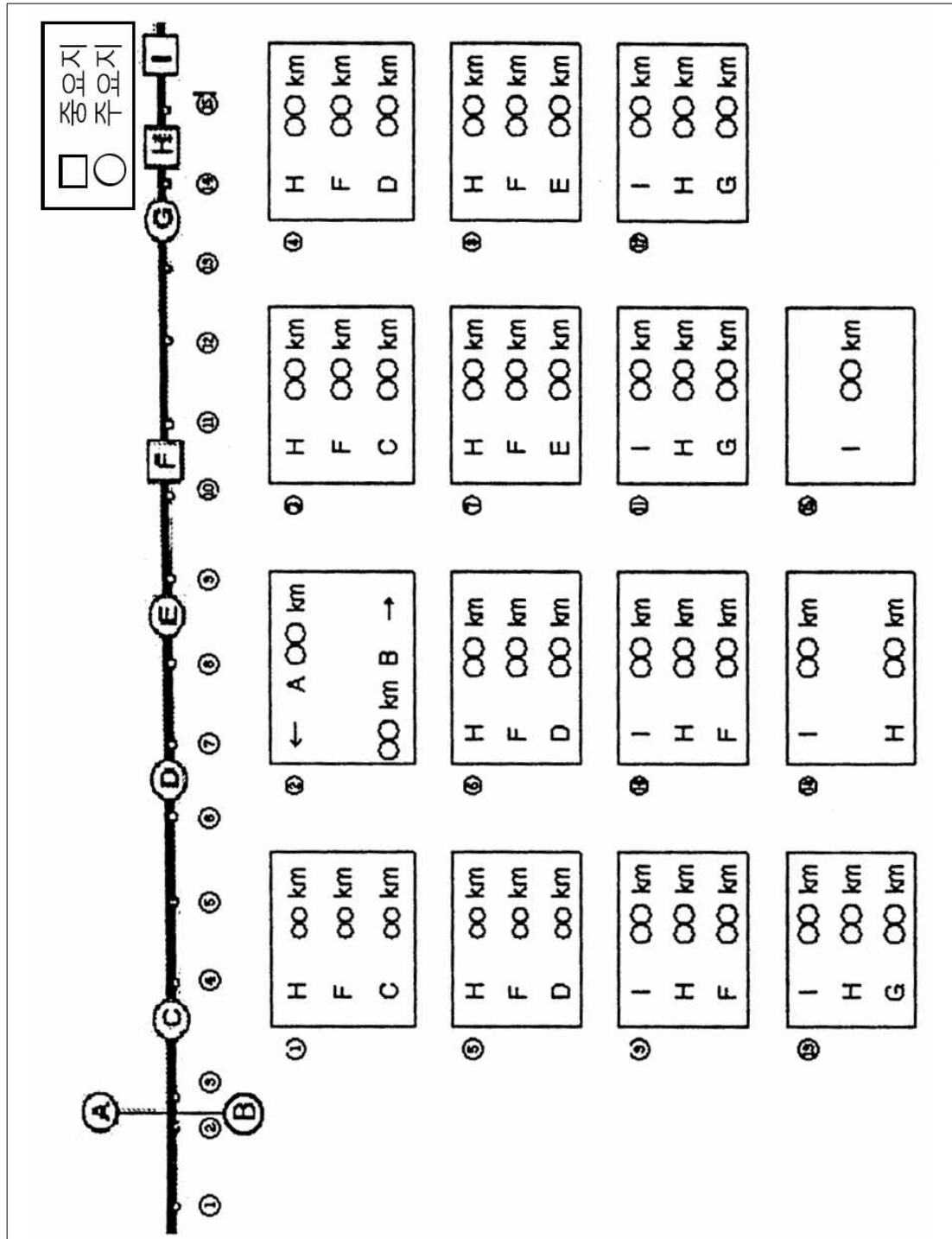
고속국도	직진 방향	원거리	특별시·광역시·도청소재지 및 대도시 등 중요지의 지명
		근거리	운전자가 만나게 되는 두 번째 및 세 번째 출구 IC명, 교차되는 분기점(Jct)명을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차되는 주요도로(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명을 병기할 수 있다.
	출구 방향		해당 출구와 연결된 도로상의 중요지 지명을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차되는 주요 도로(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명을 병기할 수 있다.

- 비고 : 1. 중요지는 고속국도 주변의 시급 이상 도시로 지명도가 높은 곳
2. 주요지는 고속국도 주변의 읍급 이상 지명
3. 주요 도로명을 병기할 때는 기본 글자 크기의 70%내외로 괄호안에 표기한다.

라. 이정표지의 안내지명 및 거리 표기 방법

- 이정표지의 거리는 도시를 안내할 때에는 당해도시의 도로원표까지의 거리를, 시설명을 안내할 때는 당해시설까지의 거리를, 고속도로에서는 IC까지의 거리(도로의 선형에 따른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 규칙제3조 및 제14조에 의해 안내지명으로 선정된 도시를 그 기능에 따라 중요지와 주요지로 구분하고 선정된 지명에 대하여 이정을 표기한다.
- 2지명이정표지의 상단은 중요지를 표기하고 하단은 가장 가까이 위치한 주요지(경우에 따라서는 중요지)를 표기하되 상단은 진행하여 만날 중요지를 번갈아 표기한다.
- 3지명이정표지의 상단과 중단은 원·근거리의 중요지를 각각 표기하고 하단은 가장 가까이 위치한 주요지(경우에 따라서는 중요지)를 표기한다.
- 대다수 교통량의 목적지가 이정표지에 표기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1지명이정표지(표지번호 402-1)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 이정거리가 소숫점이하일 때는 소숫점이 없는 정수로 표기될 수 있도록 그 설치위치를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그림 5-4〉 이정표지 설치체계



마. 노선별 안내지명 대장의 작성 및 관리

(1) 일반사항

- (가) 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도로표지정보관리체계에서 제공하는 도로안내지명 관리대장 <그림 5-5>에 도로의 노선 및 구간별 원·근거리 안내지명을 각각 입력하여 관리한다.
- (나) 노선별 안내지명을 선정할 때에는 접속·분기되는 동급 이상의 다른 도로에서 사용하는 안내지명을 확인 후 검토 반영하여 상호간 안내지명의 연계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한다.
- (다) 전국 도로의 골격을 형성하고 있는 국도에 대해 도로표지에 표기할 안내지명을 마련함으로 도로관리청간에 연계성을 확보하고 도로표지의 안내체계를 합리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기 위하여 별표1, 별표2와 같이 국도, 고속국도의 노선별로 안내지명을 지정하였다.

(2) 안내지명 선정시 고려사항

- (가) 안내지명은 도로형상 및 지리·지형적 특성을 감안하여 선정하되, 가능한 한 동급의 안내 지명간 거리차이가 크지 않고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도록 선정한다.
- (나) 당해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교차·분기되는 주변 도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노선상의 안내지명으로 선정한다.
- (다) 중요지 지명은 장거리 도로이용자들의 편의와 이동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원거리에 있는 지명을 선

정한다

- (라) 주요지 지명은 특정 지역을 찾아오는 도로이용자들의 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선정하되 도로의 등급, 선형, 교차로, 지명간 간격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인지도)의 지명을 선정한다.
- (마) 적정거리·지점에 중요지급의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중요지급 지명을 준중요지로 선정하고, 이를 원거리 안내지명으로 활용한다.
- (바) 당해 노선상의 원·근거리 안내지명이 다른 도로로 분기되는 지점에서는 분기점의 지명을 ‘경유지’로 선정하여 원·근거리 안내지명간 경계지점으로 활용한다.
- (사) 진출입 교통량이 많고 인지도가 높은 지명은 당해 도로에서 지리적으로 다소 이격되어 있더라도 중요지 지명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아) 당해 도로와 교차하거나 인근에 위치한 동급이상의 도로에서 사용하고 있는 안내지명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활용 여부를 검토한다.
- (자) 동급이상의 도로와 중복노선 구간에서는 중복되는 도로에서 사용하고 있는 안내지명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활용여부를 검토한다.

〈그림 5-5〉 도로 안내지명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도로안내지명관리대장							
[제정일 : 년 월 일]							
도로종류·노선번호		(도로명 :)		도로관리청			
시점		종점		도로연장	km		
안내지명의 순서도(예)			원·근거리 안내지명 (예)				비 고 (예) (개정일자)
좌측 중요지명	경유하는 안내지명	우측 중요지명	가→아		아→가		
			원거리	근거리	원거리	근거리	
	■ 아		-	-	-	-	
사 ■			아	-	다	마	
	○ 바		-	-	-	-	바 (신설) (00.00.00)
			아	사	다	마	
	마 ●		-	-	-	-	
			사	마	가	라	
	라 ◎	■ 다	-	-	-	-	
			마	라	가	나	
	나 ◎		-	-	-	-	나 (변경) (00.00.00)
			다	나	가	-	
	■ 가		-	-	-	-	

※ 작성요령

1. 방향표지로 안내할 지명을 3개 등급(중요지, 준중요지, 주요지)으로 구분하여 선정
가. 중요지 : 당해 노선의 원거리 지명으로 사용되는 인지도가 높은 지명
나. 주요지 : 당해 노선의 근거리 지명으로 사용되는 인지도가 보통인 지명
다. 준중요지 : 주요지급 지명 중 지리적 여건상 원거리 지명으로 사용되는 지명
라. 경유지 : 전후 안내지명간 경계점으로 이용되는 인지도가 낮은 지명
2. 안내지명의 순서도에 다음과 같은 기호를 사용하여 표기
가. 지방지역의 지명 : ■ 중요지, ● 준중요지, ◎ 주요지, ○ 경유지
나. 도시지역의 지명 : ■ 중요지, ◆ 준중요지, ◇ 주요지, ○ 경유지
다. 각 도로노선은 직선 또는 절곡된 선을 이용하여 상징적으로 표현
3. 도로의 구간별 원·근거리 안내지명은 진행방향(상·하행)별로 작성
4. 신설·변경된 지명은 우측 비고란에 표기하고, 괄호안에 개정일자를 표기
5. 안내지명 순서도 등의 종방향 길이(칸수)는 안내지명의 수에 맞추어 설정

3. 화살표에 노선번호 표기방법

가. 방향표지는 화살표와 노선번호를 표기함에 있어 진행중임을 나타내는 “도로상(On the way)”의 개념과 곧 만나는 도로를 나타내는 “도로를 향하여(To the way)”의 개념을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나. 노선번호가 있는 도로에서는 해당노선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특히, 지방도 이상의 도로가 통과하는 도시지역도로에서는 당해 도로에 반드시 노선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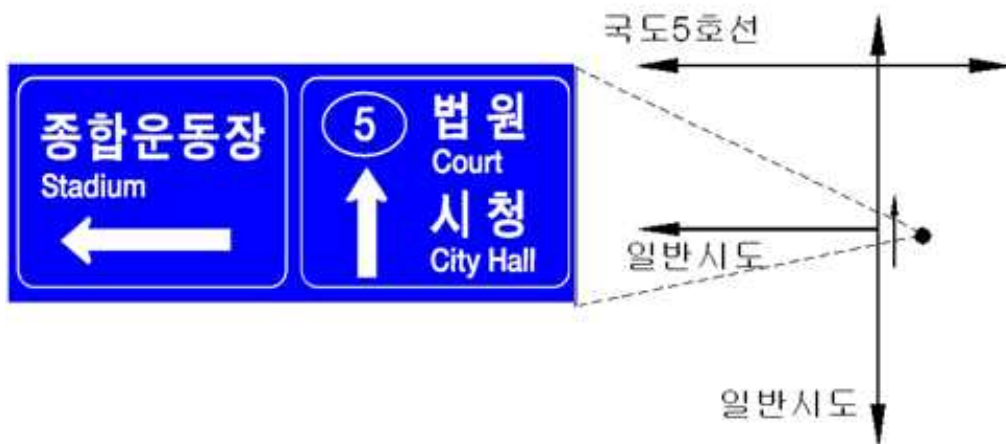
〈그림 5-6〉 화살표의 노선번호 표기방법

<도로상(On the way)의 표기방법>



운전자가 현재 자신이 주행중인 노선에 대한 안내방법으로 어떤 노선상을 주행중인지를 알려주는 표기 방법으로 위의 그림과 같이 표기하며, 운전자는 진행방향으로 가면 국도 46호선을 주행하는 것을 나타내고 우회전을 하게되면 국도 45호선을 주행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기방법이다.

<도로를 향하여(To the way)의 표기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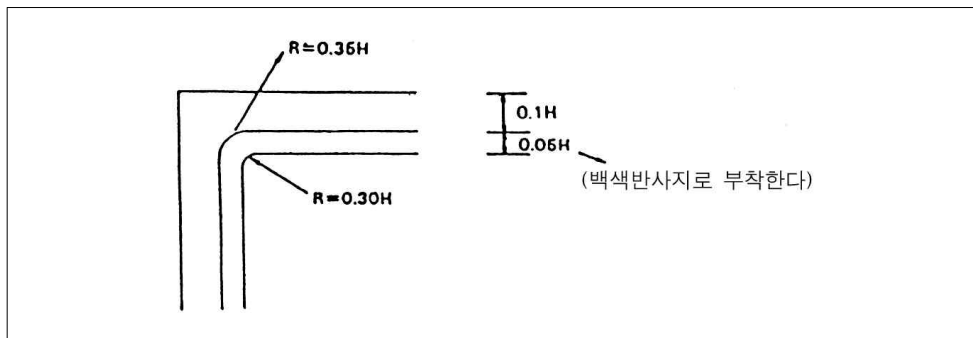
운전자가 진행방향이나 회전방향으로 갈 경우 곧 만나게 되는 노선을 나타내어주는 표기 방법으로 위의 그림에서처럼 운전자는 진행방향으로 계속 가면 머지않아 국도 5호선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안내를 나타내는 표기 방법이다.(주간선도로 이상의 기능을 가진 도로의 노선번호에 적용한다.)

4. 도안방법

가. 표지의 테두리 표준도안

테두리선의 굵기는 $0.05H$ 이며 모서리는 $R=0.3H \sim 0.36H$ 로 예시와 같이 둥근모양으로 처리한다.

〈그림 5-7〉 테두리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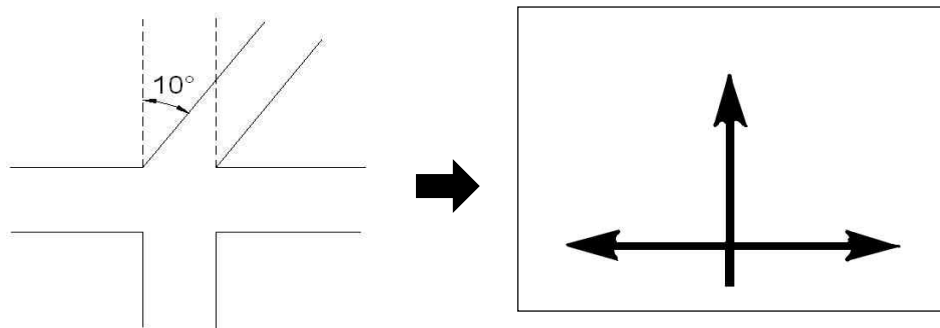
나. 교차로 형태에 따른 표준도안

(1) 교차로 형태를 나타내는 화살표는 가급적 교차로 형태를 그대로 묘사하여 표기하되 그 교차로의 각도 및 교차점에서 도식의 예는 아래와 같다.

(가) 각도

10° 이내의 각도를 유지하는 교차로는 정방향화살표로 도식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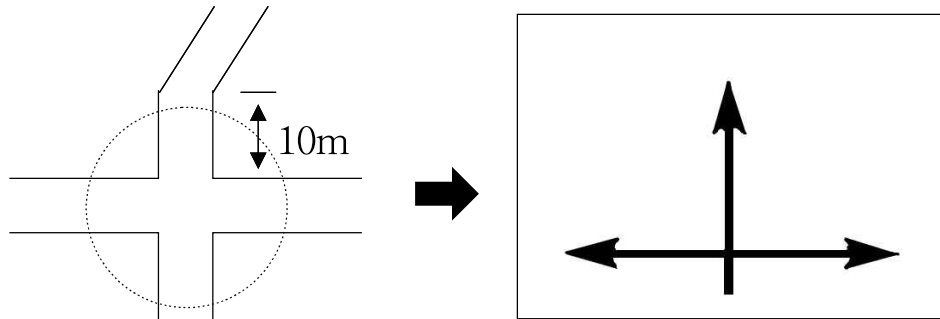
〈그림 5-8〉 각도에 따른 교차로 도안



(나)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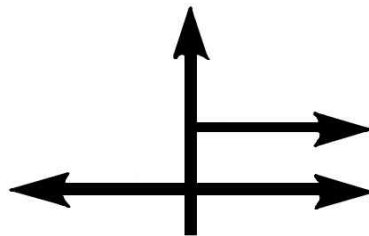
반경 약 10m 이내의 교차로의 형상을 도식화 한다.

〈그림 5-9〉 거리에 따른 교차로 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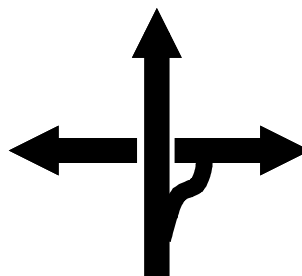
(2) 교차로가 짧은 구간에 연속하여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의 교차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그림 5-10〉 연속교차로의 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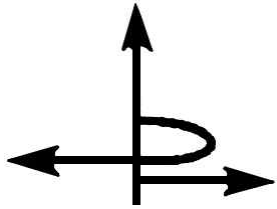
(3) 입체교차로의 진입/진출로 등 다른 도로에 비해 좁은 도로에 대해서는 굵기를 60%이하로 가늘게 표시할 수 있다.

〈그림 5-11〉 도로폭에 따른 교차로 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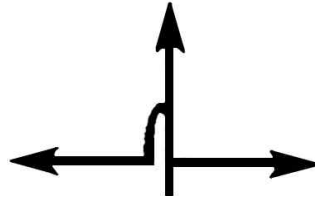


〈그림 5-11〉 특수교차로의 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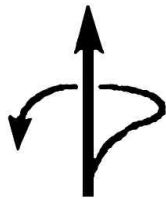
(4) 특수 교차로 형태에 따른 표준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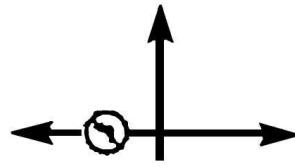
P-turn 교차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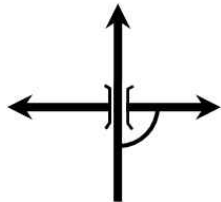
U-turn 교차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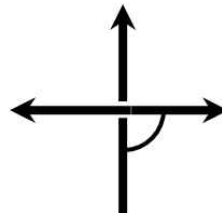
U-turn 단일로(지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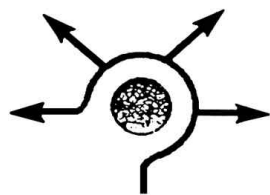
좌회전 금지 교차로



고가부 교차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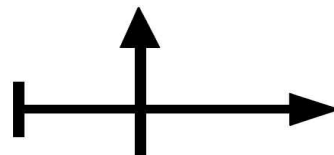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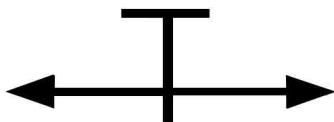


지하부 교차로



회전 교차로

(5) 막힌길 표지(막힌길 부분은 적색으로 표시)



다. 문형식표지의 화살표

(1) 방향을 안내하는 기능을 가진 표지의 경우

곧 만나게 될 교차로 전방에 문형식표지를 설치하여 본선 진행 및 출구·회전방향의 지명을 동시에 표기할 때

〈그림 5-12〉 방향표지의 화살표



(2) 차로를 지정하는 기능을 가진 표지의 경우

- 본선진행시 안전운행상 필요한 때
- 본선으로부터 출구 이탈후 다시 방향이 재분기되면서 다차로인 교차로가 진행될 때
- 고가도로, 지하도로의 진입부 전방에 차로별로 명확한 교통의 분류가 필요한 때
- 기타 복잡한 교차로가 존재하여 차로지정이 필요한 때

〈그림 5-13〉 차로지정표지의 화살표

2지명안내시



1지명안내시



- (3) 위 1), 2)항의 표지는 필요에 따라 표지판을 하나 또는 둘의 표지판으로 통합하여 차선의 상단에 설치할 수 있다.

라. 노선번호에 대한 도안방법

- (1) 화살표내에 노선번호를 표기할 때에는 그 크기는 노선번호가 1개이면 표준도안의 90%, 노선번호가 2개이면 표준도안의 80%로 한다. 단, 표지판의 공간에 여유가 있을 때는 100%로 한다.
- (2) 진행방향의 상하배열에서는 노선번호가 빠른 것을 위쪽에, 늦은 것을 아래쪽에 표기하고, 좌우방향에서는 노선번호가 빠른 것을 왼쪽에, 늦은 것을 오른쪽에 표기한다.
- (3) 국도와 기타도로가 중복될 때에는 국도를 우선 표기 한다.

5. 시설물안내 상징그림

가. 개요

방향표지, 보행인표지 등 도로표지에서 시설물을 안내할 경우에는 도로이용자가 그 의미를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각 시설물별로 공통된 상징그림(Pictograms)을 시설명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나. 기본 원칙

- (1)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장이 제정 고시하는 공공안내그림표지 및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상징그림만 사용한다.
- (2) 도로상에는 임의로 제작된 상징그림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 (3) 국립공원, 관광단지, 관광특구 등 관광지의 구성내용을 하나

의 상징그림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징그림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시설명 및 상징그림 예시

〈그림 5-14〉 시설명 및 상징그림 예시

시설명	상징그림	시설명	상징그림
공 항		산	
기 차 역		해 수 욕 장	
버 스 터 미 널		스 키 장	
여객선터미널 (항구)		온 천	
명 승 고 적		절	
박 물 관		병 원	
공 단		공 원	
등 대		댐	
도 서 관		동 물 원	
지 하 철		주 유 소	
관광안내소		세계유산	

라. 표기방법

- (1) 표기방법 : 방향 및 방향예고표지에서 해당 시설명을 표기한 한글의 좌측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표지의 전체구도에 따라 적당한 위치에 옮겨 표기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 (2) 색 상 : 상징그림의 검은 부분은 표지의 바탕색상과 일치시킨다.(지하철, 관광안내소 및 세계유산 상징그림은 규정된 색상으로 한다.)
- (3) 크 기 : 보행인표지에는 한글 세로높이의 2배를 원칙으로 하고 방향표지, 방향 예고표지 및 유도표지에는 한글 세로높이의 1.5배를 원칙으로 한다.

제 6 장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1. 목적

본 규정은 도로구역내에 설치하는 각종 사설안내표지의 규격,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설안내표지의 난립을 방지하고 도로이용자의 편의와 교통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설안내표지의 정의

사설안내표지는 주요 공공시설, 공용시설 또는 관광·휴양시설 등의 관리주체가 당해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하여 도로구역 내에 설치하는 표지를 말한다.

3.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대상

다음 각호의 시설 중 당해 도로관리청이 다수의 도로이용자를 위한 안내표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표 6-1〉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대상

구 분	시설의 종류
산업·교통 분야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지방산업단지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및 대규모점포 -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물류터미널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 항공법에 의한 공항 -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및 지방항만 - 철도사업법에 의한 역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 도로법령에 의거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휴게소 (대형승합차 10대이상의 부설주차장을 갖춘 관광휴게시설에 한함)

구 분	시설의 종류
관광·휴양 분야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 온천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원지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규모 1만㎡ 이상의 공원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건축물, 사적지, 명승지 등 관광명소 -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된 관광시설 - 개별법에 근거한 농촌체험마을 등의 체험마을
공공·공용 분야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문화체육시설(도서관,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등) - 종합사회복지관 -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 대사관, 영사관 등 주한 외국공관 및 국제기구 -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묘지 -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일반병원 -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의 사찰, 성당, 교회, 순교기념지로서 당해시설물이 500㎡이상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체육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 주택법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4. 적용기준 및 적용범위

- 가. 사설안내표지는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소유자가 당해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되, 도로구역내의 사설안내표지는 이용자의 편의제공 및 교통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극히 제한적으로 설치 허가해야 한다.
- 나. 법 제24조에 의한 도로구역내에서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하고자 할 때 본 규정을 적용한다. 단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없다.
- 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내표지로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표지판의 형태, 도안, 색상, 상징그림 등에 대해 당해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단, 주변환경 및 교통안전, 미풍양속에 저해되지 않아야 한다.

5. 사설안내표지의 크기

- 가. 사설안내표지의 크기는 시설물의 종류·특성 및 외래이용객을 위한 부설주차장의 규모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판단에 의해 아래의 기준이하의 규격으로 설치 허가하여야 한다.
- 1,200mm×850mm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군·구청)
 - 1,200mm×550mm : 사설안내표지판을 단독으로 설치시
 - 1,200mm×350mm : 사설안내표지판을 연립으로 설치하는 경우
- 나. 글자수가 비교적 많아서 정해진 규격에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나, 당해 도로관리청이 안내하고자 하는 시설의 특성 및 규모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격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표지판의 가로·세로의 규격을 20% 내외에서 조정할 수 있다.
- 단,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왕복 4차로 이상의 도로변에 사설 관광지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판단에 따라 표지판의 가로·세로 규격을 50% 범위내에서 확대할 수 있다.

6. 사설안내표지의 색상 및 조명

- 가. 표지판의 바탕색상은 규칙에 정한 녹색, 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의 색상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색채나 적색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관광시설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관광지도표지와 동일한 갈색 바탕의 표지판(이하 ‘사설관광지도표지’라 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나. 지주 및 표지판의 바탕 또는 글씨에 교통안전을 위해 야광 도료나 반사지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단, 관공서 등 공공시설 안내표지 및 사설관광지도표지는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 다. 간판의 조명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라. 관공서 등의 공공시설은 흰색바탕에 청색글자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마. 지주는 일반표지의 지주와 동일한 검은 회색 또는 스텐재질을 사용한다.

7. 안내문안 및 도안

- 가. 표지판의 안내문안은 시설(지역)명, 상징마크, 방향 및 거리 이외의 문자를 표기하여서는 안된다.
- 나. 표지판의 도안과 색상은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도로관리청이 미관·풍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가한다.
- 다. 상징마크의 경우 기술표준원에서 고시된(KS A 0901) 시설관련 상징그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8. 설치장소 및 표시방법

- 가. 사설안내표지의 설치장소는 도로표지의 기능발휘에 방해하지 않도록 선정하고, 특히 보행인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 나. 사설안내표지는 안내하고자 하는 시설의 주요 진입로(사도 등)와 도로법상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점 주변의 도로변에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단, 왕복 4차로 이상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도로에서는 교차점 전방 200~250m 지점의 양측 도로변에 각 1개소의 진입로 예고표지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 다.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사설관광지표지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명소 또는 관광시설로부터 반경 10km 범위내에서 주요 진입로와 동급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는 지점에 주행방향별로 각 1개소씩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단, 최대 5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도시지역 내에 위치한 사설관광지표지는 당해 관광지로부터 반경 5km 범위내에 있는 주요 진입도로의 교차점 등 적절한 위치에 5개소 이내로 주행방향의 오른쪽 길옆에 설치한다.

9. 설치방법

- 가. 복주식 또는 편지식으로 복합설치하고, 시가지내에서는 편지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 나. 동일지역내에 2개소 이상 시설이 있고 동일 진입로를 이용하는 경우와 동일장소에 2개 이상의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표지판의 크기는 최소의 규격으로 설치하되 연립표지 전체의 크기는 주변경관과 지형지물을 감안

하여 시설유형별 크기를 당해 도로관리청이 정한다.

다. 지주를 이용하여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한 각종 도로표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건물밀집지역이 아닌 교외부에서는 길어깨 끝단보다 표지의 차도측 끝단이 차도 바깥쪽으로 최소한 50센티미터 이상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보도가 설치된 시가지부에서는 측구를 포함한 포장면 끝단보다 표지의 차도측 끝단이 차도 바깥쪽으로 최소한 20센티미터 이상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표지판의 높이는 표지의 하단부가 노면보다 최소한 2.5 m 이상 높게 설치하여야 한다.

(4) 1),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도로의 길어깨 폭이 협소한 경우에는 변경하여 설치하되 차량이나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절한 높이를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라. 지주를 이용하지 않는 특수형식의 사설안내표지는 차량이나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절히 설치하여야 한다.

10. 허가대상의 제한

가. 본 규정 제2항에 해당되는 시설로서 공공성, 공익성 및 편리성이 있는 경우로만 제한하며 광고성이 내포되어 있는 사설안내표지는 허가하여서는 안된다.

11. 설치허가 절차

도로구역내의 사설안내표지의 설치허가는 법 제22조에 의거

당해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이 하며, 허가절차는 법 제 40조의 도로점용허가에 따른다.

12. 허가신청서 처리

가. 피허가자는 법 제40조에 의해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당해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신청서를 접수한 당해 도로관리청은 현지를 조사하고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4항에 의거 허가대상 사설안내 표지인 경우에만 허가한다.

다.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공사에 따른 철거 등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허가내용을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라. 허가시에는 사설안내표지 허가번호를 부여하고 피허가자로 하여금 당해 표지판의 뒷면 우측(또는 좌측)하단에 허가 받은 사항을 명시토록 하여야 한다.

(1) 허가번호 부여방법 : ○○ 시 · 군 94 95



(허가행정청명) (최초허가년도) (그해의 허가일련번호)

(2) 표기방법은 흰색바탕에 검정글씨로 <그림 6-1>과 같이 허가사항을 표기하여 육안으로 쉽게 볼 수 있도록 한다.

(3) 설치방법은 도료를 사용하여 표기하거나 라벨 등 별도의 재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 크기는 15cm×10cm를 표준으로 하고 표지판의 크기·높이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그림 6-1〉 허가사항 표기방법

허가번호	과천시-00-123
허가기간	'00.10.12~'02.03.25
시설명	과천시립도서관
표지규격	1,200mm×300mm
전화번호	02-504-7717

마.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절차에 의거 점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13. 사설안내표지의 관리

가. 사설안내표지판의 관리는 노후, 탈색, 훼손 등 도로변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피허가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나. 사설안내표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도로관리청은 사설안내표지의 상태를 조사하여 유지관리가 불량한 경우에는 피허가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피허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허가취소, 철거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4. 사설안내표지에 대한 기록유지

도로관리청은 본 규정에 의거 관내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사설안내표지대장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5. 도로관리청의 별도 관리지침 운영

- 가. 도로관리청은 관내 도로구역내 사설안내표지의 연립설치가 용이하도록 통일된 지주형태 및 표지판과 지주와의 결합방법 등에 대한 표준 모델을 규정할 수 있다.
- 나. 관내 시설 유형별 통일된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할 경우 적색을 제외한 녹색 및 청색, 또는 오렌지색 등의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도로관리청은 지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벽, 가로등 등의 지주를 활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 다. 도로관리청은 지역 특성에 따라 사설안내표지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허가대상, 설치방법 등에 대하여 추가 제한 규정을 설정하여 허가 할 수 있다.
- 라. 도로관리청은 관내 도로구역 내에 이미 설치된 사설안내표지에 대한 개선 및 정비방안을 지속적으로 수립·관리하여야 한다.

16. 경과조치

- 가. 이 규정의 시행전에 이미 설치 허가된 사설안내표지는 이 규정에 의한 사설안내표지로 본다.
- 나. 도로관리청은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재허가시에는 본 규정에 의거 설치허가 하여야 한다.

시설안내 표지대장

<전면>

허가번호	00군-94-001									
설치위치	노선번호									
	도	시(군)	읍(면)	리	동	피허가자				
	지점	Km	시점에서 종점방향			허가일자				
			종점에서시점방향			허가기간				
						성명				
						주소				
차도폭	m	길어깨(보도)의 폭	m	차도(보도)로 부터의 높이		m	표지판규격	가로	세로	색상
위치도	위치도					사진				

<후면>

관리현황				표지관의 변동현황			지주의 변동현황		
				일 자	내 용	조치결과	일 자	내 용	조치결과

제 7 장 관광지표지의 설치

- (1) 관광지표지는 단독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변 상황이나 여건을 고려하여 당해 도로관리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향표지에 병기할 수 있다.
- (2) 도로관리청이 관광지표지로 안내할 수 있는 관광지의 범위는 <표 7-1>과 같다.

<표 7-1> 관광지표지의 설치범위

관광지의 종류	도로별 설치구분	
	지방/도시 지역	고속 국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	○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	○	○
자연공원법에 의한 도립공원, 군립공원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와 유네스코에 등록한 세계문화유산	○	
관광진흥법에 의한 제1종종합휴양업으로 지정된 관광시설	○	○
관광진흥법에 의한 제2종종합휴양업으로 지정된 관광시설	○	○

이상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일반관광지는 시설관리주체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득하여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 (3) 당해 도로관리청은 관내의 관광지표지 설치대상 지명 또는 시설명을 규칙 제14조의 절차에 따라 선정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 (4) 관광지를 방향표지에 표기할 때는 갈색바탕의 사각형안에 표기하며 단독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광지표지(표지번호 406) 또는 보행인표지(표지번호 411)의 형식으로 갈색바탕에 표기한다.
- (5) (4)항의 경우 진행방향으로는 도로표지규칙 별표1의 기준에 의거 선정한 지명을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좌우회전방향에는 관광지명을 표기할 수 있다.
- (6) 방향표지에 보조표지 형식으로 설치할 경우 도로명 보조표지외에 보조표지판은 하나의 방향표지판에 1개의 보조표지만 설치하며 사설안내표지 설치대상을 보조표지로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 (7) (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시설명이 규칙제3조에 의해 관광지의 안내기능보다 도로상의 주요지명으로 표기할 경우에는 갈색바탕의 관광지안내표기방법에 의하지 않고, 일반안내지명의 표기방법과 동일하게 표기하되, 한자병기를 하여서는 안된다.(예 : 남대문 등)
- (8) 설치위치
 - 지방지역도로 : 도시지역 밖에 위치한 관광지안내표지는 당해 관광지로부터 반경 10km 범위내에 있는 주요 진입도로의 교차점 등 적절한 위치에 10개소 이내로 주행방향의 오른쪽 길옆에 설치한다.
 - 도시지역도로 : 도시지역 안에 위치한 관광지안내표지는 당해 관광지로부터 반경 5km 범위내에 있는 주요 진입도로의 교차점 등 적절한 위치에 10개소 이내로 주행방향의 오른쪽 길옆에 설치한다.
 - 고속국도 : 해당 출구의 500m 전방에 복주식 또는 편지식으로 관광지표지를 설치하며 이 때 관광지명과 해당 출구명 및 출구번호를 병기한다. 고속국도에서 안내할 수 있는

관광지는 해당 출구로부터 반경 15km 범위내에 있는 관광지로 한정한다. 여러 관광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3개 이하의 시설을 안내하여야 한다.

- (9) 필요에 따라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출구지점의 적정한 위치에 해당 지역의 관광지를 안내하는 종합관광지표지 또는 5개까지 연립으로 관광지표지를 설치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상의 관광지 표지 설치 방법, 비용부담 등의 세부지침은 도로관리청에서 별도로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8 장 국·영·한문 표기

1. 국어표기 원칙

가. 글자의 모양

- (1) 글자 모양은 「산돌형의 고딕 Bold와 Medium」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고딕 볼드를 사용하고, 글자수가 많은 경우 예외적으로 미디움을 사용한다.
- (2) 문형식처럼 동일한 위치에 병렬로 둘 이상의 표지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글자 크기와 모양이 같게 표기해야 한다.
- (3) 표지판의 여건에 따라서 정체(正體: 가로와 세로가 동일한 크기의 글자)를 사용함이 원칙이나 글자수가 많아 정체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장체(長體: 세로가 길고, 가로가 짧은 크기의 글자)를 사용할 수 있다.
- (4) 글자 크기는 표지판의 크기에 따라서 적절히 크게 조정할 수 있다.

나. 띄어쓰기

한글맞춤법에 따라서 표기해야 한다.

다. 간격

- (1) 글자와 글자 : 글자 세로 길이의 0.2배
- (2) 단어와 단어 : 글자 세로 길이의 0.3배
- (3) 행과 행 : 글자 세로 길이의 0.3~0.4배 이하

라. 문장부호

- (1) 소수를 표시할 경우 : 도로표지판에서 아라비아 숫자를 표기할 때에는 소수점이하 숫자는 80% 정도로 작게 표기한다.

25.6 100.78

- (2) 같은 자격의 어구가 열거될 경우 : 슬래쉬나 하이픈을 넣어 구별한다.

서울/대전/광주

서울-대전

봉천 5-7동

- (3) 괄호를 사용할 경우 : 앞과 뒤에 한 여백을 두고 표기 한다.

불국사 (佛國寺)

산돌고딕 Bold

① 100% (정체)

동천남충북
기산구수부

② 95% (장체)

동천남충북
기산구수부

③ 90% (장체)

동천남충북
기산구수부

① 100% (정체)

동천남충북
기산구수부

② 95% (장체)

동천남충북
기산구수부

③ 90% (장체)

동천남충북
기산구수부

2. 영문표기 원칙

가. 기본원칙

- (1) 영문표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과 국제적표준표기 관례 및 국제 통용약어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
- (2) 외국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 (3)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현대적인 영어를 표기한다.
- (4) 영어의 관사는 생략한다.
- (5) 영어표기는 한글의 내용을 모두 표기하지 않고 유형별로 간단·명료하게 시설종류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표기한다.
예) • 종합병원, 개인병원, 시립병원 → Hospital
• 경기장, 운동장, 공설운동장, 시민운동장, 종합운동장, → Stadium
• 국제공항, 일반공항 → Airport
• 시민회관, 구민회관 → Citizen's Hall
- (6) 안내지명이 고유명사와 보통명사등으로 구성된 단어인 경우 고유명사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에 의하여 쓰고 보통명사는 영어로 표기한다. 단, 문화재명은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 영어로 표기한다.
예) 부산역 → Busan Stn
- (7) 영문의 첫글자는 대문자로,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 (8) 고유명사화된 지명 또는 시설명과 보통명사가 복합되어 고유명사가 된 지명 또는 시설명은 구분하여 표기한다.
(가) 도로명, 재(고개) 등 고유명사화된 지명 또는 시설명은

한글 발음대로 영어로 표기한다.

(나) 교량, 산, 하천 등 시설명은 한글 발음대로 표기하되, 한글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단어 끝의 괄호속에 교, 산, 강(천)의 영어약어를 표기한다.

(9) 두 단어의 복합어와 단일어의 표현이 같을 때에는 그 의미의 전달이 가능한 단어로 간단히 표현한다.

예) Research Institute → Institute

(10)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나, 기타 분절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붙임표(-)를 넣어 표기한다.

예) • 신갈 → Sin-gal
• 판교 → Pan-gyo

나. 글자 모양

(1) 영문의 글자 모양(Typeface)은 산 세리프(Sans Serif) 모양의 Helvetica형 Bold 또는 Medium 모양으로 한다. Bold는 고속도로표지판에 사용하고, Medium은 일반도로 및 시도의 표지판에 사용한다.

(2) 영문은 국문과 조화(調和)가 될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한다. 한글모양이 고딕이면 영문도 고딕으로, 한글이 장체(長體)이면 영문도 장체(長體)로 표기한다.

① 100% (정 체)

Helvetica-Bold

ABCDEFGH
IJKLMNOP
QRSTUVWXYZ
abcdefghijklmnop
qrstuvwxyz
1234567890

Helvetica-Medium

ABCDEFGH
IJKLMNOP
QRSTUVWXYZ
abcdefghijklmnop
qrstuvwxyz
1234567890

② 90% (장체)

Helvetica-Bold

ABCDEFGH
IJKLMNOP
QRSTUVWXYZ
abcdefghijklmnop
qrstuvwxyz
1234567890

Helvetica-Medium

ABCDEFGH
IJKLMNOP
QRSTUVWXYZ
abcdefghijklmnop
qrstuvwxyz
1234567890

다. 영문 글자의 크기

영문 첫 대문자의 세로높이가 한글 세로 크기의 60%로 한다.

라. 간격

(1) 글자 간격[文字 間隔]은 겹치지 않도록(no kerning) 표기하
되, 소문자 [o]폭의 0.3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단어 간격(單語 間隔)은 소문자 [o]폭의 0.7~1배로 한다.

(3) 행간 간격(行間 間隔)은 단어 간격보다 넓게 한다. 다만,
국어와 영문을 병행하여 표기할 경우에는 국어 단어 간격
을 고려하여 한글의 행간 간격 표기법에 따라서 표기한다.

[주의]

대문자 아이 (I), 소문자 엘 (l)과 아이 (i)가 들어 있는 표
기를 할 때는 글자 간격을 주의 깊게 조절해야 한다.

마. 영문 띄어쓰기

(1) 복합어는 최근에 통용되고 있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Racecourse

Farmland

(2) 두 단어 이상의 용어를 사용하여 표기할 경우에는 단어를
구분하여 표기해야 한다.

Seoul Racecourse

Seoul Natl Univ

바. 문장 부호

(1) 피어리어드 (THE PERIOD: < . >) : 마침표

약어를 나타낼 때 쓴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로 표지판에서는 시각적 인지성이 미약하기 때문에 생략
한다.

Apt

USA

(2) 콜론 (THE COLON: < : >) : 쌍점

콜론이 설명의 의미로 쓰일 때는 (가)와 같이 표기하고,
대등한 관계 또는 비율을 나타낼 때는 (나)처럼 표기한다.

(가) Place : Sejong Cultural Center

Time : August 15, 1995 또는 15 August 1995

Phone : 02-399-1512 또는 (02) 399-1512

(나) 12:30 (12시 30분)

1:3 (1 대 3)

(3) 하이픈 (THE HYPHEN: < - >) : 짧은 줄표

(가) 하이픈은 둘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길이는
대쉬(--)의 절반이다.

Gangnam-gu

Gyeonggi-do

[주의]

하이픈의 양 끝에 표준 여백 이상의 틈을 주지 않
고 표기한다.

(나) 연속하는 숫자를 나타낼 때 쓴다.

1995-97 (1995년부터 1997년까지)

(4) 슬래쉬(THE SOLIDUS: < / > : 사전

나열, 분수, 대비 등을 나타낼 때 쓴다.

나열 : Seoul/Daejon/Gwangju

분수 : 1/2

대비 : km/h

(5) 어포스트로피(THE APOSTROPHE: < ' >)

보통 약어나 소유격을 나타낼 때 쓰지만, 도로표지에서는
피어리어드 또는 콤마처럼 잘 사용하지 않는다.

Schl

Intl

(6) 퍼렌씨시스(PARENTHESSES: < () >): 둥근 괄호
앞과 뒤에 한 문자(one letter) 여백을 두고 띄어 쓴다.

(02) 567-9901

Namsan (Mt)

사. 행정구역 단위 표기방법

- (1)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가’는 각각 ‘do, si, gun, gu, eup, myeon, ri, dong, ga’로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보기)

충청북도 : Chungcheongbuk-do 제주도 : Jeju-do
의정부시 : Uijeongbu-si 양주군 : Yangju-gun
도봉구 : Dobong-gu 신창읍 : Sinchang-eup
삼죽면 : Samjuk-myeon 인왕리 : Inwang-ri
봉천1동 : Bongcheon 1(il)-dong 당산동 : Dangsan-dong
종로2가 : Jongno 2(i)-ga
퇴계로3가 : Toegyero 3(sam)-ga

- (2) 안내지명 표기시 특별시, 광역시, 시, 군, 읍, 면의 행정구역 단위는 생략한다.

(보기)

부산광역시 : Busan 청주시 : Cheongju
함평군 : Hampyeong 순창읍 : Sunchang

아. 시설물별 표기방법

- (1) 도로의 인터체인지 또는 외곽순환도로에서 방향+지명인 경우

동서울 : East Seoul 또는 E.Seoul
북수원 : North Suwon 또는 N.Suwon

- (2) 역명인 경우

서광주역 : Seogwangju Stn 동대구역 : Dongdaegu Stn
신용산역 : Sinyongsan Stn

(3) 도로명의 경우

종로 : Jongno 을지로 : Euljiro
봉은사로 : Bongeunsaro 천변우로 : Cheonbyeonuro
봉천3로 : Bongcheon 3(sam)no

(4) 교량명의 경우

상주교 : Sangjugyo(Br) 금강교 : Geumganggyo(Br)
한강대교 : Hangangdaegyo(Br)

(5) 산의 경우

남산 : Namsan(Mt) 지리산 : Jirisan(Mt)

(6) 하천의 경우

금강 : Geumgang(Riv) 한강 : Hangang(Riv)
낙동강 : Nakdonggang(Riv)

(7) 터널의 경우

중부터널 : Jungbu Tunnel
영동터널 : Yeongdong Tunnel

(8) 문화재·유적지등 문화유산의 경우

송광사 : Songgwangsa 불국사 : Bulguksa
남대문 : Namdaemun 종묘 : Jongmyo
안압지 : Anapji 동문 : Dongmun
남한산성 : Namhansanseong

(9) 재(고개)의 경우

대관령 : Daegwallyeong
남태령 : Namtaeryeong

(10) 교차로의 표기

Junction : Jct (등급이 같은 도로간의 교차로)

Crossroad : CR (도로와 철도의 교차로)

Interchange : IC (등급이 다른 도로간의 교차로)

(11) 행정관청의 경우

도청 : Provincial Office

시청 : City Hall

군청 : County Office

구청 : District Office

읍·면·동사무소 : Town Office

(12) 널리 알려진 종래의 관습적 표기는 현행대로 표기

서울 : Seoul

이순신 : Yi. Sun-Shin

이승만 : Syngman Rhee

연세 : Yonsei

이화 : Ewha

(13) 널리 알려진 사설단체등의 표기는 해당단체에서 사용하는 대로 표기

금호 : Kumho

삼성 : Samsung

쌍용 : Ssangyong

현대 : Hyundai

자. 보통명사에 대한 영문 및 약어 표기

- (1) 영문은 원어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약어로 표기한다.
- (2) 공간이 부족하여 약어로 표기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중요한 용어는 원어로 쓰고,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용어를 약어로 표기하되, 약어를 중복 표기하여서는 안된다.
- (3) 약어의 표기는 국제적 표준 약어와 국제적 표기법에 따르며 영어권 외국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약어를 사용한다.
- (4) 정보전달의 신속성(迅速性)과 정확성(正確性)을 위하여 일반적

표기와는 달리 시각적 인지도를 우선하여 표기한다.

- (5) 현대 약어는 마침표를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도로표지판에 표기할 때는 공간활용과 시인성 때문에 이를 생략한다.
- (6) 지명이나 행정구역명이 포함되어 영문표기가 과다하게 길어지는 경우에는 지명이나 행정구역명을 생략할 수 있다.

3. 한자 표기 원칙

가. 글자의 모양

- (1) 글자모양은 「산돌형의 고딕 Bold와 Medium」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고딕 Medium을 사용하되, 표기문안 한자의 획수가 모두 15획 이하인 경우에는 고딕 Bold를 사용할 수 있다.
- (2) 글자크기는 세로높이가 한글 세로크기의 90%인 정체로 한다.

나. 띄어쓰기 및 표기위치

- (1) 띄어쓰기는 한글맞춤법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
- (2) 표기위치는 한글문안의 아래쪽 중앙부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표기할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한글문안의 우측 공간에 표기할 수 있다.

다. 간격

- (1) 글자와 글자 : 글자 세로길이의 0.2배
- (2) 단어와 단어 : 글자 세로길이의 0.3배
- (3) 행과 행 : 글자 세로길이의 0.3~0.4배 이하

① 100% (정 체)

고딕 - Medium

歌 羅 茶 裸 磨 辭

雅 磁 遮 墮 婆 霞

고딕 - Bold

佳 奈 茶 拏 馬 社

阿 字 車 陀 波 河

제 9 장 행정사항

1.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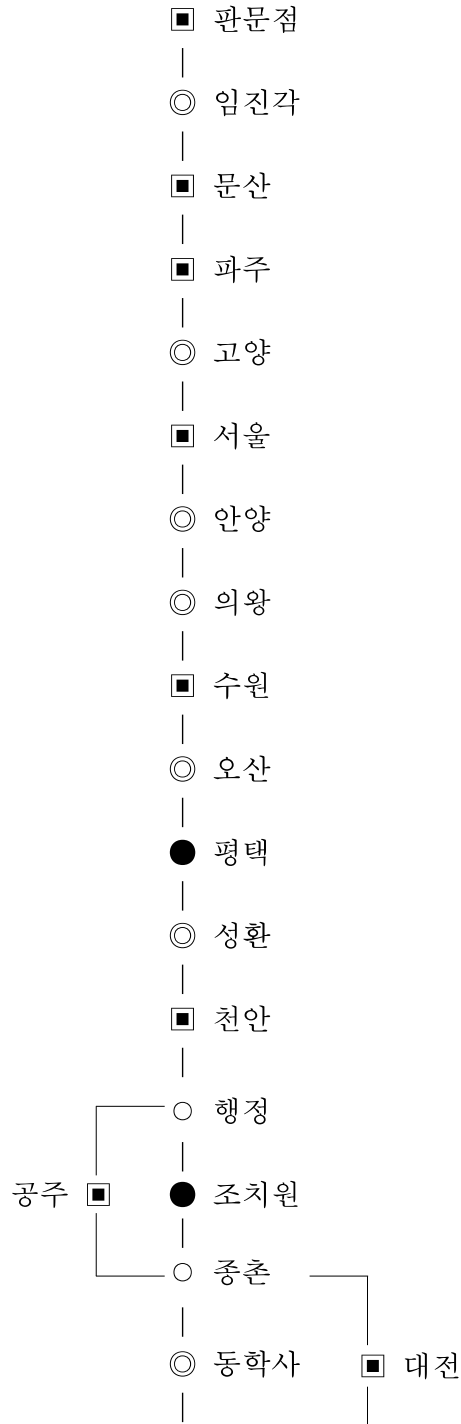
제2조(종전 지침의 폐지) 종전의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 지침」〔도로관리팀-730(06.3.10)〕 호는 폐지한다.

【별표1】

국 도 안 내 지 명

국도1호선

판문점→목포	
원거리	근거리
서울	임진각
서울	문산
서울	파주
서울	고양
서울	*
수원	안양
수원	의왕
천안	수원
천안	오산
천안	평택
천안	성환
대전	천안
대전	공주
대전	조치원
대전	공주
대전	동학사
논산	계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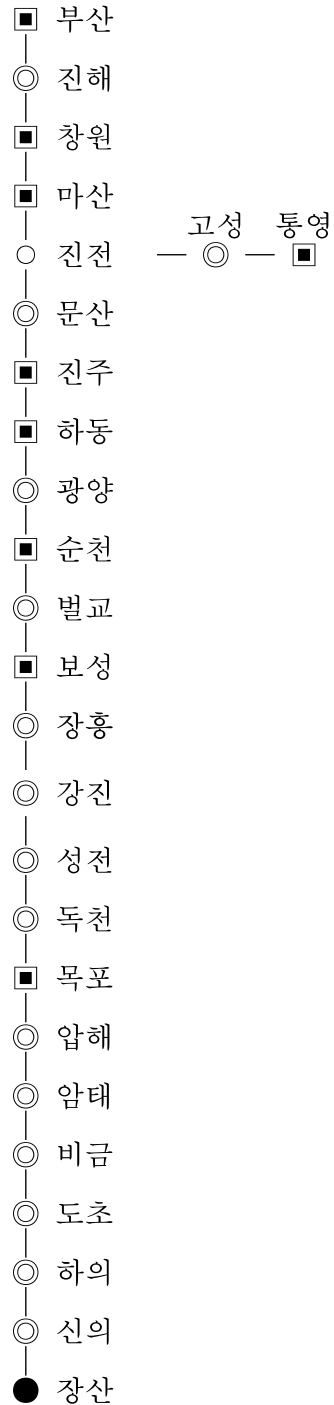


목포→판문점	
원거리	근거리
판문점	*
판문점	임진각
판문점	문산
문산	파주
파주	고양
서울	*
서울	안양
서울	의왕
서울	수원
수원	오산
수원	평택
평택	성환
평택	천안
평택	천안
천안	조치원
천안	조치원
조치원	동학사

부여	논산	○ 계룡	대전	계룡
전주	연무	부여 ■ — ■ 논산	대전	논산
전주	금마	○ 연무	논산	연무
전주	삼례	○ 금마	논산	금마
전주	*	○ 삼례	논산	삼례
전주	*	군산 ■ — ○ 동산	논산	군산
정읍	원평	■ 전주	전주	*
정읍	태인	○ 원평	전주	원평
광주	정읍	○ 태인	전주	태인
광주	백양사	■ 정읍	전주	정읍
광주	장성	○ 백양사	정읍	백양사
광주	*	○ 장성	정읍	장성
목포	남평	■ 광주	광주	*
목포	나주	○ 남평	광주	남평
목포	무안	○ 나주	광주	나주
목포	*	○ 무안	광주	무안
		■ 목포		

국도2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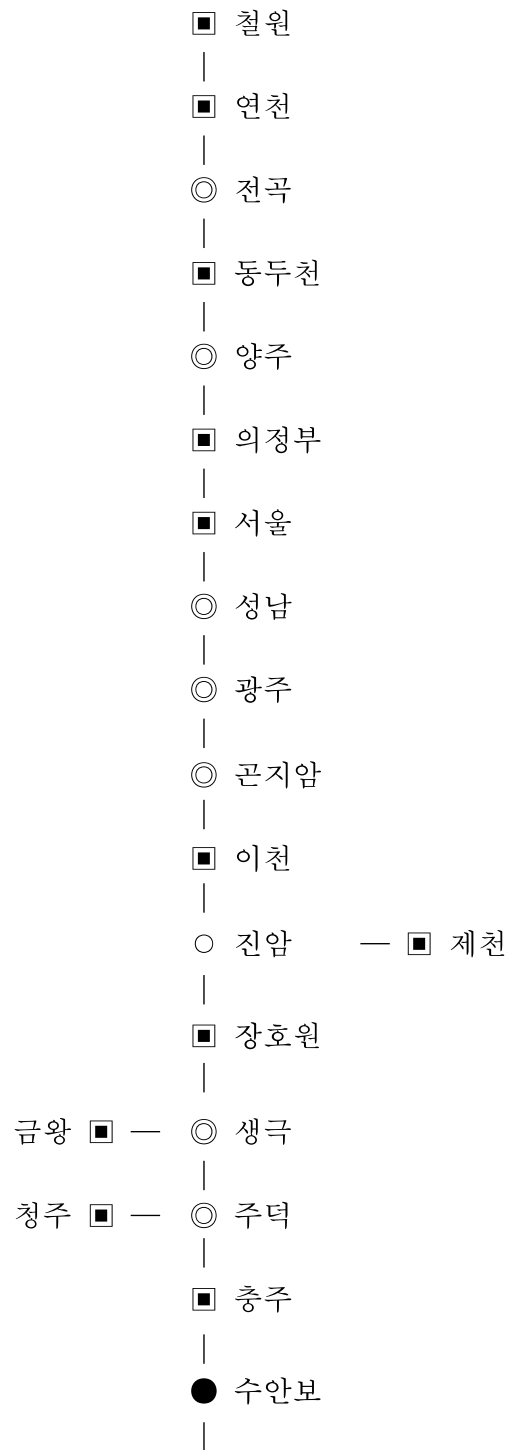
부산→신안	
원거리	근거리
창원	진해
마산	창원
마산	*
통영	고성
진주	문산
하동	진주
순천	하동
순천	광양
보성	순천
보성	별교
목포	보성
목포	장흥
목포	강진
목포	성전
목포	독천
장산	목포
장산	압해
장산	암태
장산	비금
장산	도초
장산	하의
장산	신의
장산	*



신안→부산	
원거리	근거리
부산	*
부산	진해
부산	창원
창원	마산
마산	통영
마산	문산
마산	진주
진주	하동
하동	광양
광양	순천
순천	별교
순천	보성
보성	장흥
보성	강진
보성	성전
보성	독천
보성	목포
목포	압해
목포	암태
목포	비금
목포	도초
목포	하의
목포	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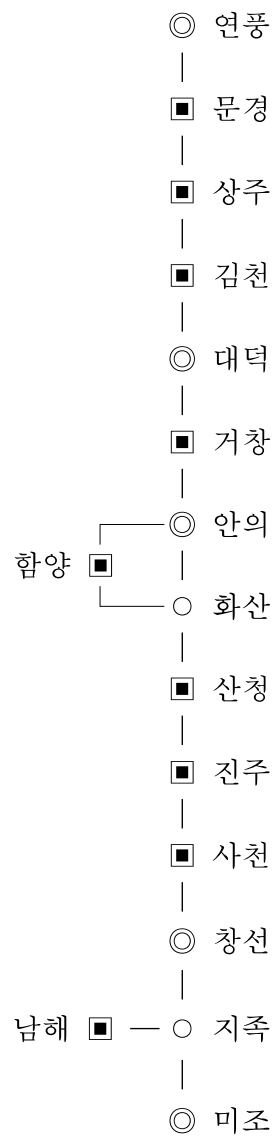
국도3호선

철원→남해	
원거리	근거리
동두천	연천
동두천	전곡
의정부	동두천
의정부	양주
서울	의정부
서울	*
이천	성남
이천	광주
이천	곤지암
장호원	이천
충주	장호원
충주	장호원
충주	금왕
충주	주덕
문경	충주
문경	수안보
문경	연풍



남해→철원	
원거리	근거리
철원	*
철원	연천
연천	전곡
연천	동두천
동두천	양주
동두천	의정부
서울	*
서울	성남
서울	광주
서울	곤지암
서울	이천
서울	이천
이천	장호원
장호원	생극
장호원	청주
장호원	충주
충주	수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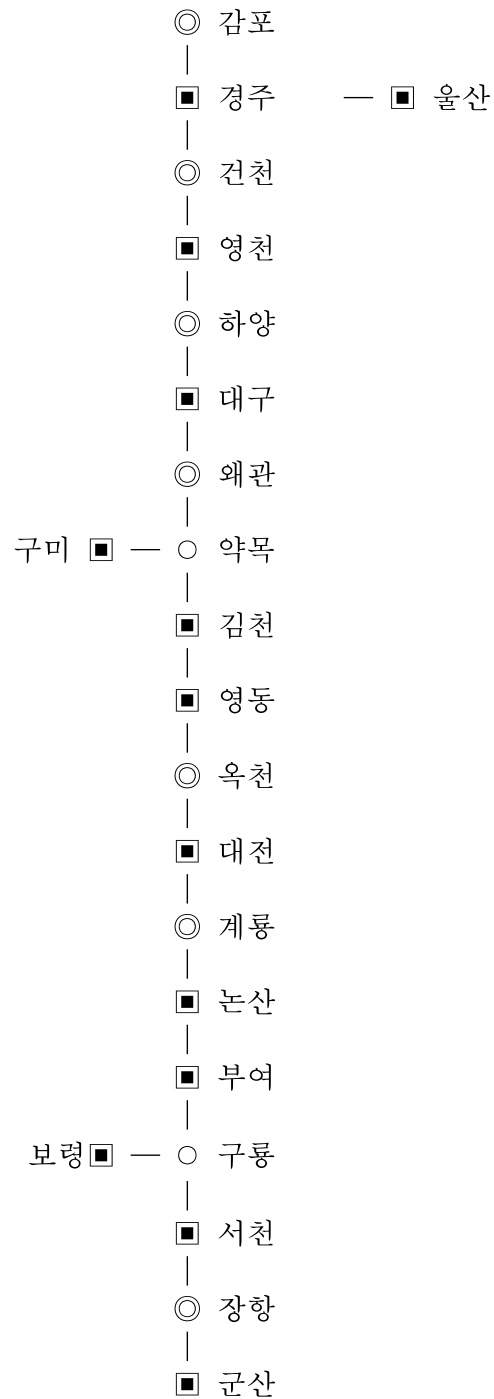
상주	문경
김천	상주
거창	김천
거창	대덕
산청	거창
산청	함양
진주	산청
진주	산청
사천	진주
남해	사천
남해	창선
남해	미조
미조	*



충주	연풍
충주	문경
문경	상주
상주	김천
김천	대덕
김천	거창
거창	안의
거창	함양
함양	산청
산청	진주
진주	사천
사천	창선
사천	창선

국도4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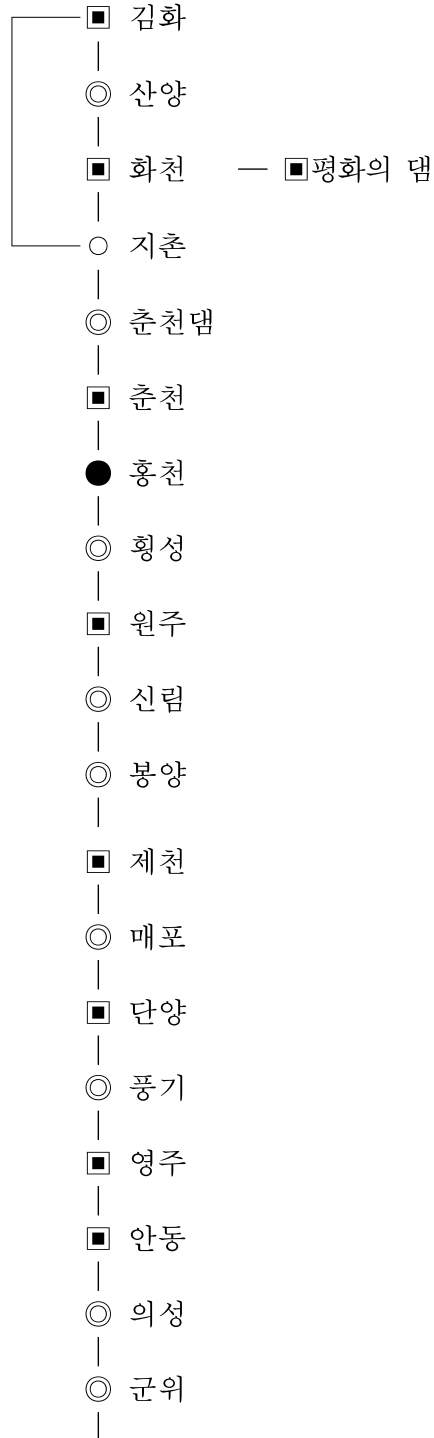
경주→군산	
원거리	근거리
영천	경주
영천	건천
대구	영천
대구	하양
대구	*
김천	왜관
김천	구미
영동	김천
대전	영동
대전	옥천
대전	*
논산	계룡
부여	논산
서천	부여
서천	보령
군산	서천
군산	장항
군산	*



군산→경주	
원거리	근거리
감포	*
울산	경주
경주	건천
경주	영천
영천	하양
대구	*
대구	왜관
대구	왜관
대구	김천
김천	영동
영동	옥천
대전	*
대전	계룡
대전	논산
논산	부여
논산	부여
부여	서천
서천	장항

국도5호선

중강진→거제	
원거리	근거리
화천	산양
춘천	화천
춘천	춘천댐
춘천	춘천댐
홍천	춘천
원주	홍천
원주	횡성
제천	원주
제천	신림
제천	봉양
단양	제천
단양	매포
영주	단양
영주	풍기
안동	영주
대구	안동
대구	의성
대구	군위
대구	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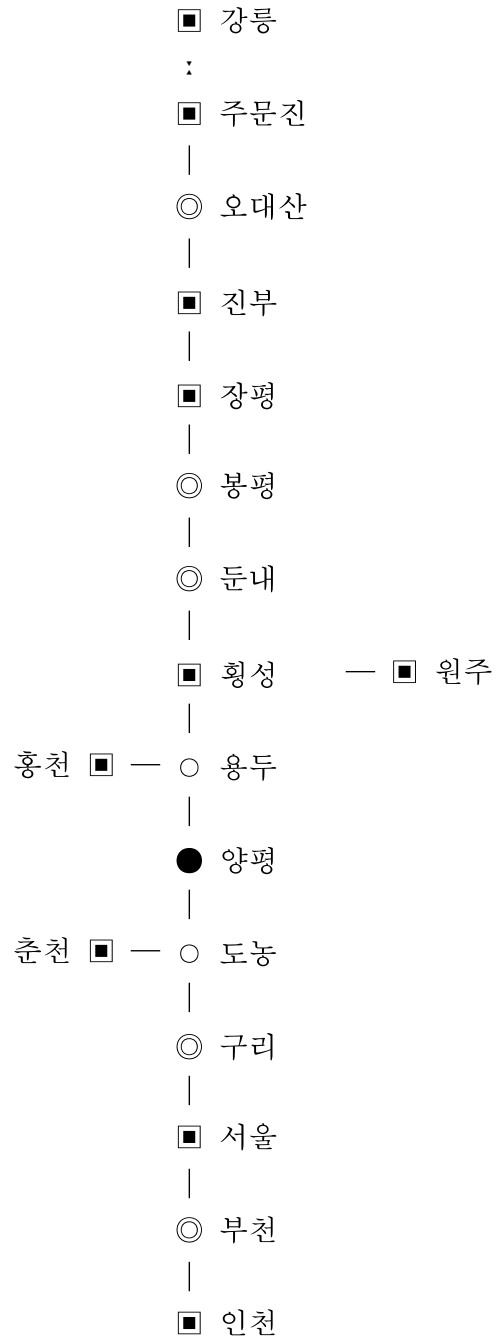


거제→중강진	
원거리	근거리
김화	*
김화	산양
평화의댐	화천
김화	화천
화천	춘천댐
화천	춘천
춘천	홍천
춘천	횡성
춘천	원주
원주	신림
원주	봉양
원주	제천
제천	매포
제천	단양
단양	풍기
단양	영주
영주	안동
안동	의성
안동	군위

대구	*	상주 ■ — ○ 가산	안동	상주
창녕	고령	■ 대구	대구	*
창녕	고령	○ 화원	대구	화원
창녕	현풍	○ 위천	대구	고령
마산	창녕	○ 현풍	대구	현풍
마산	영산	■ 창녕	대구	창녕
마산	남지	○ 영산	창녕	영산
구산	마산	○ 남지	창녕	남지
구산	*	■ 마산	창녕	마산
		○ 구산		
		■ 거제		

국도6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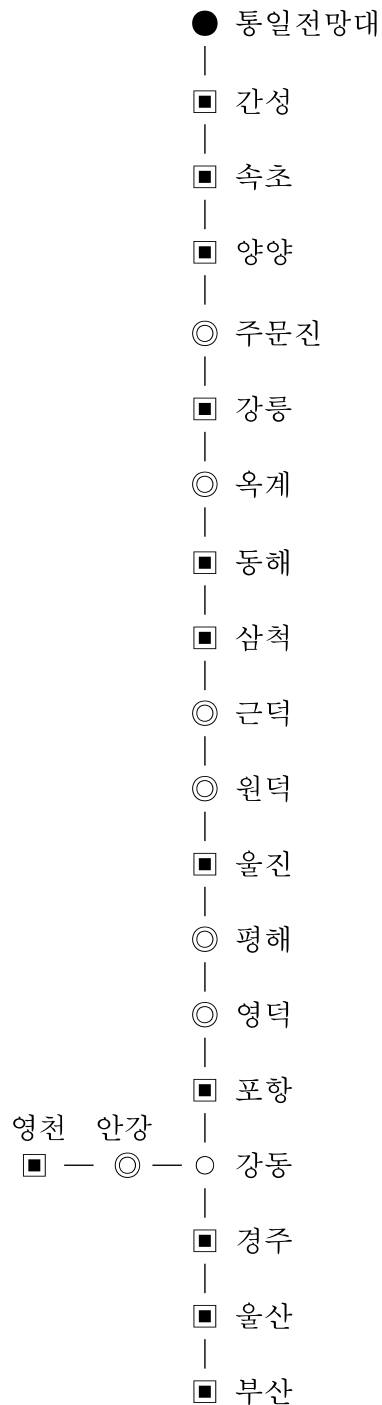
주문진→인천	
원거리	근거리
진부	오대산
장평	진부
횡성	장평
횡성	봉평
횡성	둔내
양평	횡성
서울	양평
서울	양평
서울	구리
서울	구리
서울	*
인천	부천
인천	*



인천→주문진	
원거리	근거리
강릉	주문진
주문진	오대산
주문진	진부
진부	장평
장평	봉평
장평	둔내
원주	횡성
홍천	횡성
홍천	양평
춘천	양평
춘천	구리
서울	*
서울	부천

국도7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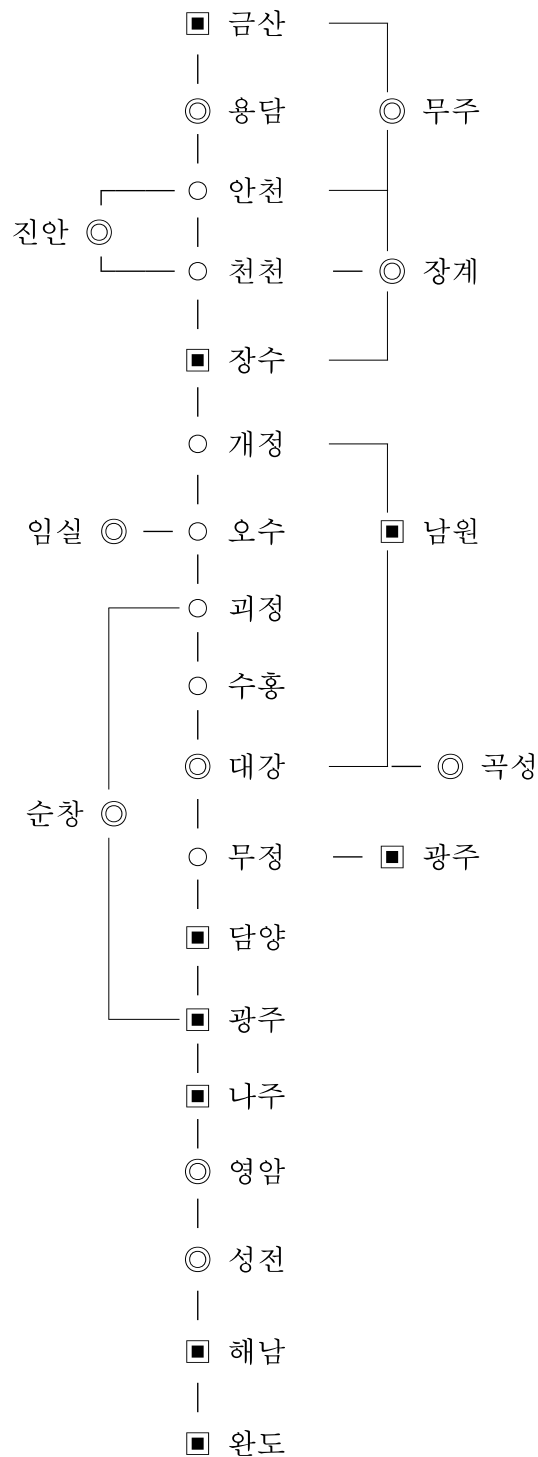
온성→부산	
원거리	근거리
속초	간성
양양	속초
강릉	양양
강릉	주문진
동해	강릉
동해	옥계
삼척	동해
울진	삼척
울진	근덕
울진	원덕
포항	울진
포항	평해
포항	영덕
경주	포항
경주	영천
울산	경주
부산	울산
부산	*



부산→온성	
원거리	근거리
통일전망대	*
통일전망대	간성
간성	속초
속초	양양
양양	주문진
양양	강릉
강릉	옥계
강릉	동해
동해	삼척
삼척	근덕
삼척	원덕
삼척	울진
울진	평해
울진	영덕
울진	포항
포항	안강
포항	경주
경주	울산

국도13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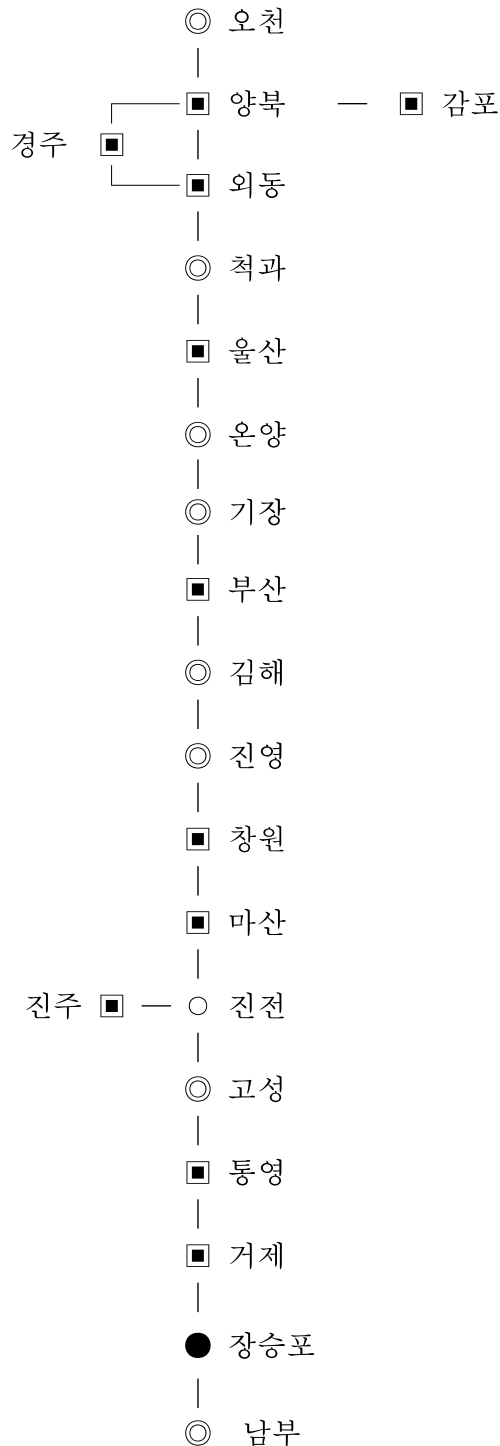
금산 → 완도	
원거리	근거리
장수	용담
장수	진안
장수	장계
담양	장수
담양	남원
담양	임실
담양	순창
담양	남원
담양	곡성
담양	광주
담양	*
광주	*
해남	나주
해남	영암
해남	성전
완도	해남
완도	*



완도 → 금산	
원거리	근거리
대전	금산
금산	용담
금산	무주
금산	진안
금산	장수
금산	장수
장수	임실
임실	순창
임실	순창
남원	곡성
대강	광주
광주	담양
광주	*
광주	나주
나주	영암
나주	성전
나주	해남

국도14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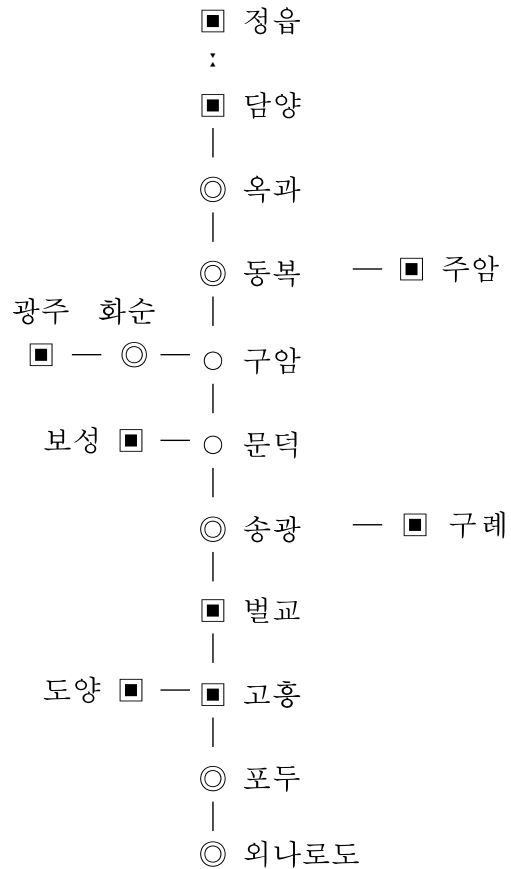
포항 → 거제	
원거리	근거리
감포	양북
외동	경주
울산	척과
울산	*
부산	온양
부산	기장
부산	*
창원	김해
창원	진영
마산	창원
진주	마산
진주	고성
통영	고성
거제	통영
장승포	거제
남부	장승포
남부	*



거제 → 포항	
원거리	근거리
오천	*
감포	양북
경주	외동
외동	척과
울산	*
울산	온양
울산	기장
부산	*
부산	김해
부산	진영
부산	창원
창원	마산
창원	마산
마산	고성
마산	통영
통영	거제
거제	장승포

국도15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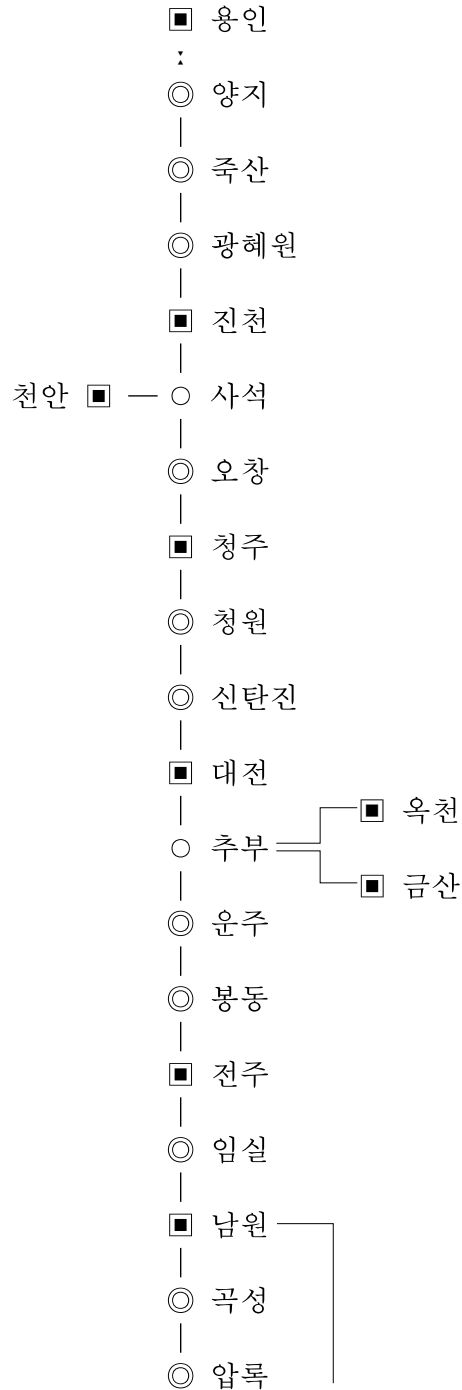
담양 → 고흥	
원거리	근거리
주암	옥과
주암	동북
광주	화순
별교	보성
구례	별교
고흥	별교
도양	고흥
외나로도	포두
외나로도	*



고흥 → 담양	
원거리	근거리
정읍	담양
담양	옥과
주암	동북
광주	화순
광주	보성
광주	송광
광주	별교
별교	고흥
고흥	포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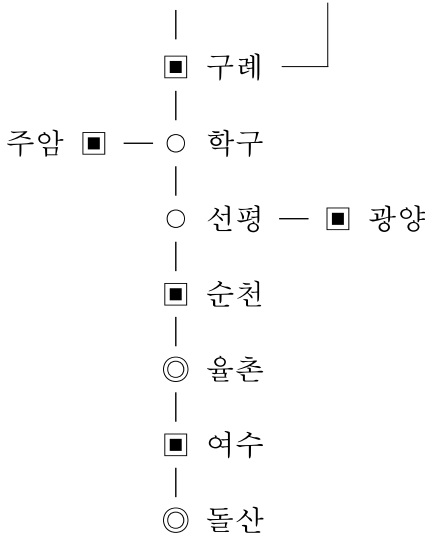
국도17호선

용인 → 여천	
원거리	근거리
진천	죽산
진천	광혜원
청주	진천
청주	천안
청주	오창
청주	*
대전	청원
대전	신탄진
대전	*
전주	옥천
전주	운주
전주	봉동
전주	*
남원	임실
구례	남원
순천	곡성
순천	압록



여천 → 용인	
원거리	근거리
용인	양지
용인	죽산
용인	광혜원
용인	진천
용인	진천
진천	오창
청주	*
청주	청원
청주	신탄진
대전	*
대전	금산
대전	운주
대전	봉동
전주	*
전주	임실
전주	남원
남원	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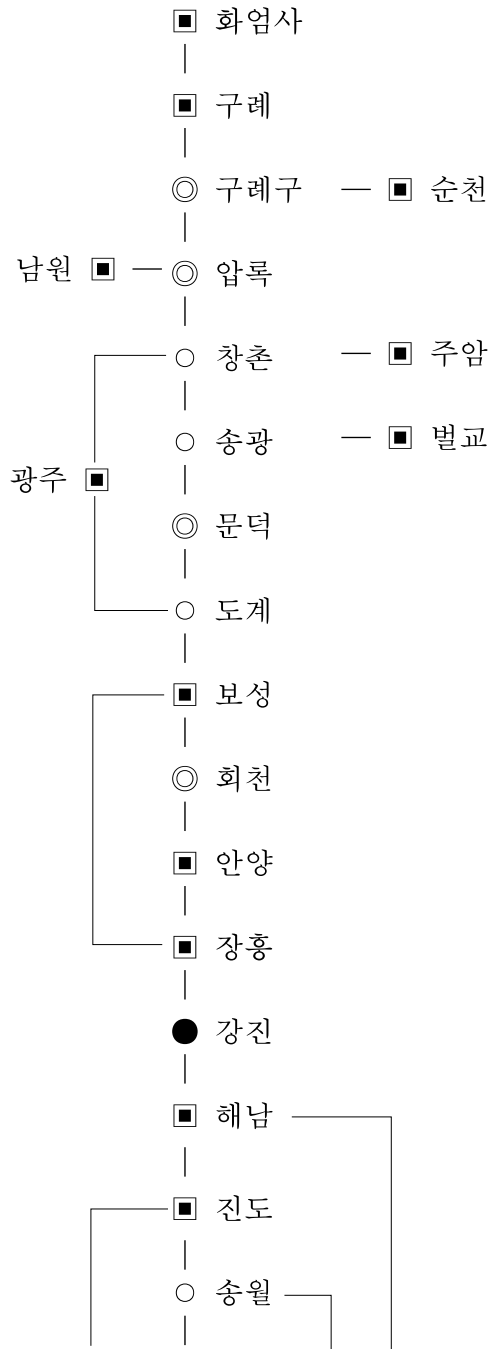
순천	구례
순천	광양
순천	광양
여수	순천
여수	울촌
돌산	여수
돌산	*



남원	압록
남원	구례
구례	주암
구례	주암
광양	순천
순천	울촌
순천	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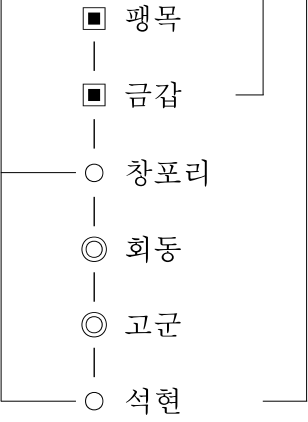
국도18호선

구례 → 진도	
원거리	근거리
순천	구례
순천	압록
남원	압록
광주	주암
보성	별교
보성	문덕
장흥	보성
장흥	보성
안양	회천
장흥	안양
강진	장흥
해남	강진
진도	해남
팽목	진도
팽목	금갑
팽목	*



진도 → 구례	
원거리	근거리
화엄사	*
화엄사	구례
순천	구례
구례	압록
구례	주암
구례	별교
구례	문덕
광주	문덕
광주	보성
보성	회천
보성	안양
보성	장흥
장흥	강진
장흥	해남
해남	진도
진도	금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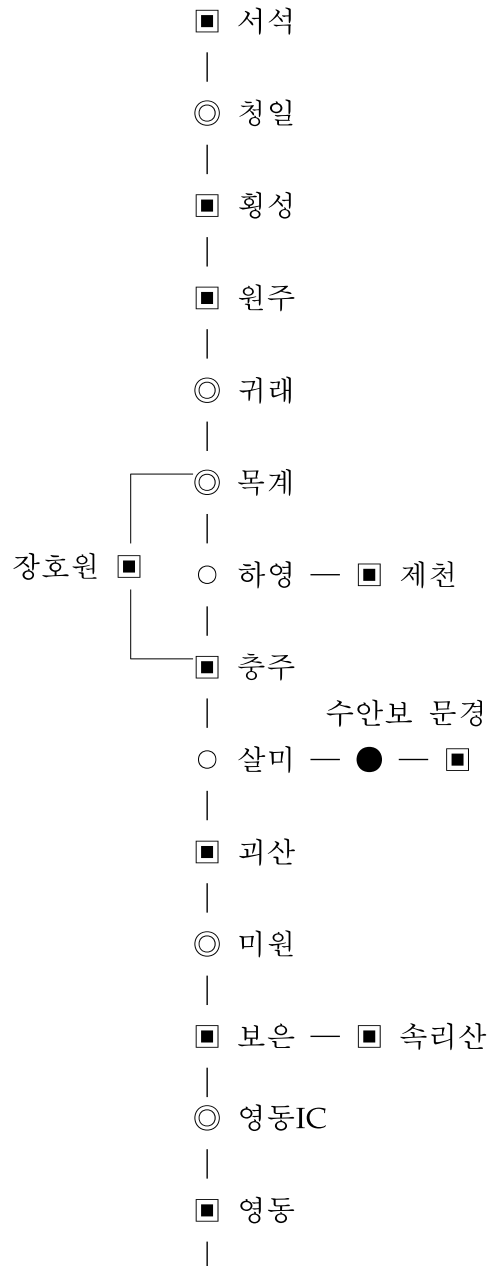
금갑	회동
회동	진도
고군	회동
해남	고군
해남	진도



팽목	*
팽목	금갑
금갑	진도
금갑	회동
금갑	고군

국도19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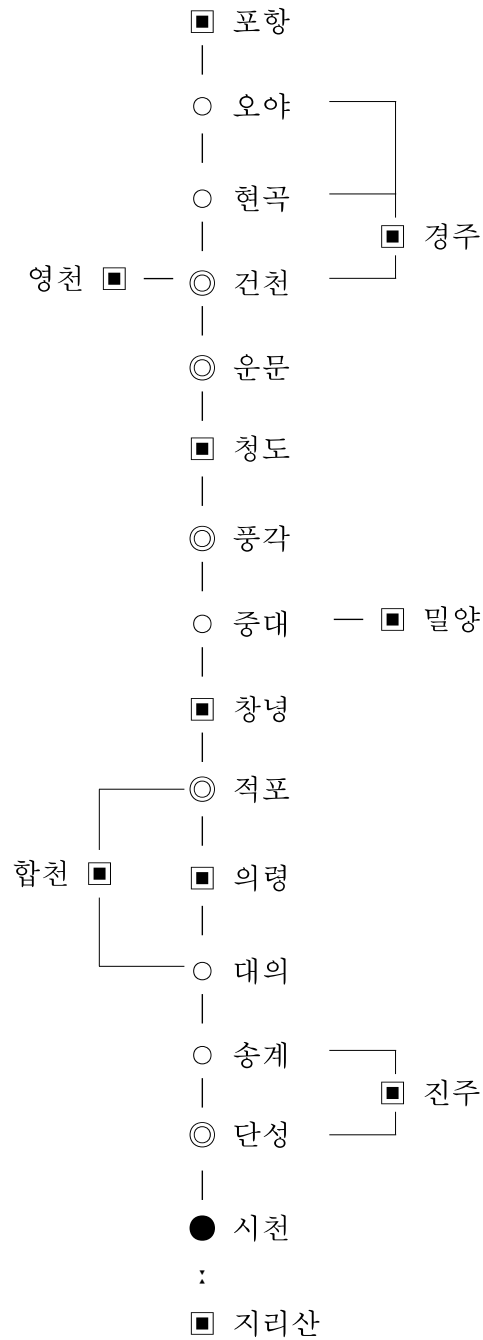
홍천→남해	
원거리	근거리
횡성	청일
원주	횡성
충주	원주
충주	귀래
충주	목계
제천	충주
수안보	충주
문경	수안보
보은	괴산
보은	미원
영동	보은
영동	영동IC
무주	영동
장수	무주



남해→홍천	
원거리	근거리
서석	*
서석	청일
서석	횡성
횡성	원주
원주	귀래
원주	장호원
원주	제천
장호원	충주
충주	수안보
충주	괴산
괴산	미원
속리산	보은
보은	영동IC
보은	영동

국도20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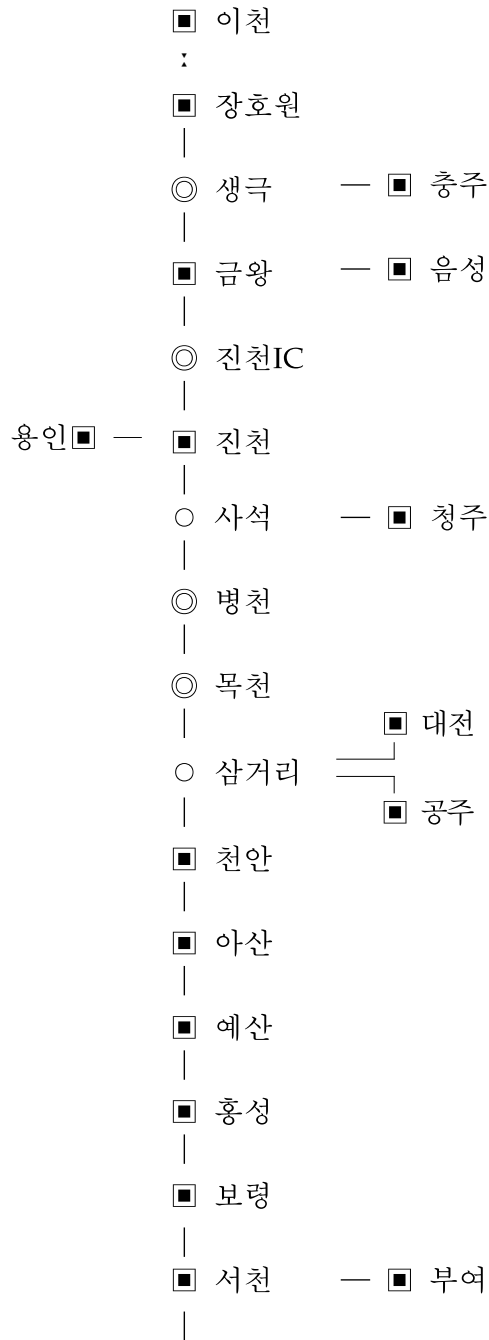
포항 → 산청	
원거리	근거리
영천	경주
영천	건천
영천	건천
청도	운문
창녕	청도
창녕	풍각
합천	창녕
합천	창녕
합천	적포
진주	의령
진주	단성
진주	단성
시천	단성
지리산	시천



산청 → 포항	
원거리	근거리
포항	*
포항	*
포항	경주
경주	건천
경주	운문
경주	청도
청도	풍각
밀양	청도
밀양	창녕
창녕	적포
창녕	의령
합천	의령
합천	의령
진주	단성

국도21호선

이천→남원	
원거리	근거리
충주	금왕
음성	금왕
진천	진천IC
천안	진천
천안	청주
천안	병천
천안	목천
아산	천안
아산	천안
예산	아산
홍성	예산
보령	홍성
서천	보령
장항	서천
군산	장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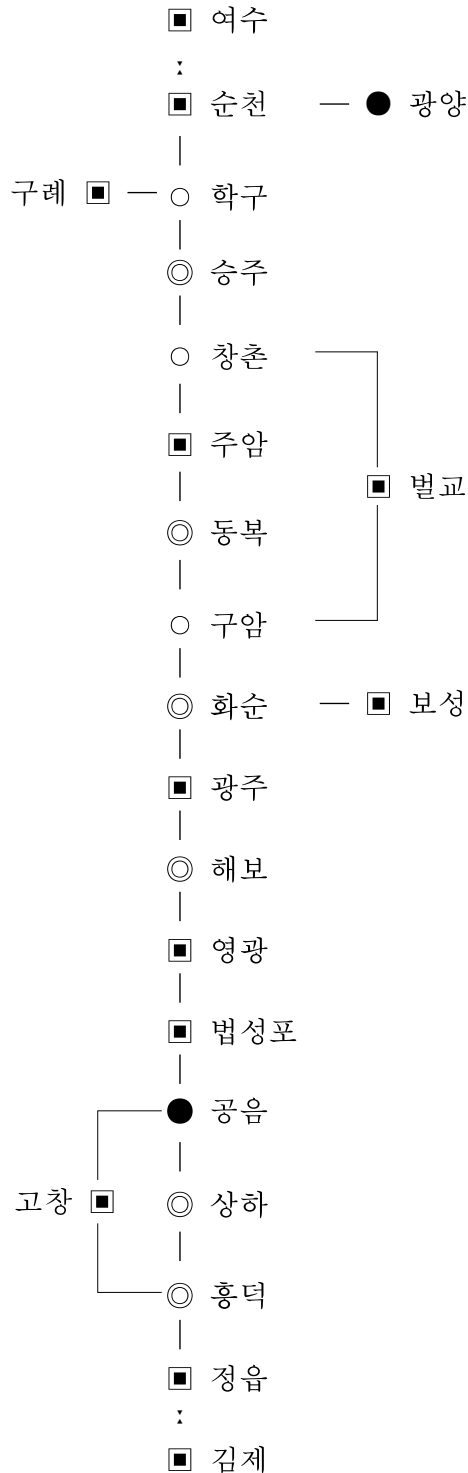


남원→이천	
원거리	근거리
이천	장호원
장호원	생극
장호원	금왕
금왕	진천IC
용인	진천
청주	진천
진천	병천
진천	목천
대전	공주
천안	*
천안	아산
아산	예산
예산	홍성
홍성	보령
부여	서천

군산	금강하구둑	장항 ■ — ○ 송내	서천	장항
군산	*		서천	금강하구둑
전주	대야	○ 금강하구둑	군산	*
전주	공덕		군산	대야
전주	*	■ 군산	군산	공덕
정읍	원평		전주	*
정읍	태인	○ 대야	전주	원평
광주	정읍		전주	태인
순창	내장산	○ 공덕	정읍	내장산
순창	월정		정읍	월정
순창	동계	■ 전주	정읍	순창
장수	동계			
		○ 원평		
		○ 태인		
		광주 ■ — ■ 정읍		
		담양 ■ — ○ 내장산		
		○ 월정		
		순창 ■ — ○ 도룡		
		○ 동계 — ■ 장수		

국도22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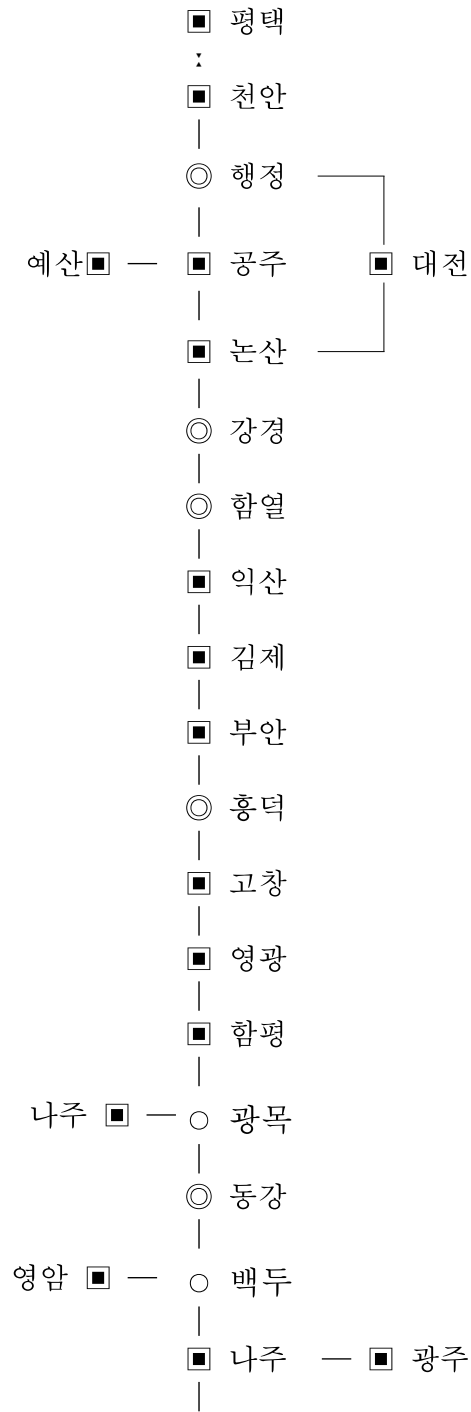
순천 → 정읍	
원거리	근거리
구례	주암
주암	승주
광주	주암
광주	주암
광주	동북
광주	화순
광주	화순
광주	*
영광	해보
법성포	영광
공음	법성포
고창	공음
정읍	상하
정읍	홍덕
김제	정읍



정읍 → 순천	
원거리	근거리
광양	순천
광양	순천
순천	승주
순천	별교
순천	주암
주암	동북
별교	동북
보성	화순
광주	*
광주	해보
광주	영광
영광	법성포
법성포	공음
법성포	상하
고창	홍덕

국도23호선

천안 → 강진	
원거리	근거리
대전	행정
논산	공주
익산	논산
익산	강경
익산	함열
김제	익산
부안	김제
고창	부안
고창	홍덕
영광	고창
함평	영광
나주	함평
나주	동강
영암	동강
나주	영암
광주	나주
보성	장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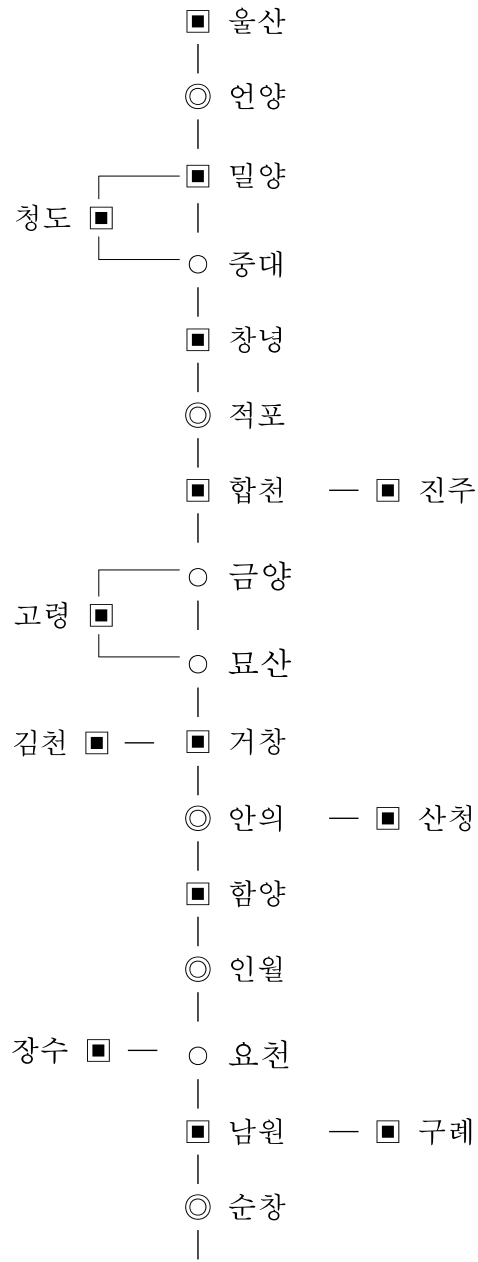


강진 → 천안	
원거리	근거리
평택	천안
천안	행정
천안	공주
대전	논산
논산	강경
논산	함열
논산	익산
익산	김제
김제	부안
부안	홍덕
부안	고창
고창	영광
영광	함평
영광	함평
함평	동강
함평	동강
광주	나주

목포	강진	목포 강진	장흥 — 보성 장흥 — 보성 장흥 — 보성	보성	장흥
대덕	관산	장흥 — 보성 장흥 — 보성 장흥 — 보성	장흥 — 보성 장흥 — 보성 장흥 — 보성	보성	장흥
마량	대덕	장흥 — 보성 장흥 — 보성 장흥 — 보성	장흥 — 보성 장흥 — 보성 장흥 — 보성	장흥	관산
강진	마량	장흥 — 보성 장흥 — 보성 장흥 — 보성	장흥 — 보성 장흥 — 보성 장흥 — 보성	장흥	대덕
목포	강진	장흥 — 보성 장흥 — 보성 장흥 — 보성	장흥 — 보성 장흥 — 보성 장흥 — 보성	대덕	마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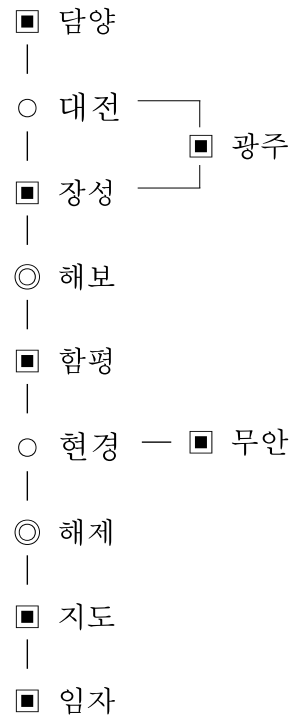
국도24호선

울산 → 신안	
원거리	근거리
밀양	언양
창녕	밀양
합천	창녕
합천	창녕
합천	적포
거창	합천
거창	고령
함양	거창
함양	거창
산청	함양
남원	함양
남원	인월
남원	장수
구례	남원
담양	순창
광주	담양



신안 → 울산	
원거리	근거리
울산	*
울산	언양
울산	밀양
밀양	청도
밀양	창녕
창녕	적포
진주	합천
진주	합천
고령	합천
김천	거창
거창	안의
거창	함양
함양	인월
함양	장수
함양	남원
남원	순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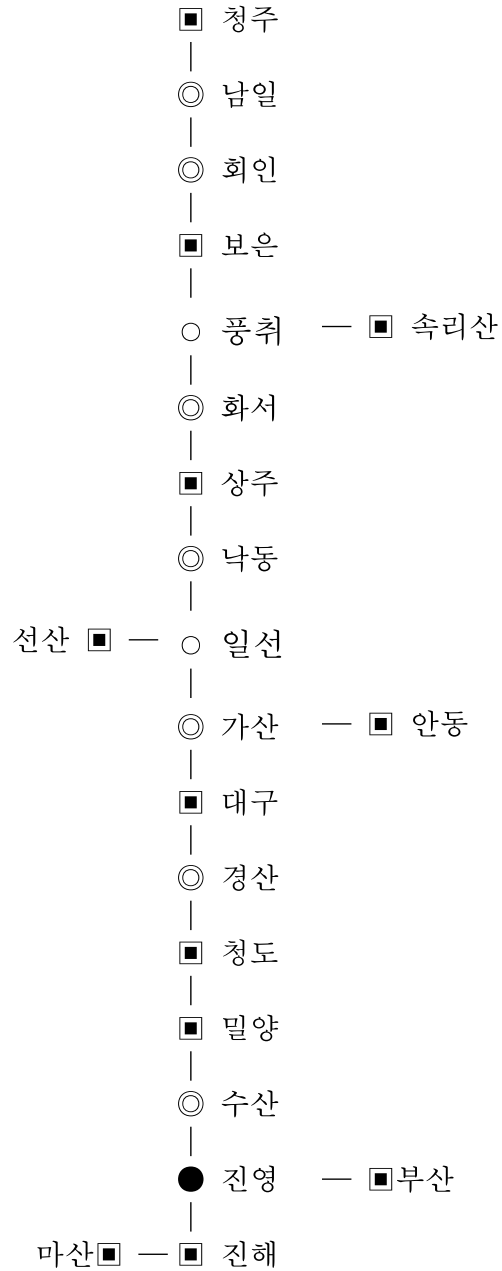
광주	장성
함평	장성
함평	해보
지도	함평
지도	해제
지도	해제
지도	임자
임자	*



남원	담양
남원	담양
광주	장성
장성	해보
장성	함평
함평	무안
함평	해제
함평	지도

국도25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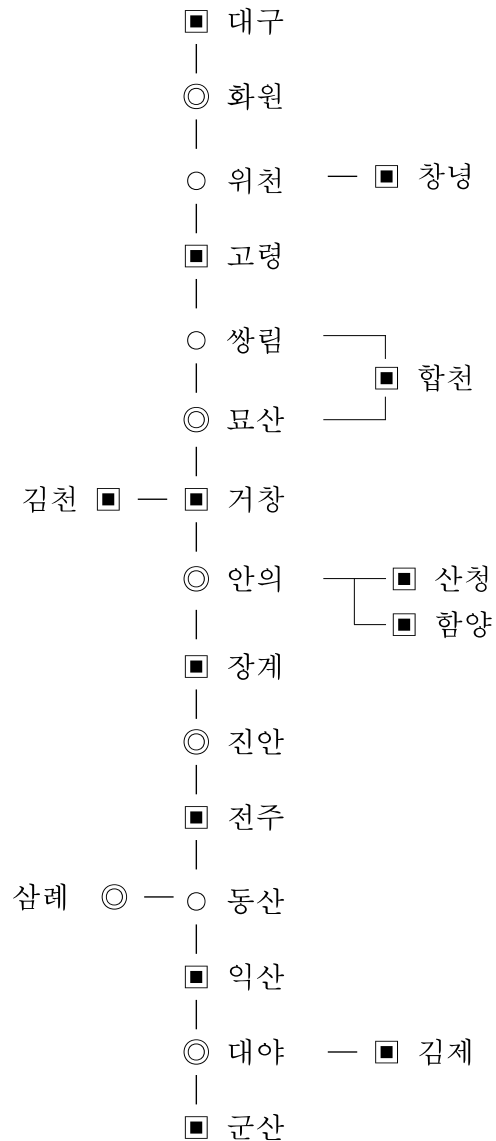
청주 → 진해	
원거리	근거리
보은	남일
보은	회인
상주	보은
상주	속리산
상주	화서
선산	상주
대구	선산
대구	선산
대구	가산
대구	*
청도	경산
밀양	청도
진영	밀양
진영	수산
마산	진영
마산	*



진해 → 청주	
원거리	근거리
청주	*
청주	남일
청주	회인
청주	보은
청주	보은
보은	화서
보은	상주
상주	낙동
상주	선산
안동	상주
대구	*
대구	경산
대구	청도
청도	밀양
밀양	수산
부산	진영

국도26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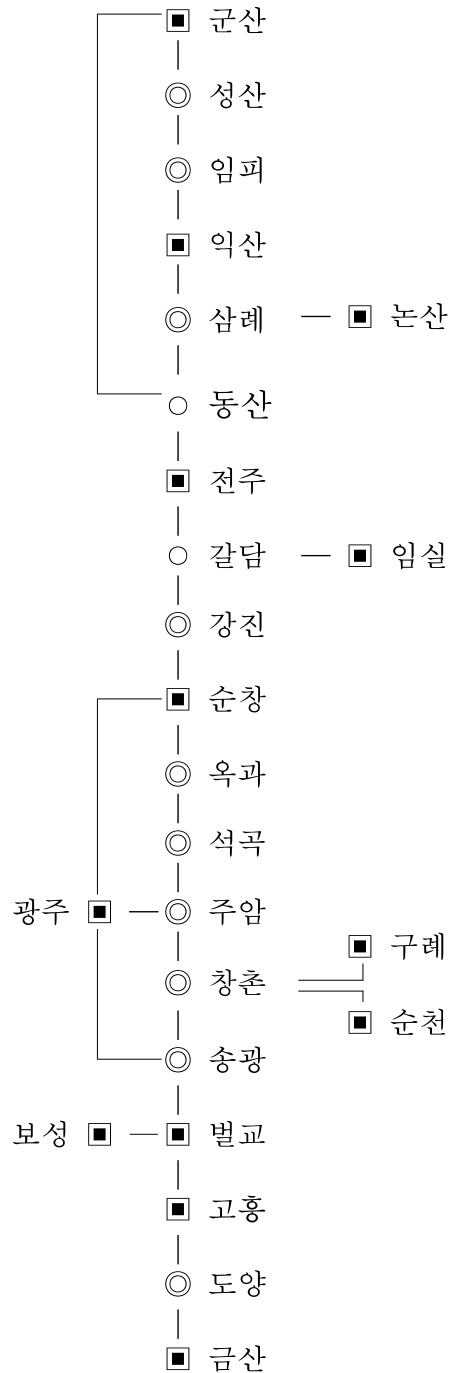
대구 → 군산	
원거리	근거리
창녕	고령
창녕	고령
거창	고령
거창	합천
거창	묘산
함양	거창
산청	함양
전주	장계
전주	진안
익산	전주
군산	익산
군산	익산
군산	대야
군산	*



군산 → 대구	
원거리	근거리
대구	*
대구	화원
대구	화원
대구	고령
대구	고령
고령	합천
김천	거창
거창	안의
거창	장계
장계	진안
전주	*
전주	삼례
전주	익산
익산	김제

국도27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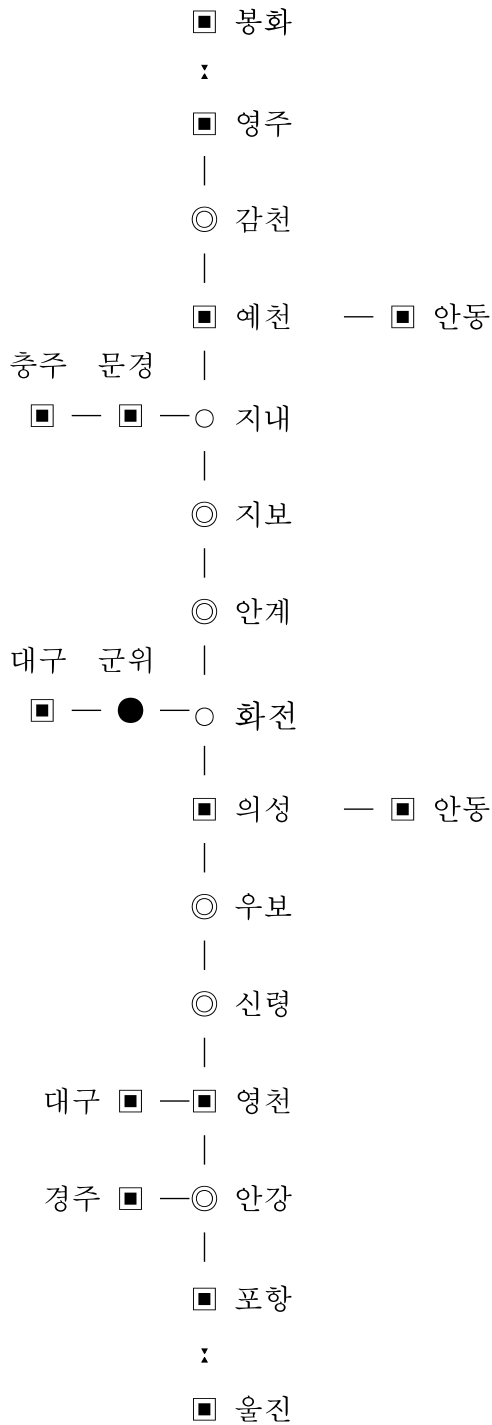
군산 → 고흥	
원거리	근거리
익산	성산
익산	임피
전주	익산
전주	삼례
전주	*
전주	*
순창	강진
순창	강진
광주	순창
별교	옥과
별교	석곡
별교	주암
순천	별교
보성	별교
고흥	별교
금산	고흥
금산	도양
금산	*



고흥 → 군산	
원거리	근거리
군산	*
군산	성산
군산	임피
군산	익산
논산	삼례
군산	익산
전주	*
전주	임실
전주	강진
전주	순창
순창	옥과
순창	석곡
광주	주암
구례	주암
광주	송광
광주	별교
별교	고흥
고흥	도양

국도28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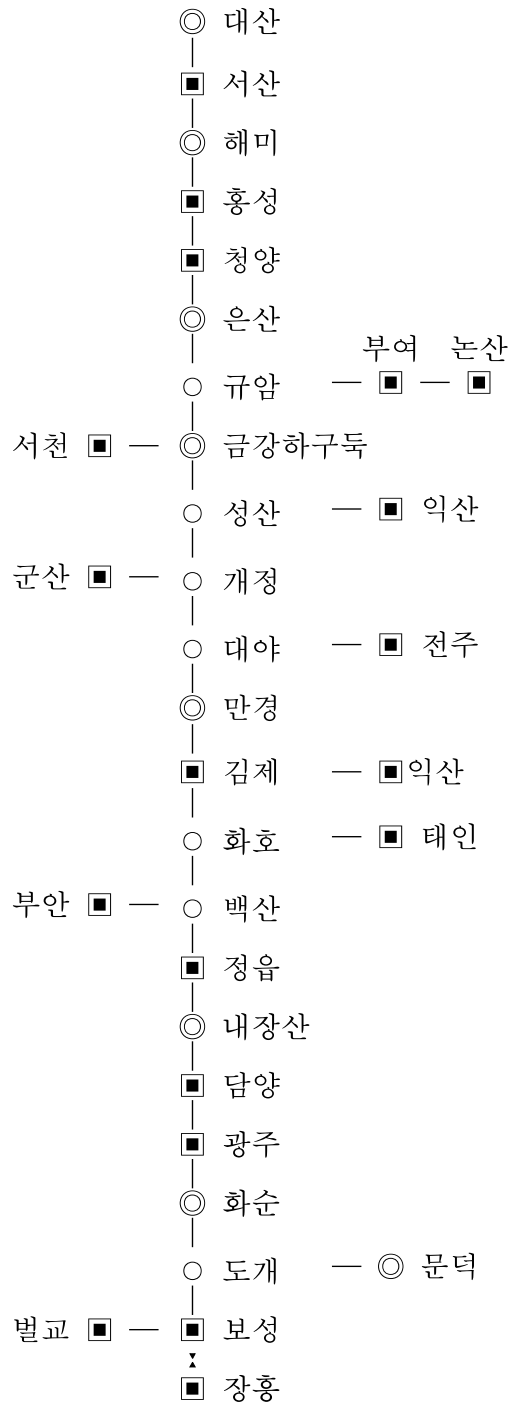
영주 → 포항	
원거리	근거리
예천	감천
문경	예천
충주	문경
군위	지보
군위	안계
대구	군위
안동	의성
영천	우보
영천	신령
포항	영천
포항	안강
울진	포항



포항 → 영주	
원거리	근거리
봉화	영주
영주	감천
안동	예천
안동	예천
예천	지보
예천	안계
대구	군위
안동	의성
의성	우보
의성	신령
대구	영천
경주	영천

국도29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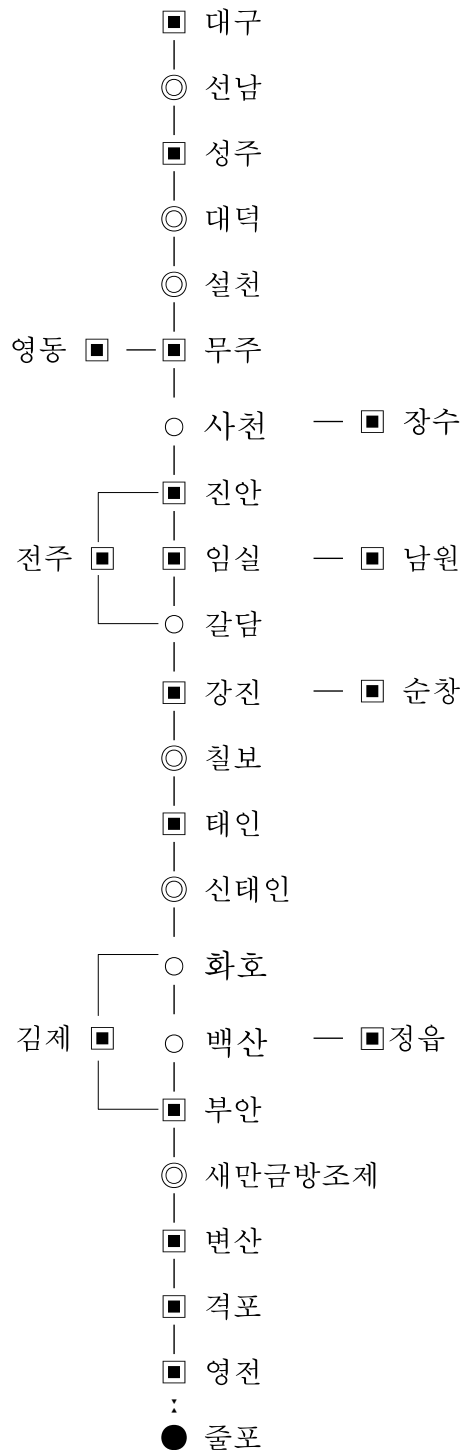
서산 → 보성	
원거리	근거리
홍성	서산
홍성	해미
청양	홍성
부여	청양
논산	은산
논산	부여
군산	금강하구둑
군산	익산
전주	김제
전주	김제
김제	만경
정읍	김제
정읍	태인
정읍	부안
담양	정읍
담양	내장산
광주	담양
광주	*
보성	화순
별교	보성
장흥	보성



보성 → 서산	
원거리	근거리
대산	대산
대산	서산
서산	해미
서산	홍성
홍성	청양
청양	은산
청양	부여
서천	금강하구둑
서천	금강하구둑
군산	금강하구둑
군산	전주
전주	만경
익산	김제
김제	태인
김제	부안
김제	정읍
정읍	내장산
정읍	담양
광주	*
광주	화순
광주	문덕

국도30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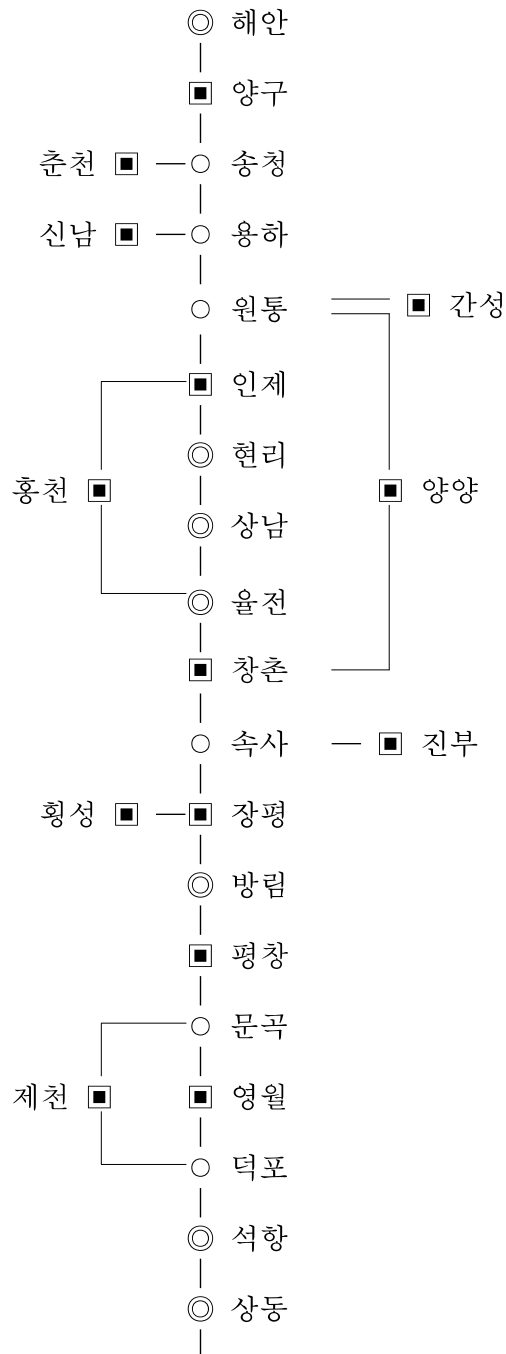
대구 → 부안	
원거리	근거리
성주	선남
무주	성주
무주	대덕
무주	설천
영동	무주
장수	진안
전주	진안
남원	임실
순창	강진
순창	강진
태인	칠보
부안	태인
부안	신태인
부안	김제
정읍	부안
변산	부안
변산	새만금방조제
격포	변산
영전	격포
줄포	영전



부안 → 대구	
원거리	근거리
대구	*
대구	선남
대구	성주
성주	대덕
성주	설천
영동	무주
영동	무주
무주	진안
진안	임실
전주	임실
임실	강진
강진	칠보
강진	태인
태인	신태인
태인	김제
정읍	태인
김제	부안
부안	새만금방조제
부안	변산
변산	격포

국도31호선

신고산 → 부산	
원거리	근거리
춘천	양구
춘천	인제
신남	인제
양양	인제
홍천	인제
창춘	현리
창춘	상남
창춘	율전
양양	창춘
장평	진부
횡성	장평
평창	방림
영월	평창
제천	영월
태백	영월
태백	석항
태백	석항
태백	상동
동해	태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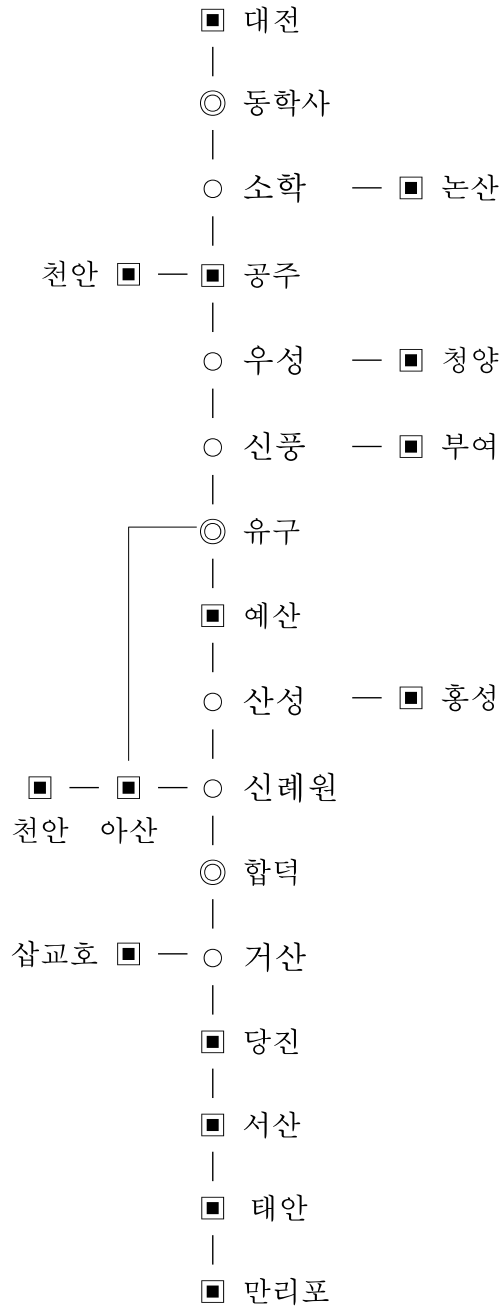


부산 → 신고산	
원거리	근거리
해안	*
해안	양구
춘천	양구
춘천	양구
양양	간성
양양	인제
인제	현리
인제	상남
인제	홍천
인제	창춘
창춘	진부
진부	장평
장평	방림
장평	평창
장평	평창
평창	영월
제천	영월
영월	석항
영월	상동

봉화	현동	■ 태백	— ■ 동해	동해	태백
영양	일월	봉화 ■ — ○ 현동		태백	현동
진보	영양	○ 일월		태백	일월
안동	진보	■ 영양		태백	영양
안동	진보	○ 월전	— ■ 영덕	영덕	영양
포항	청송	안동 ■ — ● 진보		안동	진보
포항	현동	■ 청송		안동	청송
포항	죽장	● 현동		청송	현동
포항	기계	○ 죽장		청송	죽장
구룡포	포항	○ 기계		청송	기계
감포	구룡포	■ 포항		포항	*
울산	감포	■ 구룡포		포항	구룡포
울산	*	■ 감포		구룡포	감포
서생	온산	■ 울산		울산	*
일광	서생	■ 온산		울산	온산
부산	일광	■ 서생		온산	서생
		● 일광			
		⋮			
		■ 부산			

국도32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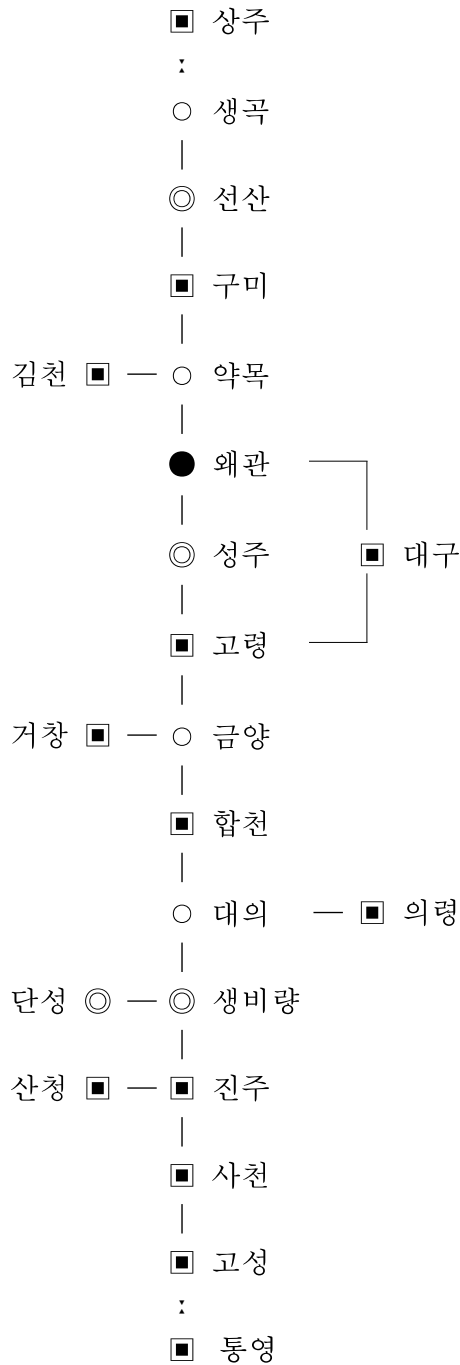
대전 → 서산	
원거리	근거리
공주	동학사
예산	공주
예산	천안
예산	청양
예산	아산
예산	아산
홍성	예산
홍성	아산
천안	아산
당진	합덕
당진	삼교호
서산	당진
태안	서산
만리포	태안
만리포	*



서산 → 대전	
원거리	근거리
대전	*
대전	동학사
대전	논산
대전	공주
대전	공주
부여	공주
공주	유구
공주	예산
홍성	예산
예산	아산
예산	합덕
예산	삼교호
삼교호	당진
당진	서산
서산	태안

국도33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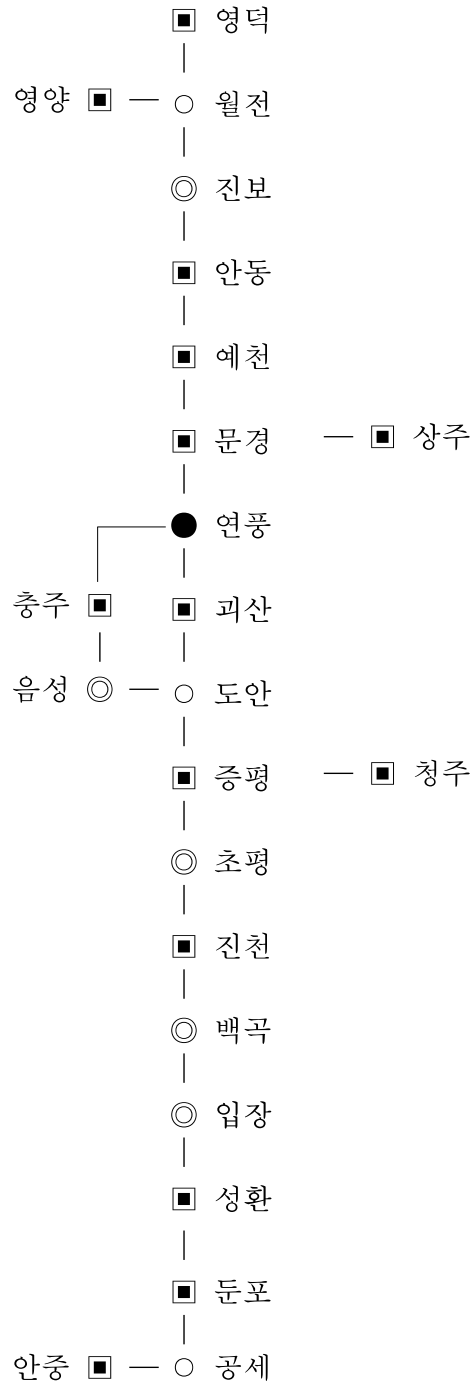
구미 → 고성	
원거리	근거리
구미	선산
대구	구미
대구	왜관
대구	왜관
고령	성주
합천	고령
거창	합천
진주	합천
진주	의령
진주	단성
사천	진주
고성	사천
통영	고성



고성 → 구미	
원거리	근거리
상주	낙동
상주	선산
상주	구미
김천	구미
구미	왜관
왜관	성주
대구	고령
거창	고령
고령	합천
합천	의령
합천	생비량
산청	진주
진주	사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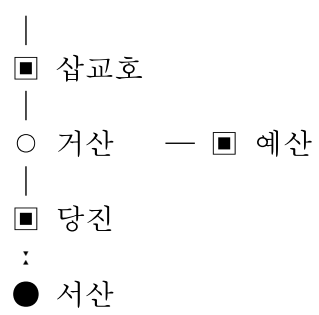
국도34호선

영덕 → 당진	
원거리	근거리
안동	진보
안동	진보
예천	안동
문경	예천
충주	문경
충주	연풍
증평	괴산
청주	증평
청주	증평
진천	초평
성환	진천
성환	백곡
성환	입장
둔포	성환
삼교호	둔포
당진	삼교호



당진 → 영덕	
원거리	근거리
영덕	*
영덕	영양
영덕	진보
영덕	안동
안동	예천
상주	문경
문경	연풍
연풍	괴산
충주	음성
청주	증평
증평	초평
증평	진천
진천	백곡
진천	입장
진천	성환
성환	둔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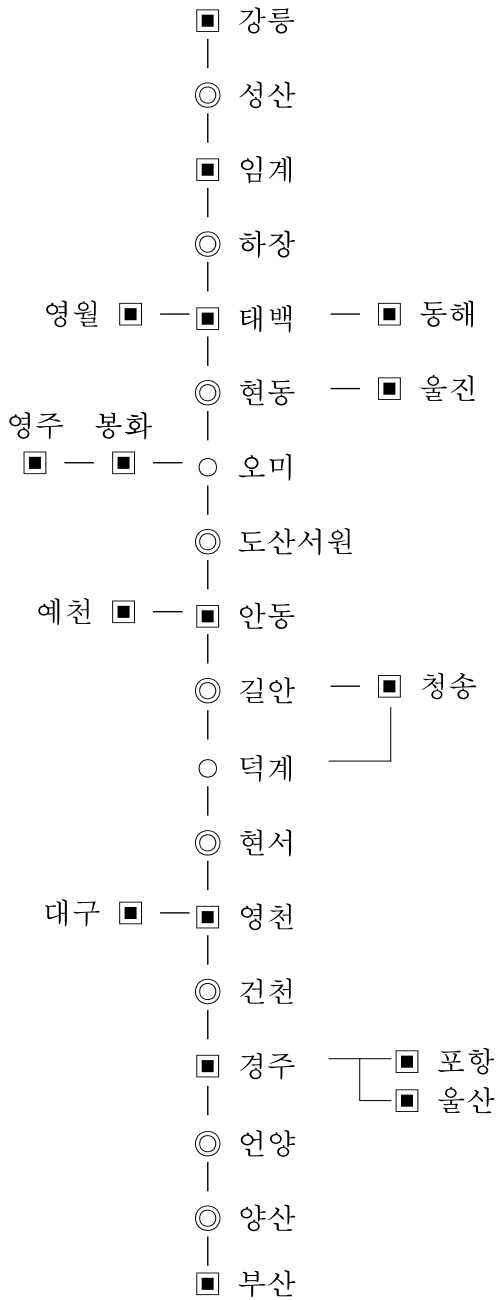
당진	삼교호
서산	당진
서산	당진



안중	둔포
안중	삼교호
예산	삼교호

국도35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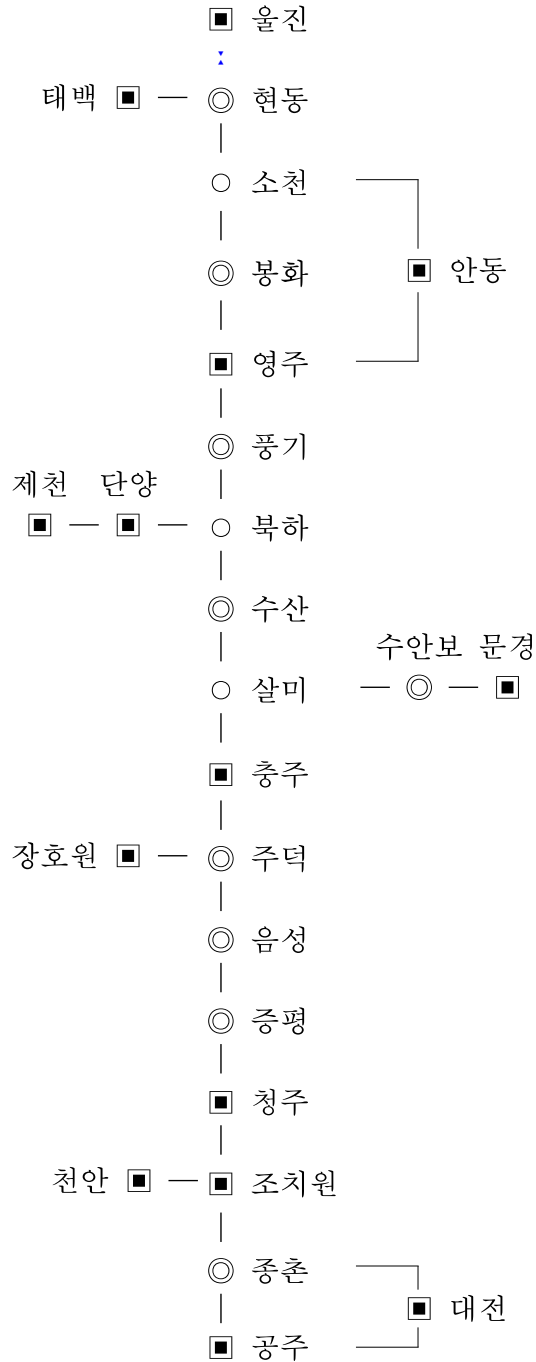
강릉 → 부산	
원거리	근거리
임계	성산
태백	임계
태백	하장
영월	태백
봉화	현동
영주	봉화
안동	도산서원
예천	안동
청송	길안
영천	현서
영천	현서
경주	영천
경주	건천
울산	경주
부산	언양
부산	양산
부산	*



부산 → 강릉	
원거리	근거리
강릉	*
강릉	성산
강릉	임계
임계	하장
동해	태백
태백	울진
태백	봉화
태백	도산서원
예천	안동
안동	길안
청송	길안
청송	현서
대구	영천
영천	건천
포항	경주
경주	언양
경주	양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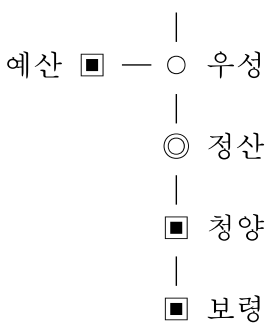
국도36호선

울진 → 보령	
원거리	근거리
영주	봉화
영주	봉화
단양	영주
단양	풍기
제천	단양
충주	수산
충주	수안보
장호원	충주
청주	장호원
청주	음성
청주	증평
청주	*
천안	조치원
대전	공주
청양	공주



보령 → 울진	
원거리	근거리
울진	태백
울진	태백
울진	봉화
울진	영주
영주	풍기
영주	단양
단양	수산
문경	수안보
문경	충주
충주	주덕
충주	음성
충주	증평
청주	*
천안	조치원
조치원	종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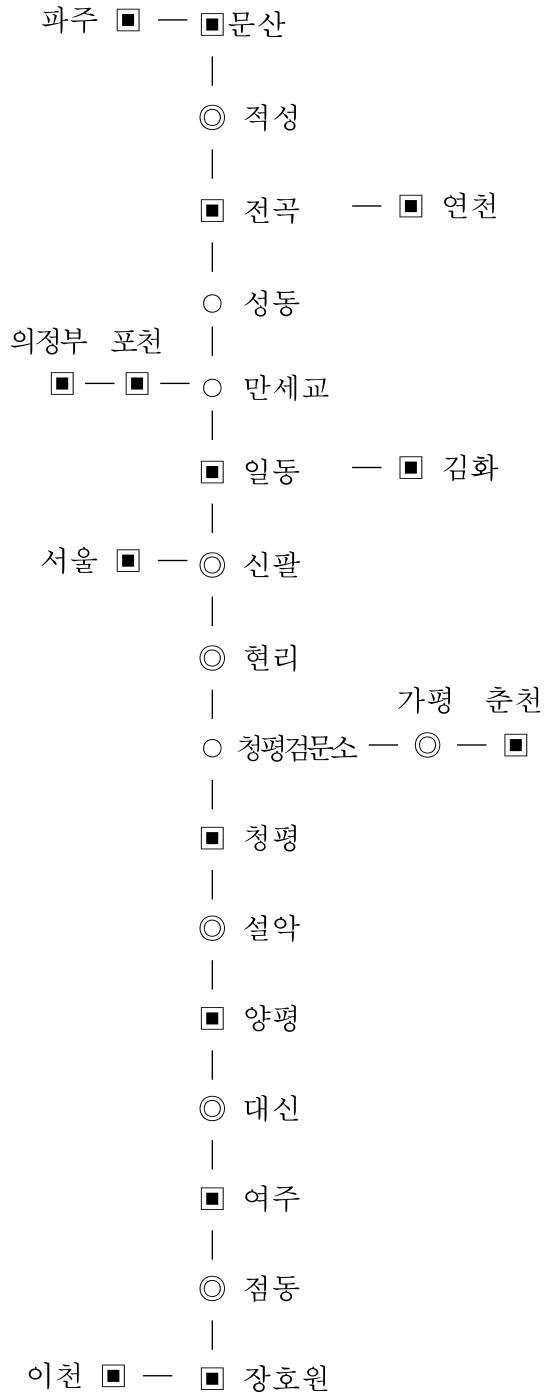
예산	청양
청양	정산
보령	청양
보령	*



대전	공주
대전	공주
공주	정산
공주	청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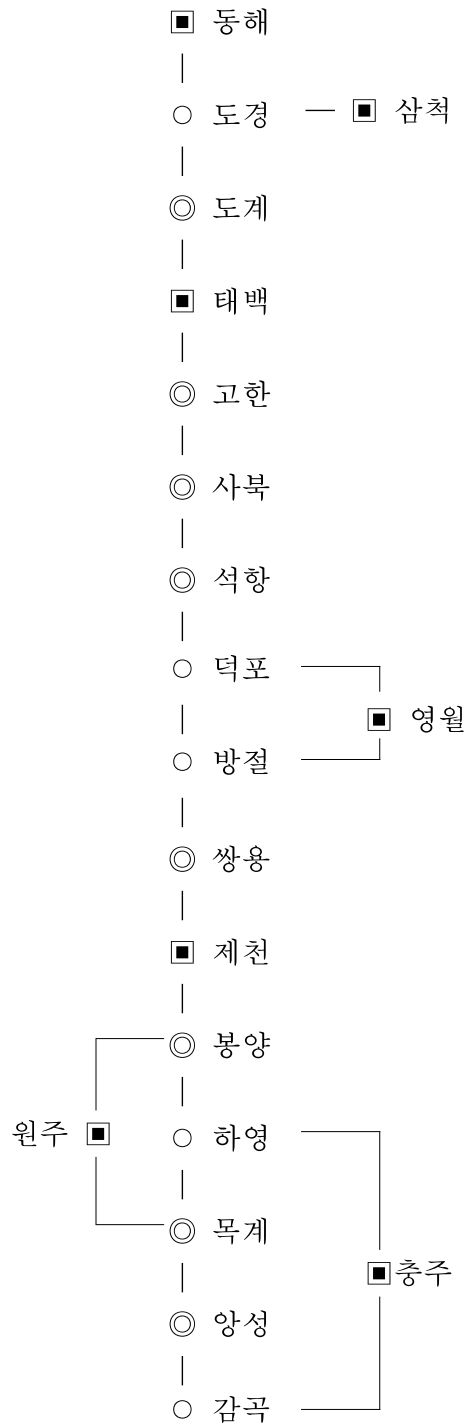
국도37호선

파주 → 거창		거창 → 파주	
원거리	근거리	원거리	근거리
전곡	적성	파주	문산
연천	전곡	문산	적성
의정부	포천	문산	전곡
의정부	포천	전곡	연천
김화	일동	의정부	포천
서울	신팔	김화	일동
청평	현리	일동	신팔
춘천	청평	일동	현리
양평	청평	춘천	가평
양평	설악	춘천	청평
여주	양평	청평	설악
여주	대신	청평	양평
장호원	여주	양평	대신
장호원	점동	양평	여주
충주	장호원	여주	점동



국도38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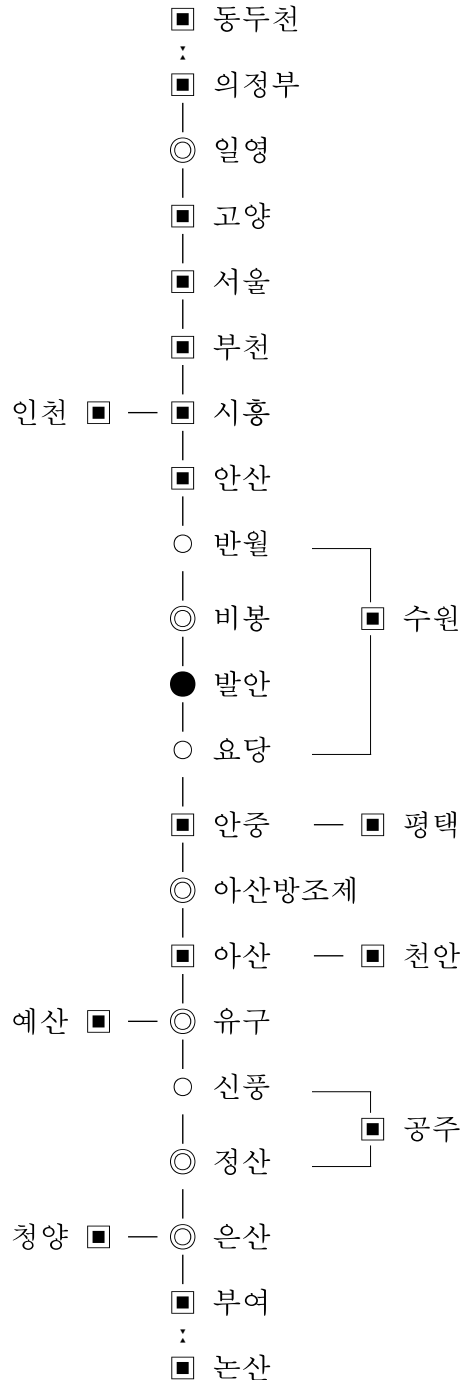
동해 → 아산	
원거리	근거리
태백	도계
태백	도계
영월	태백
영월	고한
영월	사북
영월	석항
제천	영월
제천	쌍용
제천	쌍용
원주	제천
원주	봉양
장호원	충주
장호원	원주
장호원	양성
이천	장호원



아산 → 동해	
원거리	근거리
동해	*
동해	삼척
동해	도계
동해	태백
태백	고한
태백	사북
태백	석항
태백	석항
태백	영월
영월	쌍용
영월	제천
제천	봉양
제천	충주
제천	목계
제천	양성

국도39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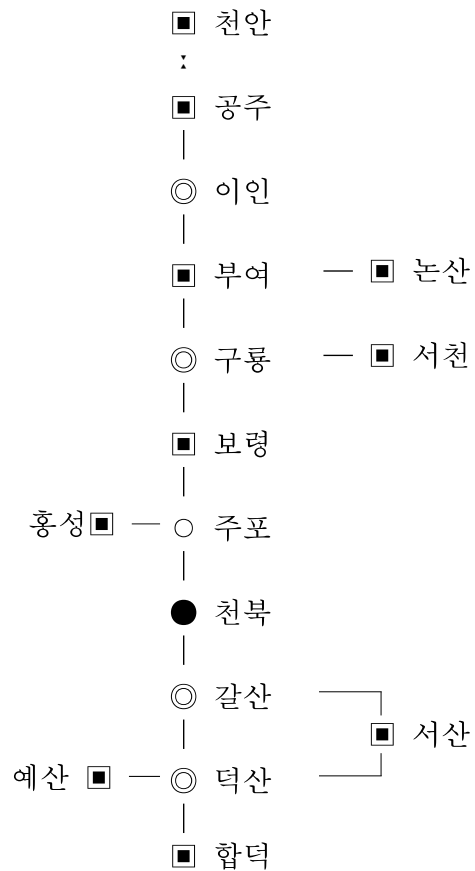
의정부 → 부여	
원거리	근거리
고양	일영
서울	고양
서울	*
시흥	부천
안산	시흥
수원	안산
수원	*
발안	비봉
안중	발안
아산	안중
아산	안중
아산	아산방조제
천안	아산
공주	유구
부여	공주
부여	정산
부여	은산
논산	부여



부여 → 의정부	
원거리	근거리
동두천	의정부
의정부	일영
의정부	고양
서울	*
서울	부천
인천	시흥
인천	안산
인천	안산
안산	비봉
안산	발안
수원	발안
평택	안중
안중	아산방조제
천안	아산
아산	예산
아산	유구
공주	정산
청양	은산

국도40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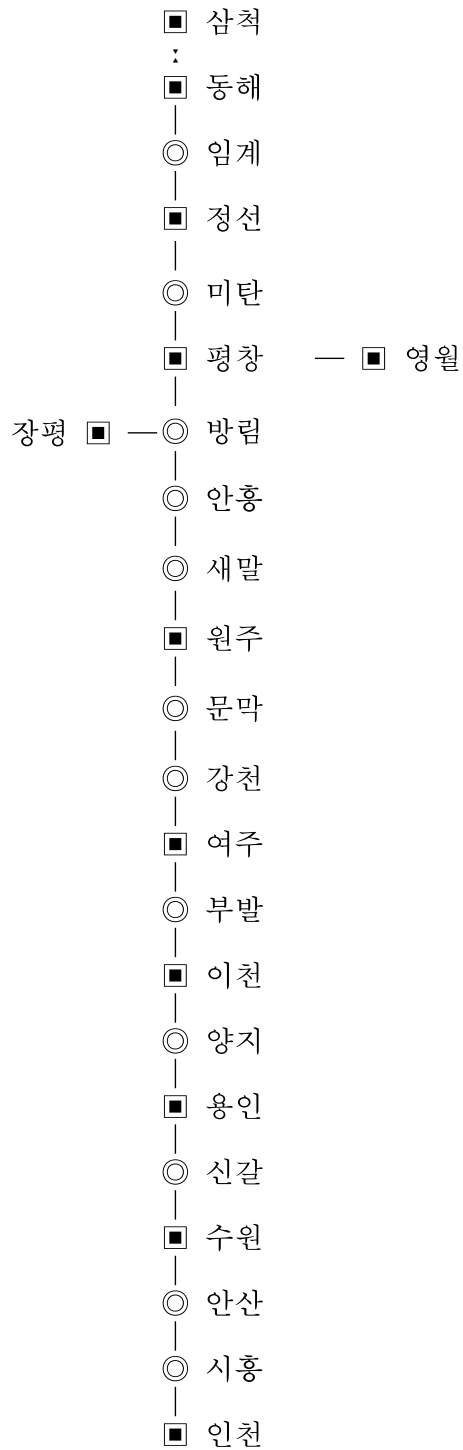
공주→합덕	
원거리	근거리
부여	이인
보령	부여
서천	보령
홍성	보령
홍성	천북
갈산	천북
서산	갈산
예산	덕산
합덕	*



합덕→공주	
원거리	근거리
천안	공주
공주	이인
논산	부여
부여	구룡
부여	보령
부여	보령
보령	천북
천북	갈산
예산	덕산

국도42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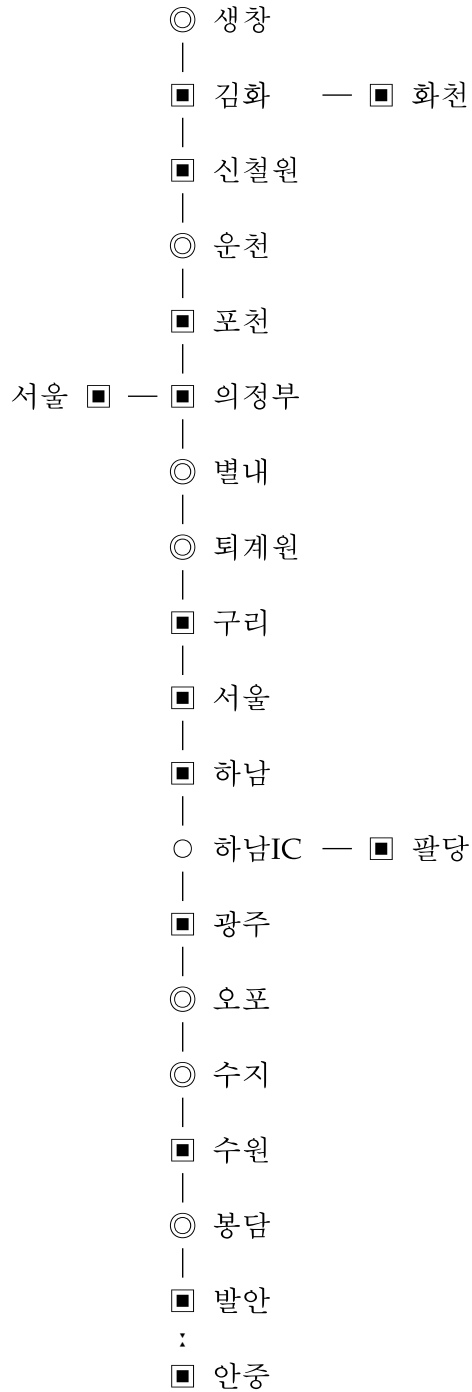
동해 → 인천	
원거리	근거리
정선	임계
평창	정선
평창	미탄
장평	평창
장평	방림
원주	안흥
원주	새말
여주	원주
여주	문막
여주	강천
이천	여주
이천	부발
용인	이천
용인	양지
수원	용인
수원	신갈
수원	*
인천	안산
인천	시흥
인천	*



인천 → 동해	
원거리	근거리
삼척	동해
동해	임계
동해	정선
정선	미탄
영월	평창
평창	방림
평창	안흥
평창	새말
평창	원주
원주	문막
원주	강천
원주	여주
여주	부발
여주	이천
이천	양지
이천	용인
용인	신갈
수원	*
수원	안산
수원	시흥

국도43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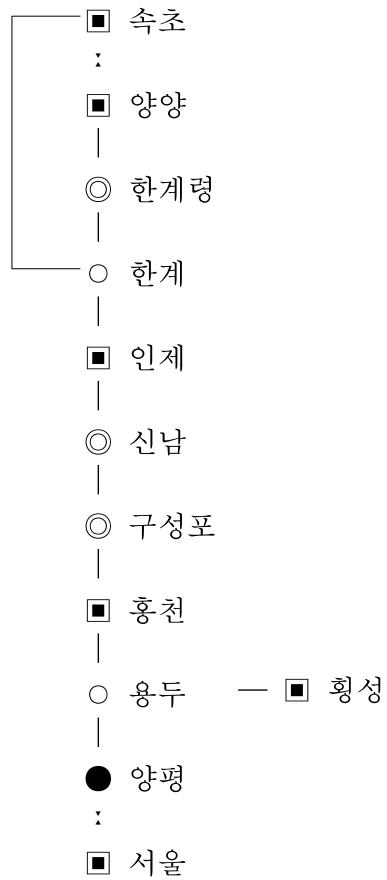
고성 → 발안	
원거리	근거리
신철원	김화
포천	신철원
포천	운천
의정부	포천
서울	의정부
구리	별내
구리	퇴계원
서울	구리
서울	*
광주	하남
광주	팔당
수원	광주
수원	오포
수원	수지
수원	*
발안	봉담
안중	발안



발안 → 고성	
원거리	근거리
생창	*
화천	김화
김화	신철원
신철원	운천
신철원	포천
포천	의정부
의정부	별내
의정부	퇴계원
의정부	구리
서울	*
서울	하남
하남	팔당
하남	광주
광주	오포
광주	수지
수원	*
수원	봉담

국도44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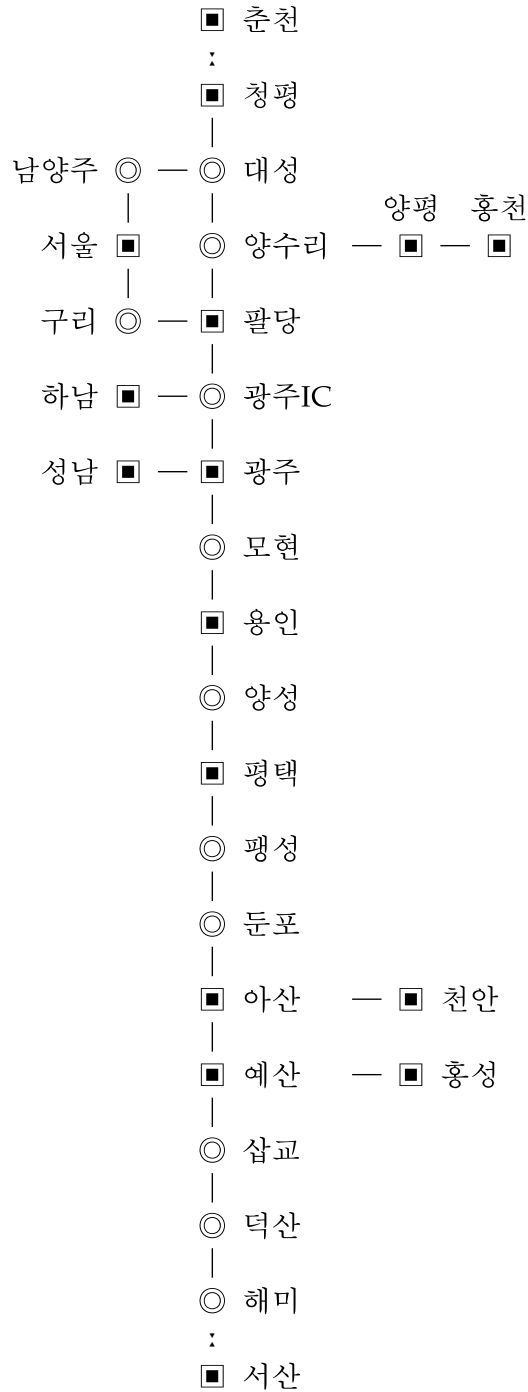
양양 → 양평	
원거리	근거리
인제	한계령
홍천	인제
홍천	인제
홍천	신남
홍천	구성포
서울	홍천
서울	양평
서울	양평



양평 → 양양	
원거리	근거리
속초	양양
양양	한계령
양양	속초
양양	인제
인제	신남
인제	구성포
인제	홍천
홍천	횡성

국도45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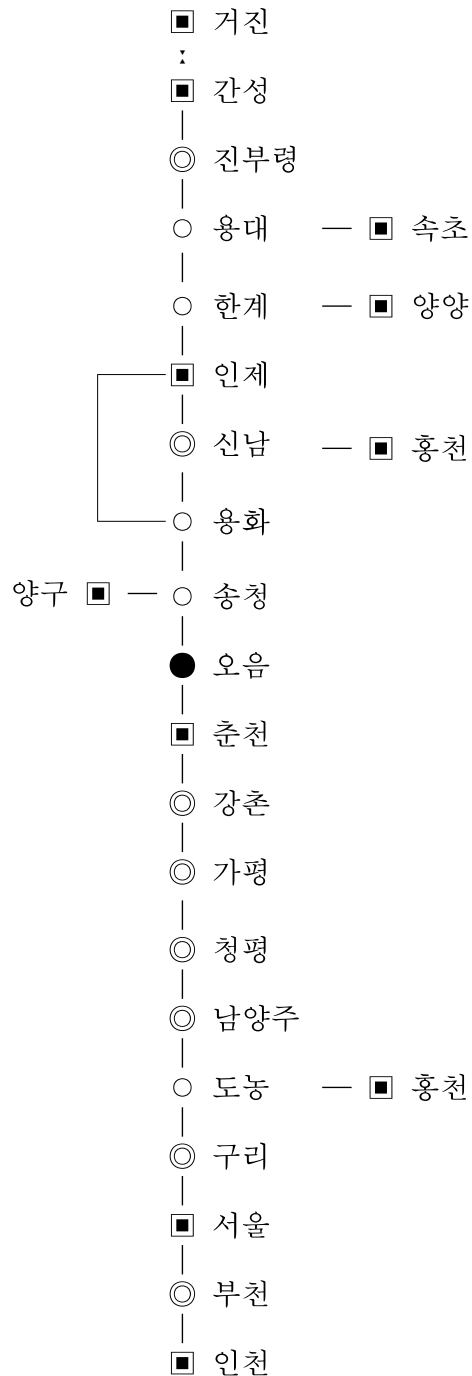
가평 → 서산	
원거리	근거리
서울	남양주
양평	양수리
서울	구리
용인	광주
용인	광주
용인	모현
평택	용인
평택	양성
아산	평택
아산	팽성
아산	둔포
예산	아산
홍성	예산
서산	삼교
서산	덕산
서산	해미



서산 → 가평	
원거리	근거리
춘천	청평
청평	대성
홍천	양평
양평	팔당
하남	팔당
성남	광주
광주	모현
광주	용인
용인	양성
용인	평택
평택	팽성
평택	둔포
천안	아산
아산	예산
예산	삼교
예산	덕산

국도46호선

고성 → 인천	
원거리	근거리
인제	진부령
홍천	인제
홍천	인제
홍천	인제
홍천	신남
오음	양구
춘천	양구
춘천	오음
춘천	*
서울	강촌
서울	가평
서울	청평
서울	남양주
서울	구리
서울	구리
서울	*
인천	부천
인천	*



인천 → 고성	
원거리	근거리
거진	간성
간성	진부령
간성	속초
속초	양양
양양	인제
홍천	신남
인제	신남
인제	양구
양구	오음
양구	춘천
춘천	강촌
춘천	가평
춘천	청평
춘천	남양주
춘천	홍천
춘천	구리
서울	*
서울	부천

국도47호선

철원 → 화성	
원거리	근거리
일동	와수리
일동	이동
서울	일동
서울	신팔
서울	진접
서울	퇴계원
서울	*
군포	과천
군포	안양
안산	군포
안산	반월

■ 김화
 |
 ◎ 와수리
 |
 ◎ 이동
 |
 ■ 일동
 |
 ◎ 신팔
 |
 ◎ 진접
 |
 ◎ 퇴계원
 |
 ■ 서울
 |
 ◎ 과천
 |
 ■ 안양
 |
 ■ 군포
 |
 ◎ 반월
 :
 ■ 안산

화성 → 철원	
원거리	근거리
김화	*
김화	와수리
김화	이동
김화	일동
일동	신팔
일동	진접
일동	퇴계원
서울	*
서울	과천
서울	안양
안양	군포

국도48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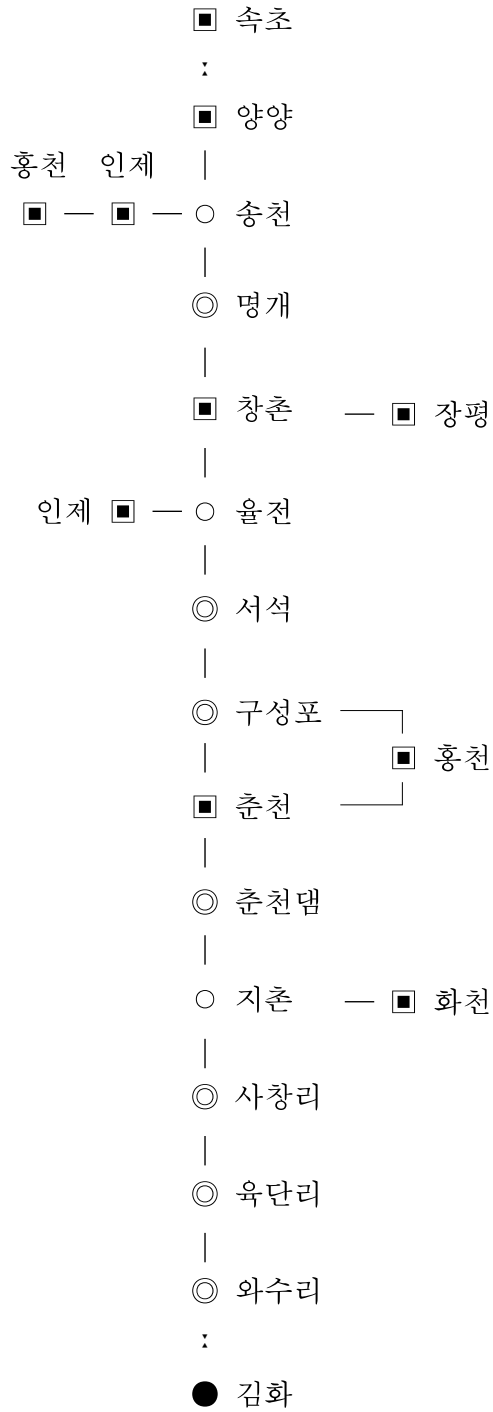
서울 → 강화	
원거리	근거리
강화	김포
강화	통진
강화	월곶
인화	강화
인화	*

■ 서울
 |
 ◎ 김포
 |
 ◎ 통진
 |
 ◎ 월곶
 |
 ■ 강화
 |
 ◎ 인화

강화 → 서울	
원거리	근거리
서울	*
서울	김포
서울	통진
서울	월곶
서울	강화

국도56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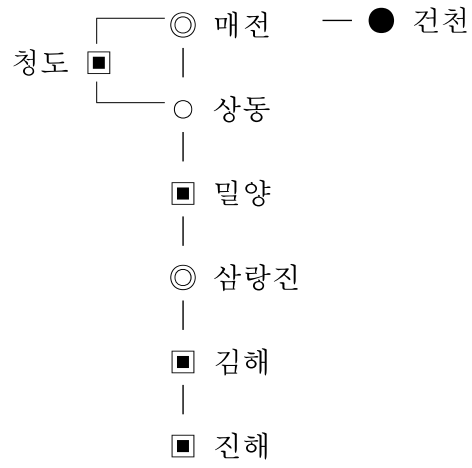
양양 → 철원	
원거리	근거리
홍천	인제
창춘	명개
장평	창춘
홍천	인제
홍천	서석
홍천	구성포
춘천	*
화천	춘천댐
김화	화천
김화	사창리
김화	육단리
김화	와수리



철원 → 양양	
원거리	근거리
속초	양양
속초	양양
양양	명개
양양	창춘
양양	창춘
창춘	서석
창춘	구성포
홍천	춘천
춘천	춘천댐
춘천	화천
춘천	사창리
춘천	육단리

국도58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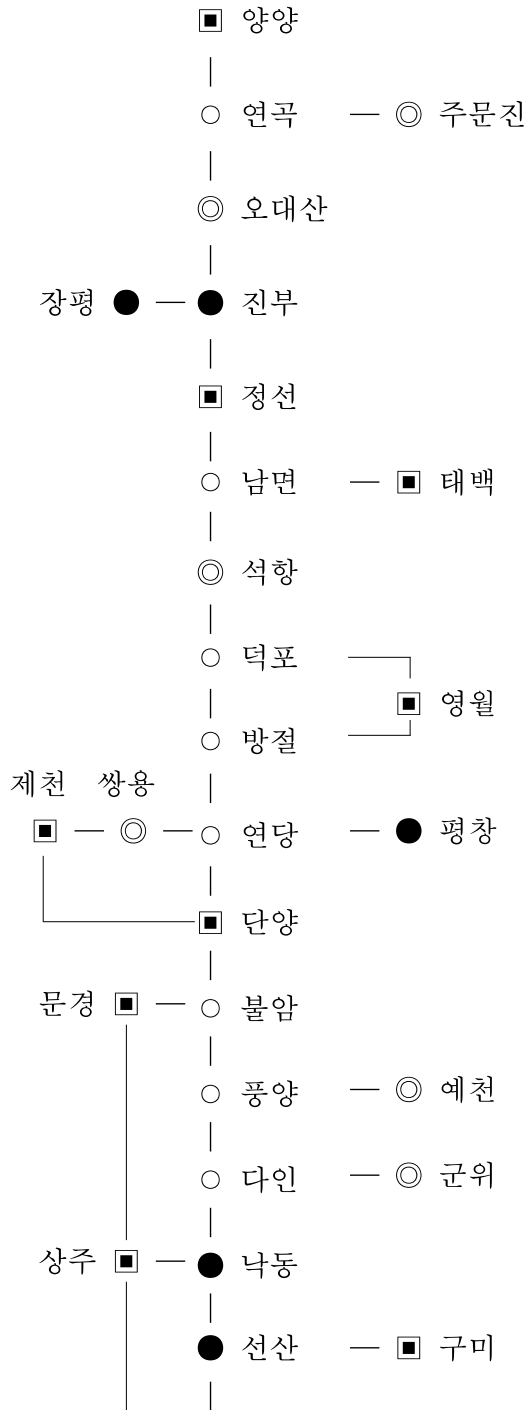
청도→진해	
원거리	근거리
김해	밀양
김해	밀양
김해	삼랑진
진해	김해
진해	*



진해→청도	
원거리	근거리
건천	매전
매전	청도
청도	밀양
밀양	삼랑진
밀양	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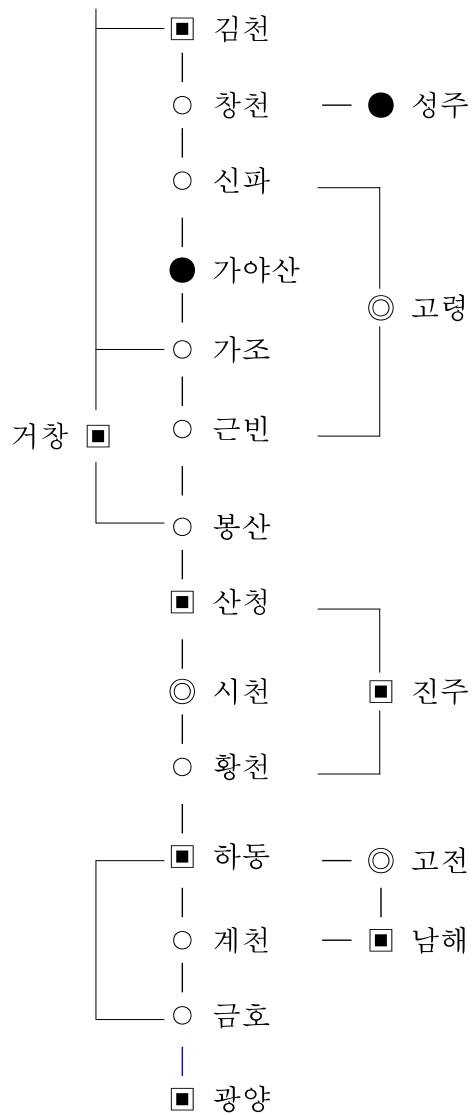
국도59호선

양양→광양	
원거리	근거리
진부	오대산
진부	오대산
장평	진부
태백	정선
영월	태백
영월	석항
제천	영월
제천	쌍용
제천	쌍용
문경	단양
선산	문경
선산	예천
선산	군위
선산	상주
구미	선산
가야산	김천



광양→양양	
원거리	근거리
속초	양양
양양	주문진
양양	오대산
양양	진부
진부	정선
정선	태백
태백	석항
태백	석항
태백	영월
평창	영월
제천	단양
단양	문경
문경	예천
문경	예천
상주	낙동
낙동	선산

가야산	성주
가야산	고령
거창	가야산
산청	거창
산청	*
산청	*
진주	산청
하동	시천
광양	하동
광양	하동
남해	고전
순천	광양
순천	광양



선산	김천
김천	성주
김천	성주
성주	가야산
성주	가야산
가야산	고령
고령	거창
거창	산청
산청	시천
산청	진주
산청	하동
남해	고전
남해	하동

국도67호선

군위 → 왜관	
원거리	근거리
구미	산동
왜관	구미
대구	왜관

■ 군위
 |
 ◎ 산동
 |
 ■ 구미
 |
 ■ 왜관
 :
 ■ 대구

왜관 → 군위	
원거리	근거리
군위	*
군위	산동
군위	구미

국도75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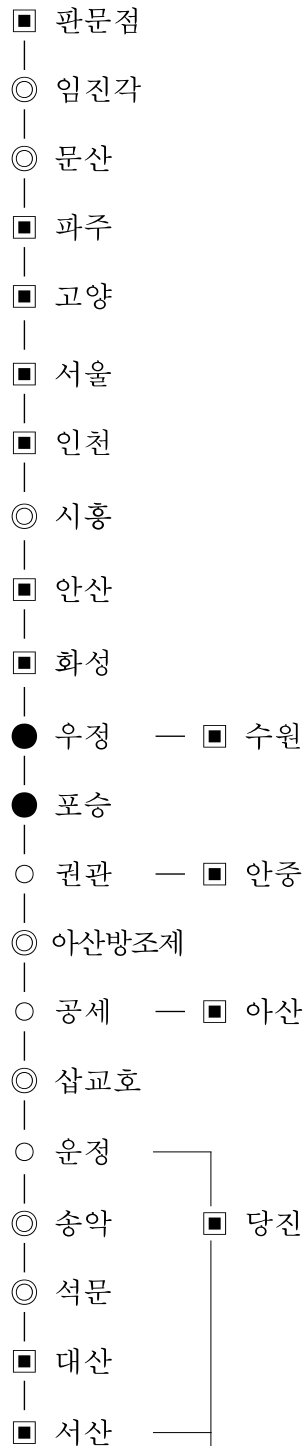
화천 → 가평	
원거리	근거리
양평	가평
양평	설악

■ 김화
 :
 ◎ 사창
 |
 ■ 가평 — ■ 춘천
 |
 ◎ 설악
 :
 ■ 양평

가평 → 화천	
원거리	근거리
김화	사창
춘천	가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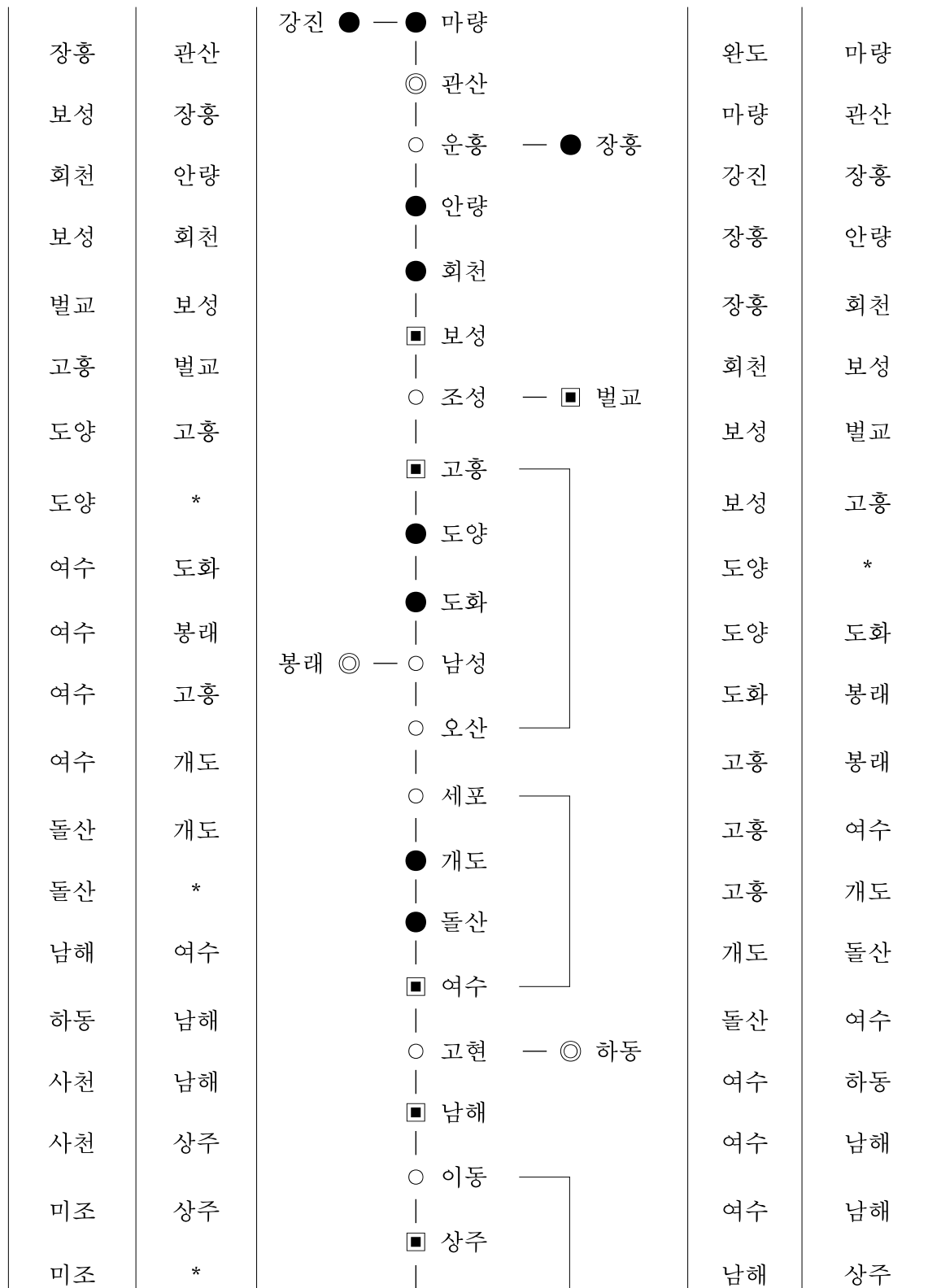
국도77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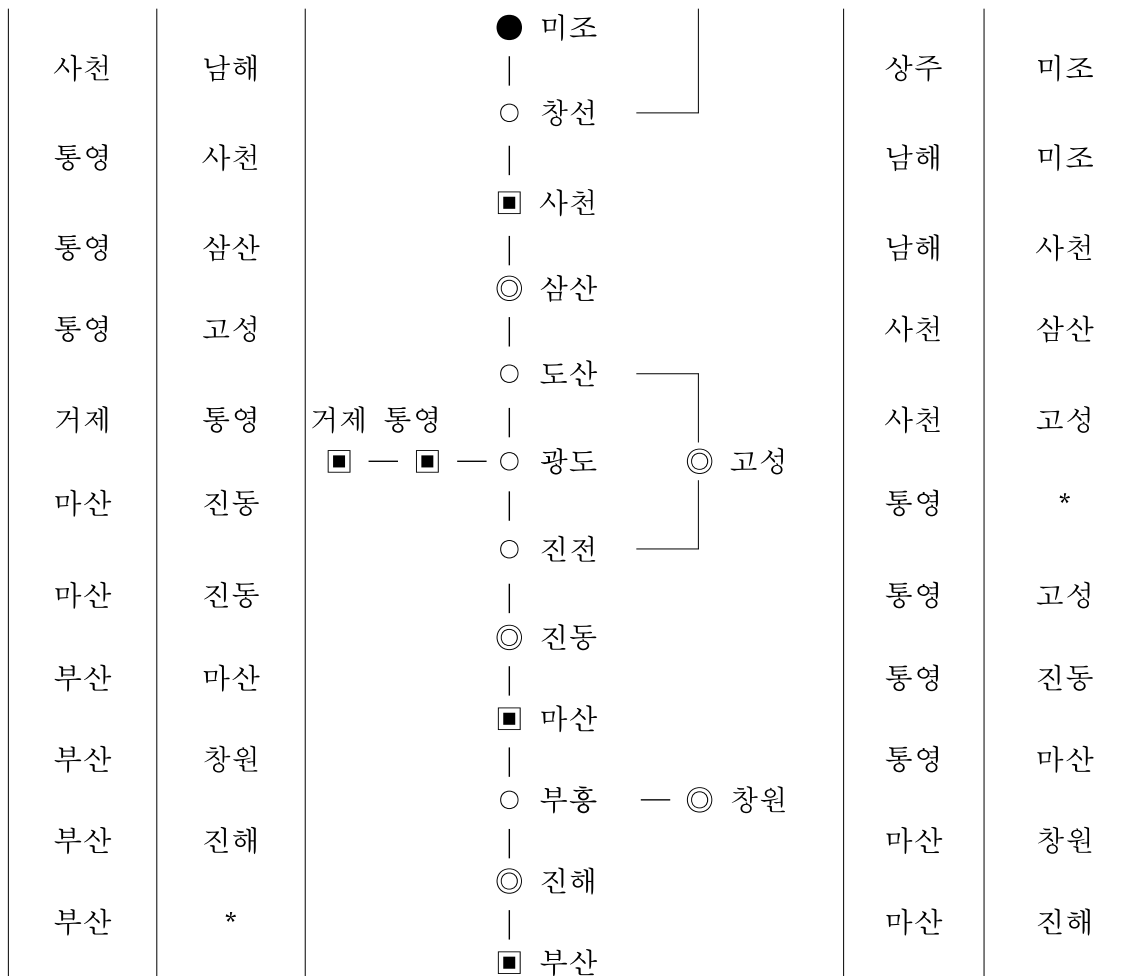
파주 → 부산	
원거리	근거리
서울	임진각
서울	문산
서울	파주
서울	고양
서울	*
인천	*
안산	시흥
화성	안산
우정	화성
포승	우정
아산	포승
아산	아산방조제
아산	아산방조제
당진	아산
당진	삼교호
당진	송악
대산	송악
대산	석문
서산	대산
태안	서산



부산 → 파주	
원거리	근거리
판문점	*
판문점	임진각
판문점	문산
판문점	파주
파주	고양
서울	*
서울	인천
인천	시흥
인천	안산
인천	화성
수원	우정
우정	포승
안중	포승
안중	아산방조제
아산	아산방조제
아산	삼교호
아산	삼교호
아산	송악
아산	석문
대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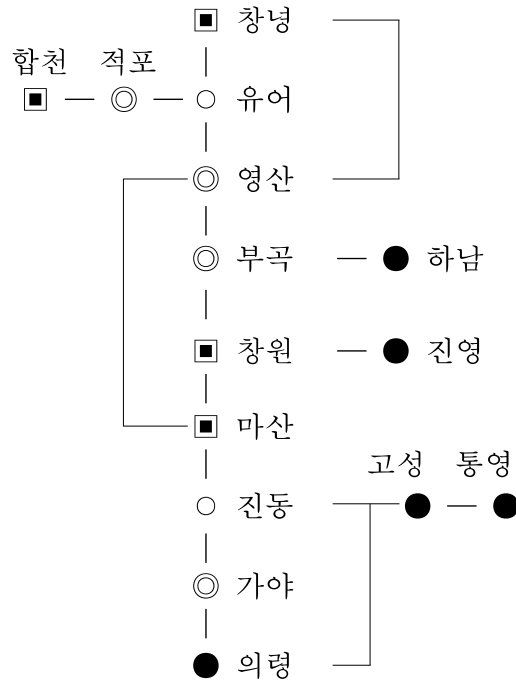
안면	태안	● 태안	■ 홍성	당진	서산
보령	안면	● 안면		서산	태안
서천	보령			태안	안면
군산	서천	■ 보령	— ● 서천	홍성	보령
변산	군산	○ 당정		보령	서천
변산	새만금방조제	■ 군산		보령	군산
영광	변산	◎ 새만금방조제		군산	새만금방조제
영광	홍농	● 변산		군산	변산
해제	영광	◎ 홍농		군산	홍농
목포	해제	○ 법성	— ● 영광	군산	영광
목포	무안	● 해제		영광	해제
목포	압해	○ 현경	— ◎ 무안	해제	무안
완도	진도	◎ 압해	— ■ 목포	목포	압해
완도	해남	진도 ● — ○ 동외		목포	진도
완도	땅끝	○ 남이	● 해남	목포	진도
땅끝	*	○ 방축		목포	해남
완도	남창	● 땅끝		땅끝	*
완도	당인리	◎ 남창		해남	남창
당인리	*	○ 원동		해남	남창
보성	완도	● 당인리		당인리	*
보성	강진	■ 완도		완도	*





국도79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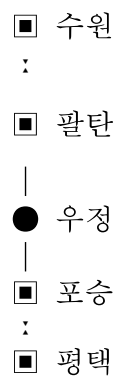
창녕 → 의령	
원거리	근거리
합천	적포
마산	부곡
하남	부곡
마산	창원
고성	마산
통영	고성
의령	가야
의령	*



의령 → 창녕	
원거리	근거리
창녕	*
합천	적포
창녕	영산
창녕	부곡
진영	창원
창원	마산
통영	고성
고성	가야

국도82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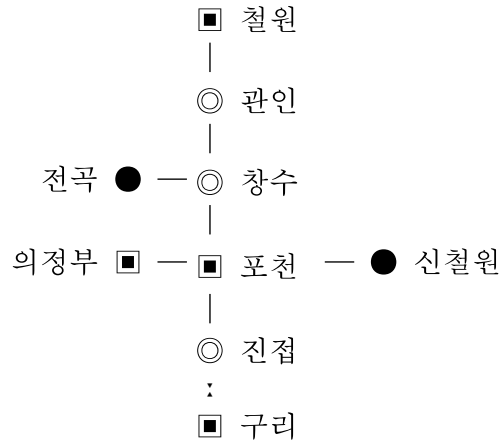
화성 → 포승	
원거리	근거리
포승	우정
평택	포승



포승 → 화성	
원거리	근거리
수원	팔탄
팔탄	우정

국도87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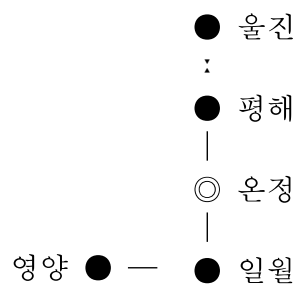
철원 → 포천	
원거리	근거리
전곡	관인
전곡	창수
의정부	포천
구리	진접



포천 → 철원	
원거리	근거리
철원	*
철원	관인
전곡	창수
신철원	포천

국도88호선

평해 → 일월	
원거리	근거리
일월	온정
영양	일월



일월 → 평해	
원거리	근거리
울진	평해
평해	온정

【별표2】

고 속 국 도 안 내 지 명

고속국도 1호선

구서 → 양재		양재 → 구서	
원거리	근거리	원거리	근거리
대구	노포	*	구서
대구	양산 분기점	부산	노포
대구	양산	부산	양산 분기점
대구	통도사	부산	양산
대구	서울산	부산	통도사
대구	언양 분기점	부산	서울산
대구	경주	부산	언양 분기점
대구	건천	부산	경주
대구	영천	부산	건천
대구	경산	부산	영천
대전	동대구 분기점	부산	경산
대전	도동 분기점	부산	동대구 분기점
대전	북대구	부산	도동 분기점
대전	금호 분기점	부산	북대구
대전	왜관	대구	금호 분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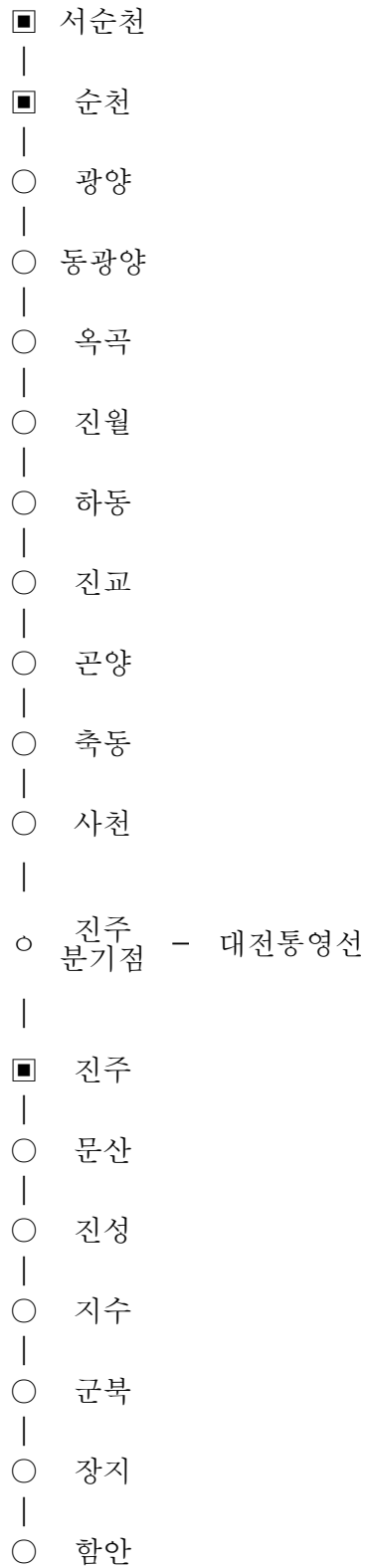
○ 구서
|
○ 노포
|
○ 양산 분기점 - 중앙선지선
|
○ 양산
|
○ 통도사
|
○ 서울산
|
울산선 — ○ 언양분기점
|
○ 경주
|
○ 건천
|
○ 영천
|
○ 경산
|
□ 동대구 분기점 - 부산대구선
|
익산포항선 — ○ 도동분기점
|
□ 북대구
|
중앙선 — ○ 금호 분기점 - 구마선
|
○ 왜관

대전	남구미		대구	왜관
		○ 남구미		
대전	구미		대구	남구미
		○ 구미		
대전	김천 분기점		대구	구미
		중부내륙선 — ○ 김천분기점		
대전	김천		대구	김천 분기점
		○ 김천		
대전	추풍령		대구	김천
		○ 추풍령		
대전	황간		대구	추풍령
		○ 황간		
대전	영동		대구	황간
		○ 영동		
대전	금강		대구	영동
		○ 금강		
대전	옥천		대구	금강
		○ 옥천		
대전	비룡 분기점		대구	옥천
		○ 비룡 분기점 — 대전통영선		
서울	대전		대구	비룡 분기점
		■ 대전		
서울	회덕 분기점		대구	대전
		○ 회덕 분기점 — 호남선지선		
서울	신탄진		대전	회덕 분기점
		○ 신탄진		
서울	청원		대전	신탄진
		○ 청원		
서울	남이 분기점		대전	청원
		중부선 — ○ 남이분기점		
서울	청주		대전	남이 분기점
		○ 청주		
서울	목천		대전	청주
		○ 목천		

서울	천안 분기점				대전	목천
		○	천안 분기점	- 논산천안선		
서울	천안				대전	천안 분기점
서울	안성	○	천안		대전	천안
서울	안성 분기점	○	안성		대전	안성
		평택충주선 - ○	안성 분기점	- 평택충주선		
서울	오산				대전	안성 분기점
		○	오산			
서울	기흥				대전	오산
		○	기흥			
서울	수원				대전	기흥
		○	수원			
서울	신갈 분기점				대전	수원
		영동선 - ○	신갈 분기점	- 영동선		
서울	판교				대전	신갈 분기점
		○	판교			
서울	판교 분기점				대전	판교
		서울외곽순환 선 - ○	판교 분기점	- 서울 외곽순환선		
한남대 교	양재				대전	판교 분기점
		○	양재			

고속국도10호선

서순천 → 대저분기점	
원거리	근거리
진주	순천
진주	광양
진주	동광양
진주	옥곡
진주	진월
진주	하동
진주	진교
진주	곤양
진주	축동
진주	사천
진주	진주 분기점
마산	진주
마산	문산
마산	진성
마산	지수
마산	군북
마산	장지
마산	함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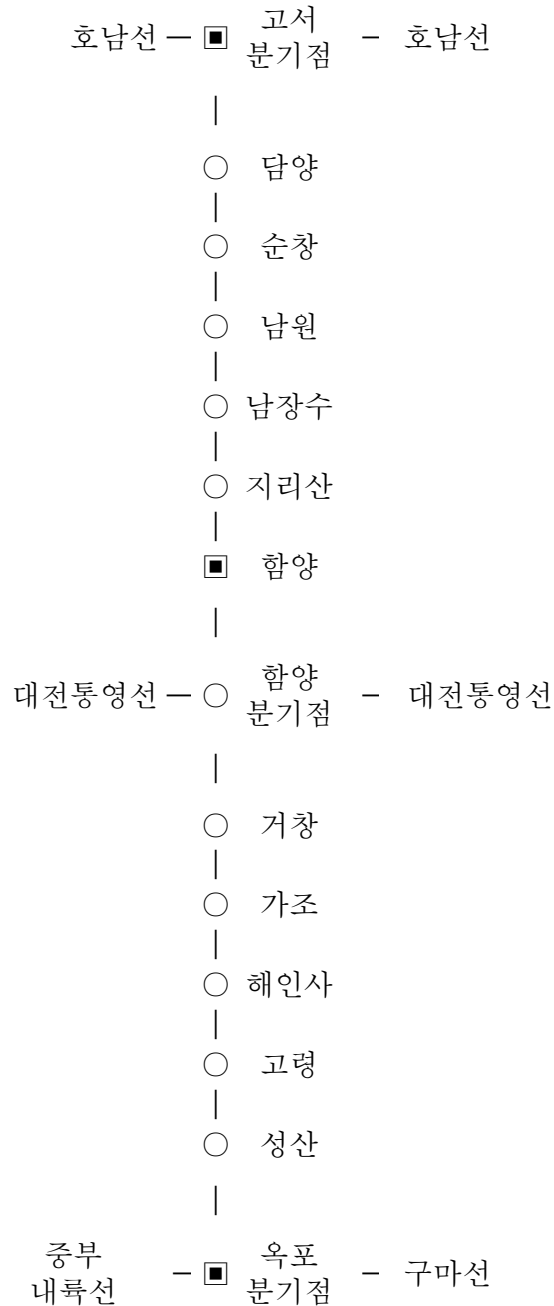


대저분기점 → 서순천	
원거리	근거리
*	서순천
*	순천
순천	광양
순천	동광양
순천	옥곡
순천	진월
순천	하동
순천	진교
순천	곤양
순천	축동
순천	사천
순천	진주 분기점
순천	진주
진주	문산
진주	진성
진주	지수
진주	군북
진주	장지

마산	산인분기점		○ 산인분기점 - 마산외곽선	┐	진주	함안
마산	내서분기점		○ 내서분기점 - 중부내륙선		진주	산인분기점
부산	서마산				진주	내서분기점
부산	동마산	▣ 서마산			진주	서마산
부산	창원분기점	▣ 동마산			진주	동마산
부산	동창원		○ 창원분기점 - 마산외곽선	┌	마산	창원분기점
부산	진례	○ 동창원			마산	동창원
부산	냉정분기점		○ 진례		마산	진례
부산	서김해	남해제2지선 - ○ 냉정분기점			마산	냉정분기점
부산	동김해		○ 서김해		마산	서김해
*	대저분기점		○ 동김해		마산	동김해
			○ 대저분기점 - 중앙선			

고속국도12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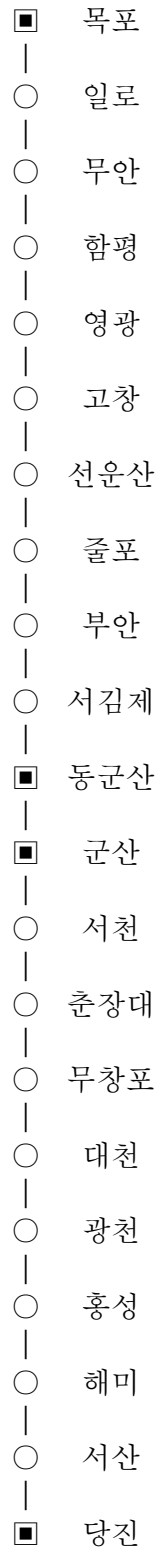
고서분기점 → 옥포분기점	
원거리	근거리
함양	담양
함양	순창
함양	남원
함양	남장수
함양	지리산
함양	함양
대구	함양 분기점
대구	거창
대구	가조
대구	해인사
대구	고령
대구	성산
*	옥포 분기점



옥포분기점 → 고서분기점	
원거리	근거리
*	고서 분기점
광주	담양
광주	순창
광주	남원
광주	남장수
광주	지리산
함양	함양
함양	함양 분기점
함양	거창
함양	가조
함양	해인사
함양	고령
함양	성산

고속국도 15호선

목포 → 일직분기점	
원거리	근거리
군산	일로
군산	무안
군산	함평
군산	영광
군산	고창
군산	선운산
군산	죽포
군산	부안
군산	서김제
당진	동군산
당진	군산
당진	서천
당진	춘장대
당진	무창포
당진	대천
당진	광천
당진	홍성
당진	해미
당진	서산
서울	당진



일직분기점 → 목포	
원거리	근거리
*	목포
목포	일로
목포	무안
목포	함평
목포	영광
목포	고창
목포	선운산
목포	죽포
목포	부안
목포	서김제
목포	동군산
목포	군산
군산	서천
군산	춘장대
군산	무창포
군산	대천
군산	광천
군산	홍성
군산	해미
군산	서산

서울	송악									군산	당진
서울	서평택	○	송악							당진	송악
서울	서평택 분기점		○	서평택 분기점						당진	서평택
		평택 -	충주선	○							
서울	발안									당진	서평택 분기점
서울	비봉	○	발안							당진	발안
서울	매송		○	비봉						당진	비봉
		○	매송								
성산대교	안산 분기점									당진	매송
		영동선 -	■	안산 분기점	-	영동선					
성산대교	조남 분기점									당진	안산 분기점
		서울 -	○	조남 분기점	-	서울					
		외곽순환선				외곽순환선					
성산대교	목감									당진	조남 분기점
성산대교	광명역	○	목감							당진	목감
			○	광명역							
성산대교	일직 분기점									당진	광명역
		제2경인선 -	○	일직 분기점	-	제2경인선					

고속국도 16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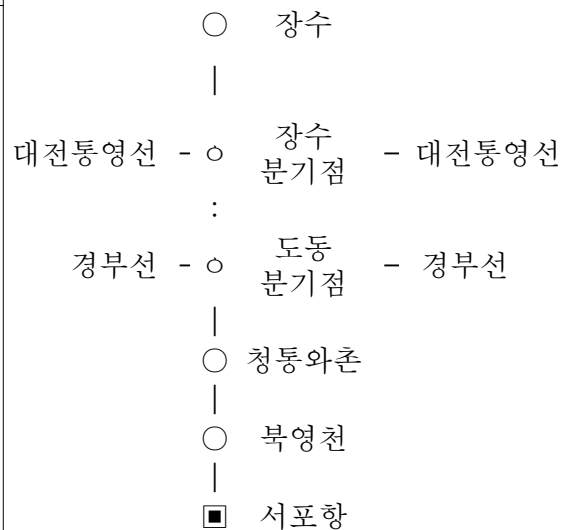
울산 → 언양	
원거리	근거리
-	-

경부선 - ■ 언양 - 경부선

언양 → 울산	
원거리	근거리
-	-

고속국도 20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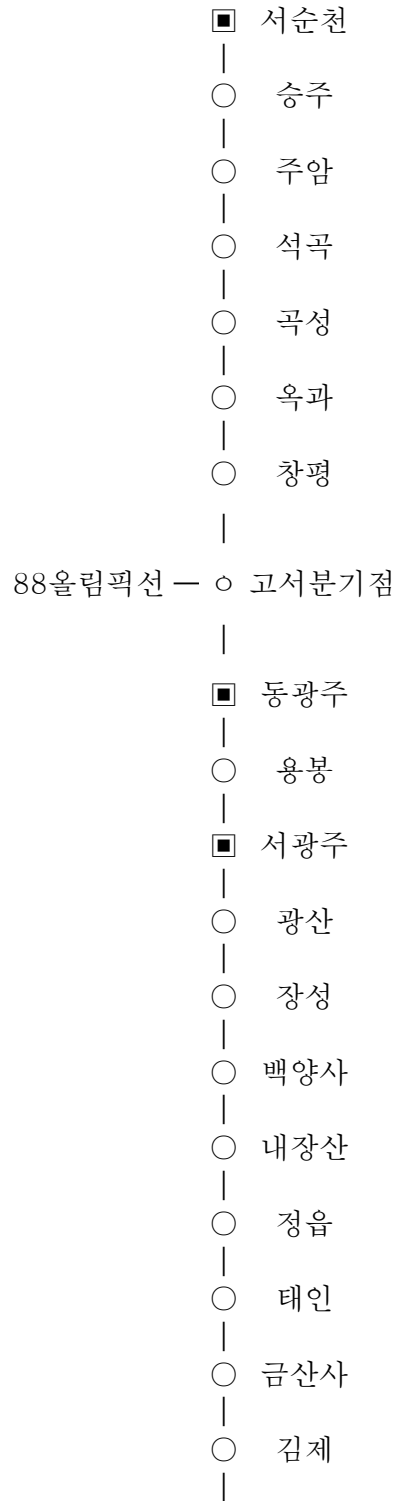
장수 → 서포항	
원거리	근거리
*	장수 분기점
미개통	미개통
포항	청통와촌
포항	북영천
*	서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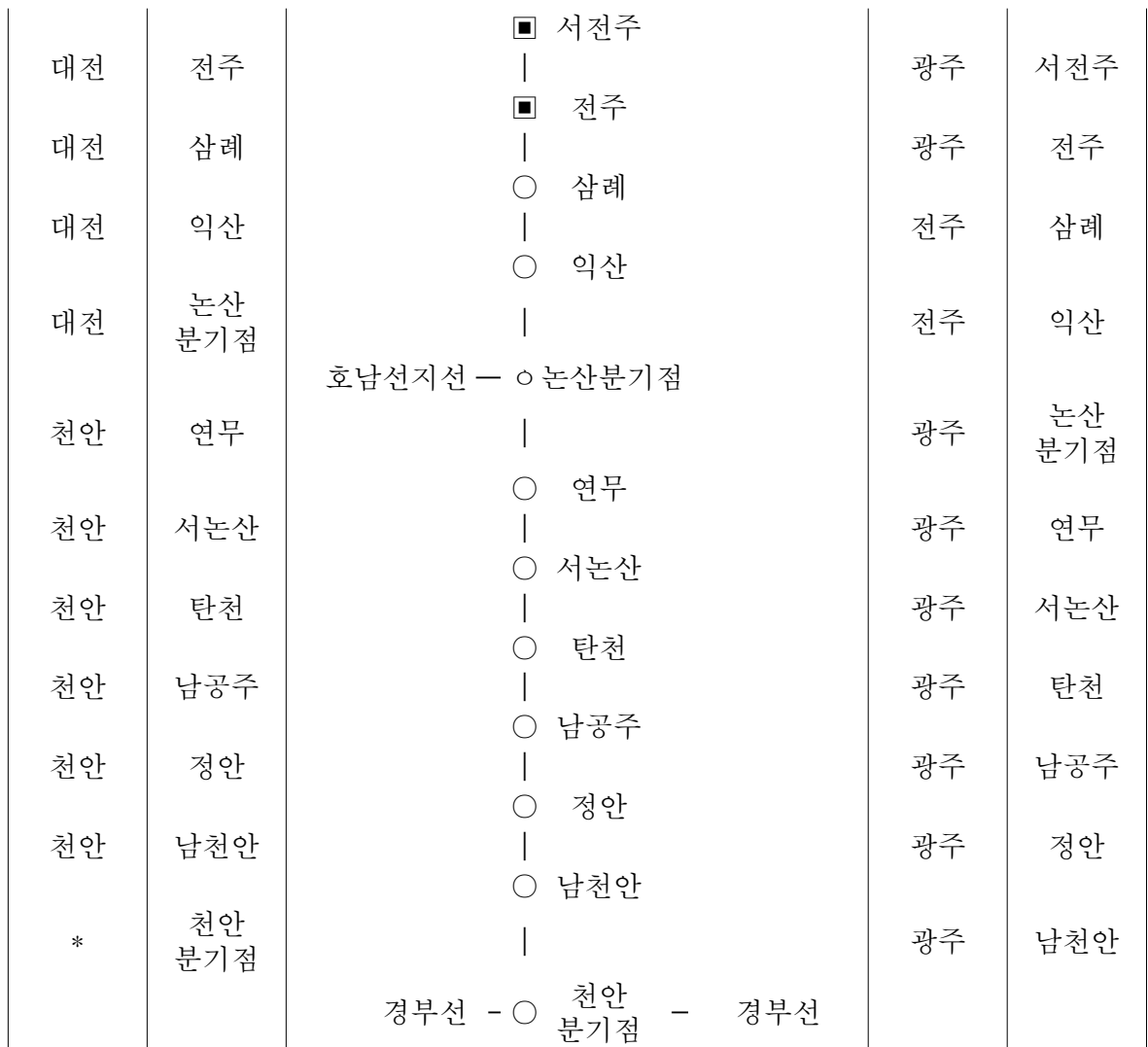
서포항 → 장수	
원거리	근거리
*	장수
미개통	미개통
*	도동분기점
대구	청통와촌
대구	북영천

고속국도 25호선

서순천 → 천안분기점	
원거리	근거리
광주	승주
광주	주암
광주	석곡
광주	곡성
광주	옥과
광주	창평
광주	고서 분기점
전주	동광주
전주	용봉
전주	서광주
전주	광산
전주	장성
전주	백양사
전주	내장산
전주	정읍
전주	태인
전주	금산사
전주	김제
대전	서전주



천안분기점 → 서순천	
원거리	근거리
*	서순천
순천	승주
순천	주암
순천	석곡
순천	곡성
순천	옥과
순천	창평
순천	고서 분기점
순천	동광주
순천	용봉
순천	서광주
광주	광산
광주	장성
광주	백양사
광주	내장산
광주	정읍
광주	태인
광주	금산사
광주	김제



고속국도 35호선

진주분기점 → 하남분기점		하남분기점 → 진주분기점	
원거리	근거리	원거리	근거리
함양	서진주	*	진주 분기점
함양	단성	*	서진주
함양	산청	진주	단성
함양	생초	진주	산청
무주	함양 분기점	진주	생초
무주	지곡	진주	함양 분기점
무주	서상	함양	지곡
무주	장수 분기점	함양	서상
무주	덕유산	함양	장수 분기점
대전	무주	함양	덕유산
대전	금산	함양	무주
대전	추부	무주	금산
대전	남대전	무주	추부
대전	산내 분기점	무주	남대전

남해선 - ■ 진주
분기점 - 남해선

|
○ 서진주
|
○ 단성
|
○ 산청
|
○ 생초

88올림픽선 - ■ 함양
분기점 - 88올림픽선

|
○ 지곡
|
○ 서상
|
○ 장수
분기점 - 익산포항선

|
○ 덕유산
|
■ 무주
|
○ 금산
|
○ 추부
|
○ 남대전

■ 산내
분기점 - 대전남부순환선

대전	판암		무주	산내 분기점
		○ 판암		
대전	비룡 분기점		무주	판암
		○ 비룡 분기점		
경부선 중복	경부선 중복	:	경부선 중복	경부선 중복
		○ 대전		
경부선 중복	경부선 중복	:	경부선 중복	경부선 중복
		○ 회덕 - 호남선지선 분기점		
경부선 중복	경부선 중복	:	경부선 중복	경부선 중복
		○ 신탄진		
경부선 중복	경부선 중복	:	경부선 중복	경부선 중복
		○ 청원		
경부선 중복	경부선 중복	:	경부선 중복	경부선 중복
		■ 남이 분기점		
동서울	서청주		대전	남이 분기점
		○ 서청주		
동서울	오창		대전	서청주
		○ 오창		
동서울	증평		대전	오창
		○ 증평		
동서울	진천		대전	증평
		○ 진천		
동서울	음성		대전	진천
		○ 음성		
동서울	일죽		대전	음성
		○ 일죽		
동서울	호법 분기점		대전	일죽
		영동선 - ○ 호법 분기점 - 영동선		
동서울	마장 분기점		대전	호법 분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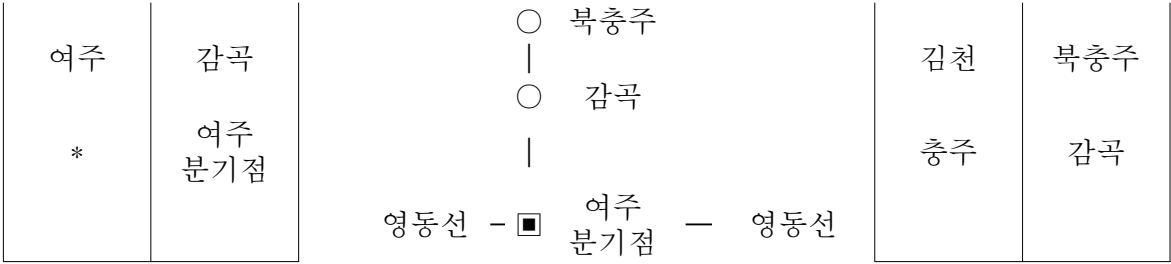
		┌ 제2중부선	- ○	마장 분기점		
동서울	서이천				대전	마장 분기점
			○ 서이천			
동서울	곤지암				대전	서이천
			○ 곤지암			
동서울	광주				대전	곤지암
			○ 광주			
동서울	산곡 분기점				대전	광주
		└ 제2중부선	- ○	산곡 분기점		
*	하남				대전	산곡 분기점
			○ 하남			
*	하남 분기점				대전	하남
		서울 외곽순환선	- ■	하남 분기점	-	서울 외곽순환선

고속국도 40호선

서평택분기점 → 서안성				서안성 → 서평택분기점		
원거리	근거리			원거리	근거리	
안성	청북	서해안선 -  서평택분기점 - 서해안선		*	서평택분기점	
안성	송탄					○ 청북
*	안성분기점					○ 송탄
*	서안성					경부선 - ○ 안성분기점 - 경부선
		 서안성				

고속국도 45호선

내서 → 여주분기점				여주분기점 → 내서	
원거리	근거리			원거리	근거리
김천	내서 분기점	■	내서	*	내서
		남해선 - ○	내서 분기점	—	남해선
김천	칠원 분기점			마산	내서 분기점
		마산외곽선 - ○	칠원 분기점	—	마산외곽선
김천	칠서			마산	칠원 분기점
		○	칠서		
김천	남지			마산	칠서
		○	남지		
김천	영산			마산	남지
		○	영산		
김천	창녕			마산	영산
		○	창녕		
김천	현풍 분기점			마산	창녕
		○	현풍분기점		
미개통	미개통	:		미개통	미개통
		경부선 - ■	김천 분기점	—	경부선
충주	선산			*	김천 분기점
		○	선산		
충주	상주			김천	선산
		○	상주		
충주	북상주			김천	상주
		○	북상주		
충주	점촌함창			김천	북상주
		○	점촌함 창		
충주	문경새재			김천	점촌함창
		○	문경새 재		
충주	연풍			김천	문경새재
		○	연풍		
충주	괴산			김천	연풍
		○	괴산		
여주	충주			김천	괴산
		■	충주		
여주	북충주			김천	충주



고속국도 50호선

서창분기점 → 강릉분기점		강릉분기점 → 서창분기점	
원거리	근거리	원거리	근거리
원주	월곶	*	서창 분기점
원주	서안산		월곶
원주	안산		서안산
원주	안산 분기점		안산
원주	군포	인천	안산 분기점
원주	동군포		군포
원주	부곡		동군포
원주	북수원		부곡
원주	동수원	인천	북수원
원주	신갈 분기점		동수원
원주	마성		신갈 분기점
원주	용인		마성
원주	양지	인천	용인
원주	덕평		양지
원주	호법 분기점		덕평

		중부선 - ○ 호법 분기점 - 중부선		
원주	이천		인천	호법 분기점
		○ 이천		
원주	여주 분기점		인천	이천
		중부내륙선 - ○ 여주 분기점		
원주	여주		인천	여주 분기점
		○ 여주		
원주	문막		인천	여주
		○ 문막		
원주	만종 분기점		인천	문막
		중앙선 - ○ 만종 분기점 - 중앙선		
강릉	원주		인천	만종 분기점
		▣ 원주		
강릉	새말		인천	원주
		○ 새말		
강릉	둔내		원주	새말
		○ 둔내		
강릉	면온		원주	둔내
		○ 면온		
강릉	장평		원주	면온
		○ 장평		
강릉	속사		원주	장평
		○ 속사		
강릉	진부		원주	속사
		○ 진부		
강릉	횡계		원주	진부
		○ 횡계		
*	강릉 분기점		원주	횡계
		동해선 - ○ 강릉 분기점 - 동해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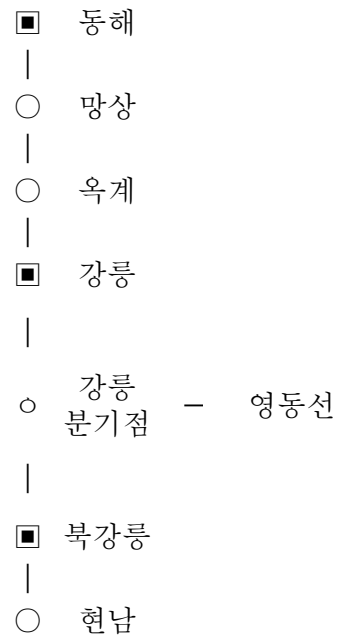
고속국도 55호선

삼락 → 춘천		춘천 → 삼락	
원거리	근거리	원거리	근거리
대구	대저분기점	부산	삼락
대구	대동분기점	부산	대저분기점
대구	상동	부산	대동분기점
대구	삼랑진	부산	상동
대구	남밀양	부산	삼랑진
대구	밀양	부산	남밀양
대구	청도	부산	밀양
대구	수성	부산	청도
대전	동대구	부산	수성
대전	동대구분기점	부산	동대구
경부선 중북	경부선 중북	경부선 중북	경부선 중북
경부선 중북	경부선 중북	경부선 중북	경부선 중북
경부선 중북	경부선 중북	경부선 중북	경부선 중북
안동	칠곡	대구	금호분기점
안동	다부	대구	칠곡
안동	가산	대구	다부

안동	군위	○	가산		대구	가산
안동	의성				대구	군위
원주	남안동	○	군위		대구	의성
원주	서안동		의성		대구	남안동
원주	예천	■	남안동		대구	서안동
원주	영주		서안동		안동	예천
원주	풍기	○	예천		안동	영주
원주	단양		영주		안동	풍기
원주	북단양	○	풍기		안동	단양
원주	남제천		단양		안동	북단양
원주	제천	○	북단양		안동	남제천
원주	신림		남제천		안동	제천
춘천	남원주	○	제천		안동	신림
춘천	만종분기점		신림		안동	남원주
춘천	북원주	■	남원주	영동선 - ○ 만종분기점 - 영동선	안동	만종분기점
춘천	횡성		북원주		안동	북원주
춘천	홍천	○	횡성		원주	횡성
*	춘천		홍천		원주	홍천
		○	춘천			
		■				

고속국도 65호선

동해 → 현남	
원거리	근거리
강릉	망상
강릉	옥계
양양	강릉
양양	강릉 분기점
양양	북강릉
양양	현남



현남 → 동해	
원거리	근거리
*	동해
동해	망상
동해	옥계
동해	강릉
동해	강릉 분기점
동해	북강릉

고속국도 100호선

판교분기점 → 학의분기점	
원거리	근거리
구리	성남
구리	송파
구리	서하남
구리	하남 분기점
구리	상일
구리	강일
구리	토평
구리	남양주
*	구리
*	퇴계원
미개통	미개통
판교	자유로 분기점
판교	김포
판교	노오지 분기점
판교	계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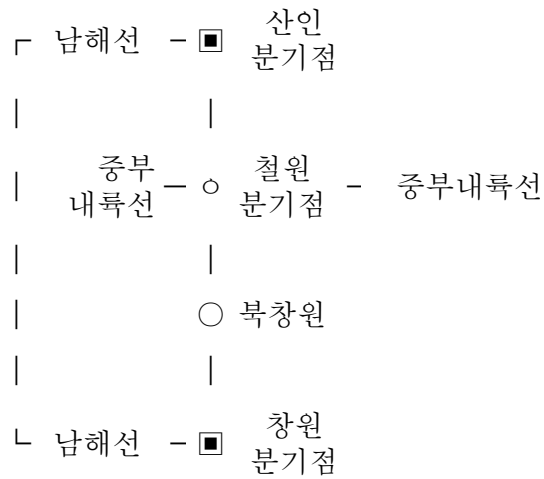
경부선 - ■ 판교 분기점 - 경부선	
○ 성남	
○ 송파	
○ 서하남	
중부선 - ○ 하남분기점	
○ 상일	
○ 강일	
○ 토평	
○ 남양주	
■ 구리	
○ 퇴계원	
:	
■ 일산	
자유로 - ○ 자유로 분기점 - 자유로	
○ 김포	
인천 국제공항선 - ○ 노오지 분기점	

학의분기점 → 판교분기점	
원거리	근거리
*	판교 분기점
판교	성남
판교	송파
판교	서하남
판교	하남 분기점
판교	상일
판교	강일
판교	토평
판교	남양주
판교	구리
미개통	미개통
*	일산
일산	자유로 분기점
일산	김포
일산	노오지 분기점

판교	서운 분기점	○ 계양 경인선 - ○ 서운 분기점 - 경인선	일산	계양
판교	중동		일산	서운 분기점
판교	송내	○ 중동 	일산	중동
판교	장수	○ 송내 	일산	송내
판교	시흥	○ 장수 	일산	장수
판교	안현 분기점	○ 시흥 	일산	시흥
		제2경인선 - ○ 안현 분기점 - 제2경인선		
판교	조남 분기점		일산	안현 분기점
		서해안선 - ○ 조남 분기점 - 서해안선		
판교	산본		일산	조남 분기점
판교	평촌	○ 산본 	일산	산본
판교	학의 분기점	○ 평촌 	일산	평촌
		의왕과천간 도로 - ○ 학의 분기점 - 의왕과천간 도로		

고속국도 102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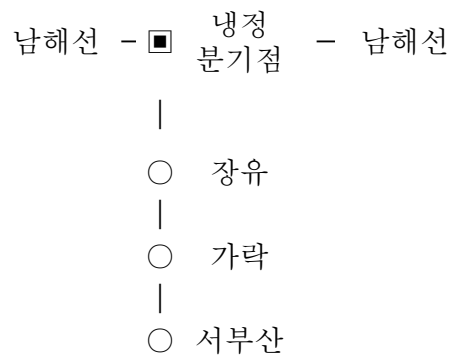
산인분기점 → 창원분기점	
원거리	근거리
부산	철원 분기점
부산	북창원
부산	창원 분기점



창원분기점 → 산인분기점	
원거리	근거리
진주	산인 분기점
진주	철원 분기점
진주	북창원

고속국도 104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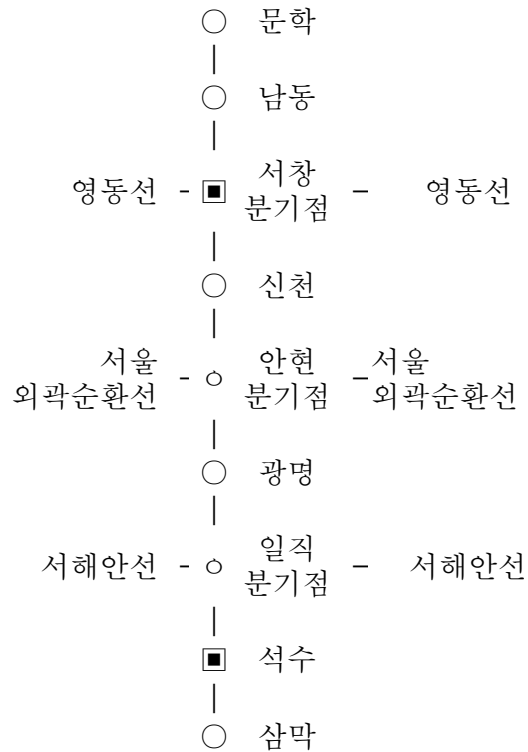
냉정분기점 → 서부산	
원거리	근거리
서부산	장유
서부산	가락
*	서부산



서부산 → 냉정분기점	
원거리	근거리
마산	냉정 분기점
마산	장유
마산	가락

고속국도 110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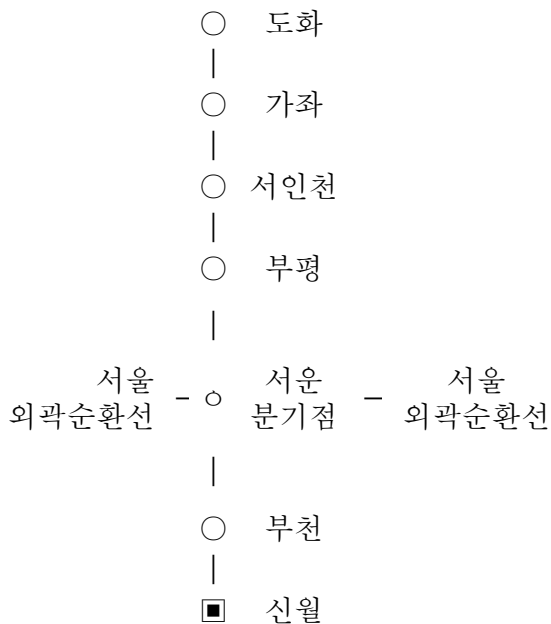
문학 → 삼막	
원거리	근거리
안양	남동
안양	서창분기점
안양	신천
안양	안현분기점
안양	광명
안양	일직분기점
*	석수
*	삼막



삼막 → 문학	
원거리	근거리
*	문학
*	남동
인천	서창분기점
인천	신천
인천	안현분기점
인천	광명
인천	일직분기점
인천	석수

고속국도 120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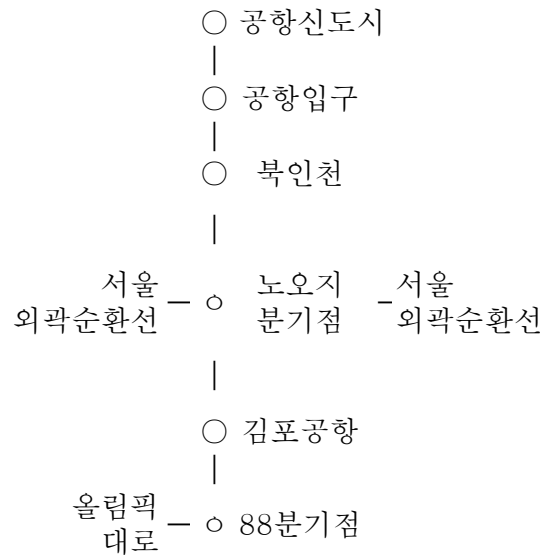
도화 → 신월	
원거리	근거리
서울	가좌
서울	서인천
서울	부평
서울	서운분기점
서울	부천
서울	신월



신월 → 도화	
원거리	근거리
인천	도화
인천	가좌
인천	서인천
인천	부평
인천	서운분기점
인천	부천

고속국도 130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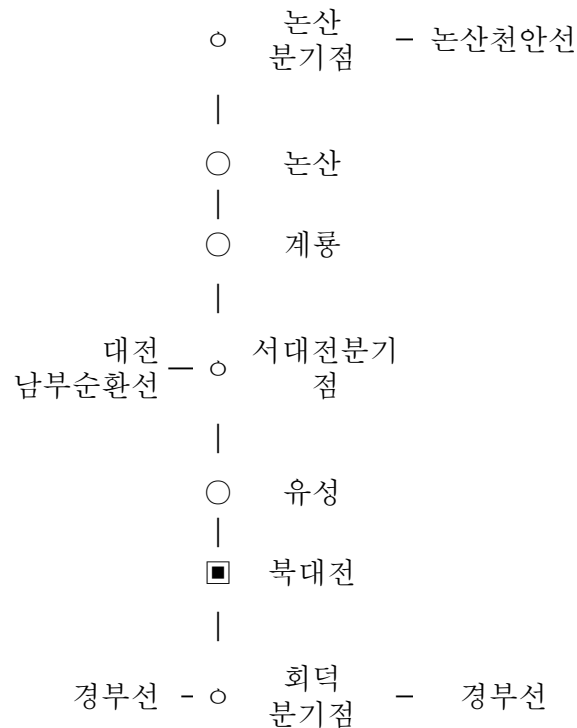
공항신도시 → 88분기점	
원거리	근거리
서울	공항입구
서울	북인천
서울	노오지 분기점
서울	김포공항
*	88분기점



88분기점 → 공항신도시	
원거리	근거리
*	공항신도시
인천공항	공항입구
인천공항	북인천
인천공항	노오지 분기점
인천공항	김포공항

고속국도 251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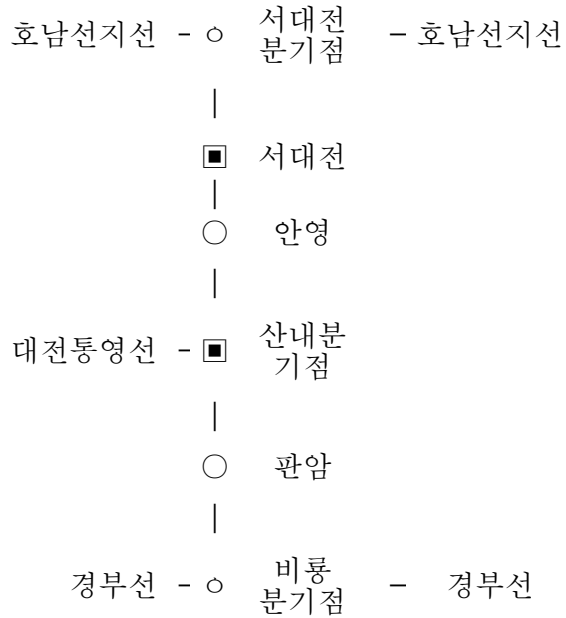
논산분기점 → 회덕분기점	
원거리	근거리
대전	논산
대전	계룡
대전	서대전 분기점
대전	유성
*	북대전
*	회덕 분기점



회덕분기점 → 논산분기점	
원거리	근거리
전주	논산 분기점
전주	논산
전주	계룡
전주	서대전 분기점
전주	유성
전주	북대전

고속국도 300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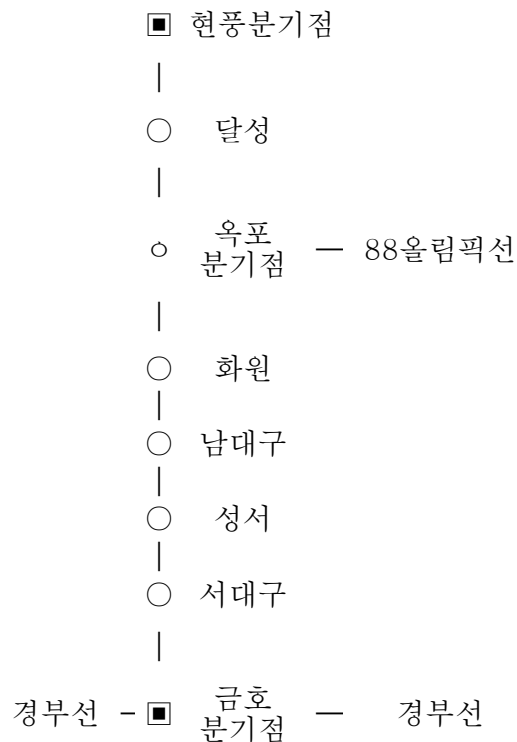
서대전분기점 → 비룡분기점	
원거리	근거리
남대전	서대전
남대전	안영
남대전	산내 분기점
증부선 중복	증부선 중복
증부선 중복	증부선 중복



비룡분기점 → 서대전분기점	
원거리	근거리
*	서대전 분기점
*	서대전
서대전	안영
증부선 중복	증부선 중복
증부선 중복	증부선 중복

고속국도 451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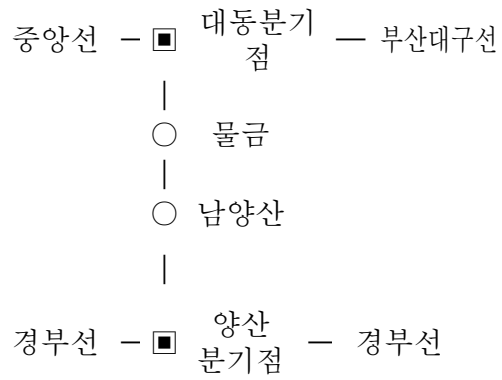
현풍분기점 → 금호분기점	
원거리	근거리
대구	달성
대구	옥포 분기점
대구	화원
안동	남대구
안동	성서
안동	서대구
안동	금호 분기점



금호분기점 → 현풍분기점	
원거리	근거리
마산	현풍 분기점
마산	달성
마산	옥포 분기점
마산	화원
마산	남대구
마산	성서
마산	서대구

고속국도 551호선

대동분기점 → 양산분기점	
원거리	근거리
양산	물금
양산	남양산
*	양산 분기점



양산분기점 → 대동분기점	
원거리	근거리
구포	대동분기점
구포	물금
구포	남양산

【별표3】

문화관광부 지정 주요 관광지역

가. 일반국도 주변 30개 주요 관광거점지역

권역별	시도	거점 지역	
		합계	지 역 명
합계	16	30	
수도권	서울	4	종로구, 중구, 용산구, 송파구
	인천	2	중구, 강화군
	경기	3	수원시, 용인시, 이천시
강원권	강원	3	속초시, 춘천시, 강릉시
충청권	대전	1	유성구
	충북	1	충주시
	충남	2	공주시, 부여군
대구· 경북권	대구	1	중구
	경북	2	경주시, 안동시
부산· 경남권	부산	2	중·동구, 해운대구
	울산	1	남구
	경남	1	통영시
전라권	광주	1	동구
	전북	1	남원시
	전남	3	목포시, 진도군, 영암군
제주권	제주	2	제주시, 서귀포시